

2013 September FTA 무역 리포트

01 FTA 포커스

I.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FTA 전문기관의 역할

02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II. 우리나라 FTA 동향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03 한·EU FTA 발효 2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I. 對EU 교역 동향
II. EU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III. 한·EU FTA 발효 2년과 시사점
특집: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사후관리 대응방안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섬유제품

I. 섬유제품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II. 섬유제품 FTA 특혜 교역의 특징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05 FTA 교역 지도

부록

01. FTA 포커스	03
I.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FTA 전문기관의 역할	04
02. FTA 최근 동향	09
I. 관세청 주요 이슈	10
II. 우리나라 FTA 동향	12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14
03. 한·EU FTA 발효 2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19
I. 對EU 교역 동향	20
II. EU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28
III. 한·EU FTA 발효 2년과 시사점	37
특집: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사후관리 대응방안	40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섬유제품	47
I. 섬유제품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48
II. 섬유제품 FTA 특혜 교역의 특징.....	51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57
05. FTA 교역지도	63
부 록	85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FTA 전문기관의 역할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기영

1)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FTA 무역 현주소

FTA 중심 무역질서의 재편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제18차 TPP협상 완료(2013.7.20~25), 미국·EU FTA 협상 개시(2013.7.8), 한·중 FTA 협상재개 및 일본의 공격적 FTA 참여에 따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블록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는 전세계 GDP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서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글로벌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지대가 출범하게 된다.

국내 FTA 활용 동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FTA 이행 10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FTA 이행의 본 궤도에 올라있는 현시점에도 FTA 활용 환경과 그 활용 수준에 대하여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주요 민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FTA 활용동향 분석'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의 FTA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더불어 기업들은 FTA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원산지확인서와 관련한 기업정보 유출의 우려,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TA 활용의 3대 중추

(원산지판정 / 원산지 관리 / 원산지 검증)

FTA 허브 국가로의 도약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가 완료되면 그 이후 FTA무역은 우리나라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FTA 적용 특혜수출입 건수는 현재 약 180만 건에서 5년 후에는 약 550만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향후에는 FTA 무역이 전체교역의 대부분이 될 것이므로 효과적인 FTA 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역증진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과 같은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인도 및 ASEAN과 같은 비중 있는 개도국들과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과는 원재료 조달이나 원료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선진국과는 상호 보완적 무역을 중심으로 'FTA 허브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FTA 활용 단계별 중요성

현재 우리는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FTA 무역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모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고 그 결과 국민들이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단계별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FTA 활용의 단계별 핵심요소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최대의 FTA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활용의 첫 단계는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다양하고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일부 원가 회계 지식까지 필요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 또한 중요하다. 각 협정별로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5년간 원산지증명서를 거래당사자들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FTA 활용이 원산지 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 후 '원산지 관리'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원산지 증명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FTA 활용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FTA 활용은 '원산지 검증'으로 최종 마무리된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2011년 84건, 2012년 22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211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특혜수혜를 향유한 기업들의 철저한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 검증은 단순히 FTA 혜택의 문제만으로 귀결되지 않고 통상마찰의 예방이나 공정무역 실현 등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3) FTA 이행의 든든한 조력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설립배경과 취지

정보원은 2009년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설립된 FTA 원산지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이다. 정보원은 본격적인 FTA 활용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익보호와 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주요 업무

정보원은 원산지 교육을 통해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적합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인 'FTA-PASS' 개발과 보급, FTA 관세행정지원을 위한 원산지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지원, FTA 원산지 정책방향 및 활용효과 분석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원산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원산지관리사'는 2010년 민간자격시험으로 시작하여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원산지관리 전문가들을 1,184명 배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관세사들이 FTA 이행 초기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사 FTA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였다. 향후 정보원은 대학교 및 특성화 고교까지 전문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FTA 전문가를 양성하고 FTA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선다갈 계획이다.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정보원은 기업들이 체계화되고 간편한 원산지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판정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FTA-PASS'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ERP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FTA-PASS와 ERP 상호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간·정부간 FTA 서류 교환에 따른 FTA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FTA 전자 문서 유통망'과 결합하여 더욱 편리한 원산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FTA 원산지 연구 및 인증·검증지원

정보원은 2009년 설립 이래로 FTA 상대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국가정보, 산업정보, 기업정보, 물품정보, 정책동향 등 전세계의 다양한 원산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FTA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은 인증수출자 심사를 위한 인증예비조사 및 원산지 검증예비조사 등을 통해 수출품의 원산지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품목분류,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과 해설, 상대국의 FTA 이행제도, FTA 협정문상 쟁점에 대한 정책연구, FTA 활용 현황분석 등 다양한 전문연구들을 수행하여 FTA 시대 무역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4) FTA전문기관으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

정보원은 사실상 FTA 무역이 미미하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원산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 무역환경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왔다.

정보원이 FTA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FTA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적·시스템적 발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FTA의 실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수출입 기업들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산지 관리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다. 하지만 수출입기업들과 필연적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FTA의 직접적인 혜택이나 유인이 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밀한 제도적 지원도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의 전문성을 축적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고 FTA의 실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워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반면 수출입 대기업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내역을 신뢰하기 다소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결국 FTA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기반을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원은 우선 중소기업 CEO의 FTA에 대한 인식제고와 FTA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논리만으로는 재정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성에 기반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기관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FTA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과 원산지 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FTA 전문기관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전에 원산지판정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하여 준다면 중소기업으로서 원산지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대기업으로서 원산지 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이행단계에 돌입하였고 향후 한·중 FTA까지 더해지면 FTA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FTA 교역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세계교역이 FTA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비하여 전세계에 표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FTA 이행시스템을 마련하여 FTA 허브국가로서의 지위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원은 FTA 활용 시스템의 발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02

FTA 최근 동향



02. FTA 최근 동향

1. 관세청 주요 이슈

중소기업의 일괄적인 원산지 관리 지원하기 위해 “국가 FTA-HUB” 구축(2013. 07. 12)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지원에 힘쓰기 위해 「국가 FTA-HUB」를 구축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2일 서울세관에서 150여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FTA-HUB의 중추적인 기능인 FTA 전자문서²⁾ 유통망과 ‘ERP 연계모듈’³⁾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은 또 ‘FTA 전자문서 유통망’⁴⁾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원산지시스템과 연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ERP 연계모듈은 ERP 사용 중소기업이 FTA-PASS를 쉽게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50개 시범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ERP 연계모듈로 인해, 그동안 ERP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현재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지원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이 FTA를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 MOU 체결 (2013. 07. 12)

관세청(청장 백운찬)과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7월 12일 서울세관에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에서 FTA 전문인력이 부족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점에 공감하고, 관세청과 교육부가 협력을 통해 FTA 활용을 주도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를 통해 특성화고·전문대학에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는 한편, 양성된 전문인력은 기업과의 고용매칭 지원도 협업하게 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세관에서는 7월 22일부터 250명의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증명 및 검증대응 등 FTA 전반에 걸친 실무교육을 제공 중이다. 앞으로, 9월에는 중소기업과의 고용매칭을 실시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양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FTA 우수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산업전반에 투입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증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무료로 보급 중인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산지관리, 자료보관, 원산지검증 대응, 전자서류 유통, ERP연계,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교환 등이 가능한 FTA활용 통합플랫폼

2)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FTA활용 필수서류

3)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통합정보) 시스템

4) 개별 기업의 원산지시스템 껌 전자화된 FTA서류가 상호 송수신할 수 있는 통합망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과 “한·중 AEO MRA⁵⁾” 활용 제고위해 대기업 CEO 간담회 개최(2013. 07. 18)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8일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과 한·중 AEO MRA 활용 제고를 위해 삼성전자(주) 등 20개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청장과 대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장은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과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 앞에서 체결된 한·중 AEO MRA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AEO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AEO 대기업들에게 “중소협력사의 AEO 공인획득 지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장,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 (2013. 07. 19)

관세청장(백운찬)은 7월 19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관세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일시 자금경색으로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한 분할 납부 허용 등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해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⁶⁾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방안과 함께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소개하였다. 한·미 FTA 관련하여 미국에서 사후검증이 요청될 경우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관세청은 관세행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더욱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소통행정 강화 노력(2013. 08. 12)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현장 건의사항은 단순 답변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안내·연계지원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현장에서 제시된 FTA활용지원, 신속통관, 관세조사, 원산지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이 직접 기업 CEO들에게 답변하였다. 또한, 사후 조치계획을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5) 양국 관세당국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서 우리 AEO기업은 합중국 수출시 중국 세관에서 검사를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우선검사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됨

6) 주기적 정보제공, 자율점검표,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표준질의서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배급중인 FTA-PASS 개선 요청 등에 대해서는 기능 설명과 함께 사후관리팀 활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는 해외 관세관을 통해서 상대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조치토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을 피드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

한·중 FTA 제 6차 협상 개최(2013. 07. 02 ~ 0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27일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에 도달하였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거나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또한, 양측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물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콜롬비아 FTA 관련 통상장관 회담 개최 (2013. 07. 08)

산업통상부에서는 7월 8일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콜롬비아 FTA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 명(중남미 3위)의 중남미 유망 시장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남미의 주력수출품인 광물자원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산 전자제품·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 체결은 양국 간 제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 4차 협상 개최 (2013. 07. 18 ~ 22)

한·인도네시아 CEPA 제4차 협상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규범, 협력 및 능력배양 등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금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상품과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대 교역국이자 제7대 투자대상국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기존 양국의 경제 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흥국과 윈·윈하는 상생형 FTA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일 FTA 2차 협상 개최(2013. 07. 30 ~ 08. 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에서 채택된 협상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기초로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등 핵심 쟁점 위주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WG: Working Group)와 지재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ED: Expert Dialogue)가 이루어졌다.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국은 다음 회의부터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여 협상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은 협상의 틀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중·일 FTA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은 오는 11월에서 12월경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뉴질랜드·호주·캐나다와 FTA 속도 (2013. 08. 07)

교착상태에 빠졌던 뉴질랜드·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정부가 'FTA 네트워크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데다 상대국의 협상 재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농축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2010년 5월 4차 협상을 끝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뉴질랜드는 현재 협상전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FTA 타결시점을 늦춰다가는 한국의 축산물 시장을 미국·유럽연합(EU)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질랜드가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는 2011년 3만9400톤에서 2012년에는 3만2700톤으로 17%가량 줄었다.

2010년 5월을 끝으로 중단된 호주와의 협상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FTA 타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국 수입쇠고기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관세 인하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호주는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는 태국과 2005년 FTA를 맺고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제4차 협상 개최 (2013. 08. 21 ~ 22)

캐나다 역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감정 악화로 2008년 하반기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양측은 16차례의 협상을 통해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 단위 기준) 가운데 1,425개(98.2%)의 개방일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양측은 2011년 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타결지은 후 최근까지 4차례 만나 남은 쟁점을 논의했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4차 협상이 21일부터 22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산업부 FTA 서비스투자과장이 수석대표이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터키측은 경제부 협정과장 및 투자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이번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 발효할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은 지난 2011년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서비스·투자 협정 체결시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중국·스위스 FTA 공식 체결(2013. 07. 06)

중국은 2012년 4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와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이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중국은 이번 중국·스위스의 FTA를 계기로 중국과 유럽 국가와 지속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과 유럽 협력에 긍정적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2년동안 9차례의 협상 이후 2013년 7월 6일 정식 서명하였다. 스위스 정부관계자(연방 재무장관)는 2014년 중반 스위스내 승인절차가 완성될 것이며, 이 시기에 중국 국회의 승인절차가 완성되면 FTA가 정식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특히 양국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관계로 중국은 약품, 정밀기계, 화학공업, 금융복지영역을 폭넓게 들어와 중국 산업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중국 내 의약, 관광 부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협상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환경, 노동, 지적 재산권 등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 무역위원회 한·미 FTA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2013. 07. 13)

미국 무역위원회는(ITC) 미국내 중소기업이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ITC의 조사내용은 한·미 FTA가 미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친 영향과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대상기업은 농업, 생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직원 수 500명 이하)으로 약 4,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인터뷰, 우편, 전화 등을 통해 한·미 FTA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FTA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FTA의 발효는 기존의 한·미 비즈니스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인한 추가적 이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제 18차 TPP 협상 참여(2013. 07. 15 ~ 25) 및 FTA 협상 적극적 참여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되는 제18차 TPP협상에 23일부터 일본이 공식 합류하기로 하였다. 최근 들어 일본은 타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일본은 페루와 FTA를 발효하였고, EU,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FTA, RCEP 등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미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에도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참가할 예정이고, 호주와는 협상 타결에 일부 쟁점만을 남긴 상황이다. 터키와도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이와 같은 FTA 추진을 통해 2018년도에 전체 교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과는 지적재산권 강화, EU와는 자동차 등의 안전·환경기준의 상호인 및 기준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터키 FTA 체결 가능성 제기(2013. 07)

올해 7월 말 터키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와 터키 간 FTA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터키 경제부 장관은 9월 중 예정된 페냐 니에도 대통령의 터키 방문 시 FTA 논의를 바란다고 호세 안토니오 멕시코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밝혔다.

이는 2012년 4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의 양국 간 FTA 체결 가능성 언급에 이어 두 번째로, 양국 간 FTA 체결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냐 니에도 대통령은 9월 중 터키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때 양국 간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가적으로 현재 양국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철폐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역사상 멕시코 대통령의 터키 최초 방문으로, 멕시코가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터키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FTA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경우 멕시코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시장 진출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2년 멕시코의 對터키 수출액은 전년대비 97.8% 증가한 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멕시코 수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 전체 수출액 중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쳐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U·조지아 유럽연합협정 체결(2013. 08. 01)

EU와 조지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유럽연합협정(A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U는 EU 경제권을 러시아 영향권 하에 있는 코카서스 지역까지 넓히기 위해 조지아와 2010년 7월부터 14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협상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 시 조지아 상품의 유럽 진출 확대 및 조지아의 대유럽 정치적 연합 및 경제적 통합 촉진이 예상된다.

현재 조지아는 EU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EU와 Association Agreement가 체결된다면 농산품까지도 포함한 사실상 모든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터키와 일본, FTA 협정을 향한 중요한 단계 도달 (2013. 08. 15)

양국 FTA 공동연구에서 일본과 터키의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자유무역협정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터키는 1, 2차산업인 농업과 제조업이 강하지만 일본은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양국 간 주력 산업구조가 달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터키는 제조업분야 내에서 약간의 기술과 품질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 등 FTA 발효로 관세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터키의 FTA 협상에서 터키 측은 양국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와의 FTA와 매우 유사한 전개상황을 보인다.

한편, 터키 시장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격차를 벌이는 상황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 56억 6,000만 달러를 터키에 수출해 터키 제11의 수입국으로 기록되었다. 일본은 작년 기준 36억 달러를 수출하며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22조원대의 원전 수주를 얻고 터키와의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터키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거리 FTA 추진은 한국 등 경쟁국보다 뒤처진 FTA를 따라잡는 형국이며, 주로 한국이 체결한 미국, EU, 페루, 터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와 경쟁품목이 비슷한 만큼 FTA 선점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터키 시장 내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

남미공동시장·EU 연내 FTA 협상 진전 가능성 (2013. 08. 18)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브라질 일간지(플라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12월까지 두 블록 간 수입 관세 철폐 가능 품목 명단을 EU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코수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입 관세 철폐 품목을 EU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협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브라질 외교부는 인접국들과의 관세동맹 때문에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분야에서 양자 간 협상이나 협정 체결은 가능하지만, 자유무역 분야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대외공동관세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플라 데 상파울루)는 지난 4월 브라질 정부가 올해 하반기 EU와 자유무역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브라질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하나로 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가동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협상 추진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가 회원국의 독자적인 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탓에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상 분야에서 크게 낙후되었다. 1991년 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브라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뿐이다.

03

한·EU FTA 발효 2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03. 한·EU FTA 발효 2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 분석 배경 : 2013년 7월은 한·EU FTA 발효 2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에 한·EU FTA 발효 전후 對EU 수출입 품목 구성의 변화 및 FTA 활용률 분석을 통해 한·EU FTA 2년차를 점검한다. 더불어 EU 개별 주요국가에서 협정 발효 전후 교역 변화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의 기업 활용에 유용한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 분석 범위 : 한·EU FTA 발효 전 1년, 발효 후 1년차, 2년차 교역 및 산업변화, 주요 EU 개별 국가의 FTA 전후 교역의 특징

I. 對EU 교역 동향

1) 對EU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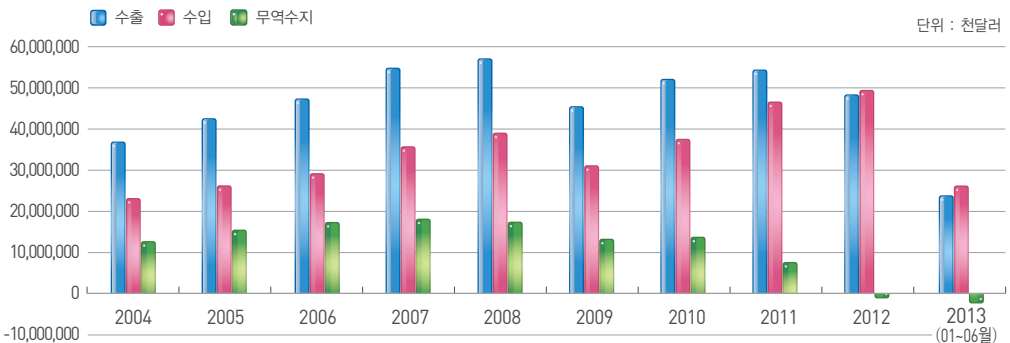
FTA 혜택품목 수출 소폭 감소로 전체 수출 버팀목 역할

2012년말 기준 EU는 전체 수출의 약 9.0%를 점유하는 우리나라의 5위 무역국이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2013년 6월말 기준 247억달러로 전년대비 -3.7%로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인 반면, 수입은 10.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해 온 EU와의 교역은 2012년부터 무역적자로 전환되었고 교역 규모도 감소하였다.

EU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여파가 한·EU 간 교역에도 반영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EU 수출구조는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품목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 그림 3-1 | EU 수출입 현황(2004~2013)



| 표 3-1 | 對EU 발효 2년차(12.7.1~13.5.31)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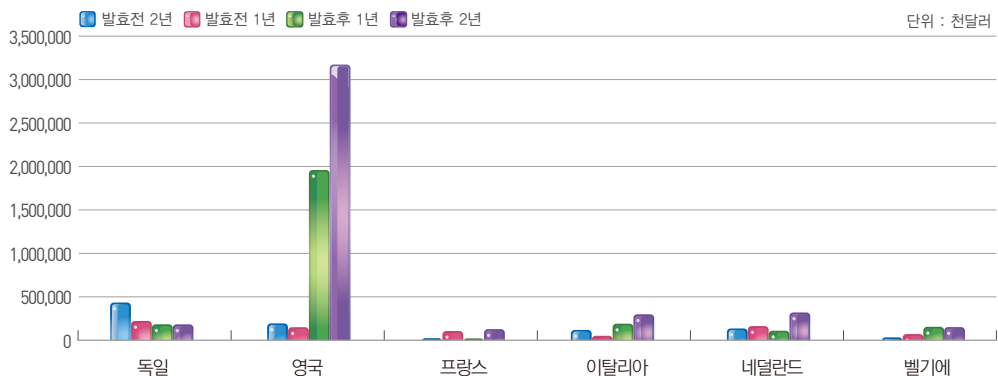
구분	FTA 혜택 품목 ⁷⁾		FTA 비혜택 품목 ⁸⁾		전체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수출	244	-1.5	193	-12.2	437	-6.5
수입	359	14.1	127	-7.1	486	7.7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6), 한·EU FTA 2주년 성과 보도자료 참조 작성

그러나 FTA 발효 2년차 수출 감소폭이 -4.7%로 발효 1년차 -12.3%보다 둔화되는 추세로 이전 수준으로의 교역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FTA 혜택 품목의 경우 수출 감소율이 1.5%에 불과하여 對EU 전체 수출의 감소폭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입도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발효2년차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증가한 486억달러에 달하는데,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7.1%감소한 것에 반해 FTA 혜택 품목은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하여 수입시장은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편 對EU 수입 확대에는 FTA라는 무역환경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 최근 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 나프타 등의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음 [그림 3-2]와 같이 EU로 석유제품 수입선 전환이 발생하였다. 즉 對EU 수입 증가분의 상당부분은 석유류의 수입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EU산 석유제품의 수입 증가는 독일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이 그 중심에 있다.

| 그림 3-2 | 對EU 광산물(석유제품)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7) FTA 혜택 품목이란 FTA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으로 원유,자동차 등이 해당됨
8) FTA 비혜택 품목이란 관세인하 비적용 품목으로 선박,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해당됨

2) 품목군별 수출 동향

對EU 수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이 72.3%로 집중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주요 품목군은 MTI 1단위 기준으로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 집중된 특징을 지닌다.

FTA 발효 2년차 기계류가 43.2%, 전자전기제품이 29.1%로 전체 수출의 7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 구성은 한·EU FTA 발효 전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화학공업제품이 발효전 1년 4.8%에서 발효전 2년차에 7.3%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 표 3-2 | 對EU FTA 발효 전후 수출 증감률(MTI 1단위)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1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금액	전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기대비 증감률
농림수산물	210 (0.4)	212 (0.4)	0.8	223 (0.5)	5.4
광산물	2,712 (4.7)	3,656 (7.2)	34.8	3,206 (6.6)	-12.3
화학공업제품	2,798 (4.8)	3,146 (6.2)	12.4	3,539 (7.3)	12.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514 (2.6)	1,714 (3.4)	13.2	1,580 (3.3)	-7.8
섬유류	1,323 (2.3)	1,417 (2.8)	7.1	1,403 (2.9)	-1.0
생활용품	318 (0.5)	345 (0.7)	8.6	467 (1.0)	35.2
철강금속제품	2,942 (5.1)	2,855 (5.6)	-3.0	2,824 (5.8)	-1.1
기계류	28,216 (48.7)	23,682 (46.6)	-16.1	20,917 (43.1)	-11.7
전자전기제품	17,658 (30.5)	13,520 (26.6)	-23.4	14,073 (29.1)	4.1
잡제품	198 (0.3)	243 (0.5)	22.4	195 (0.4)	-19.9
합계	57,889 (100.0)	50,789 (100.0)	-12.3	48,426 (100.0)	-4.7

주 : () 비중

(1) 수출 증가품목군 : 생활용품 > 화학공업제품 >
농림수산물 >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 품목 다변화 효과에 주목

생활용품의 전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35.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 1년차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 바 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1년차에 생활용품은 발효 전 대비 29.1%의 수출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생활용품은 對EU 수출산업으로서의 비중이 1.0%에 불과해 교역 전체에서의 중요도는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전체 수출의 증가를 견인할만한 영향력은 미미한 품목군이다. 생활용품이 對EU 수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FTA로 인해 생활 소비재에 대한 수출품목이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방과 승용완구의 경우 전기 대비 100%이상 수출이 증가하였다.

**화학공업제품 : 시멘트 보강제 기준 6.5% 관세율
FTA 이후 0% 적용되어 수출 증가**

對EU 수출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품목군은 화학공업제품이다. 전기 대비 12.5%가 증가하였는데, 화학공업제품은 발효 1년차에도 16.2%가 증가한 품목군으로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품목은 시멘트 보강제이다. EU에서 동 품목의 수입관세율은 6.5%이나 FTA 이후 한국산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되어 교역여건이 경쟁 국가인 중국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한·EU FTA 발효전 1년간 3,598천달러에 불과하였던 동 품목의 수출은 발효 1년차 9,208천달러로 증가, 발효 2년차에는 9,624천달러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 : 조명기기, 음향기기 수출 FTA 발효
이후 수출 지속 증가**

전자전기제품의 對EU 수출은 발효 1년차 대비 4.1% 증가하였다. EU 경기악화로 현지 수입수요의 감소 경향이 일반적인 가운데, 전자전기제품의 수출 회복은 FTA에 따른 긍정적 교역 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세부품목으로는 조명기기의 수출 증가가 돋보인다. 해당품목은 발효 1년차에 이어 발효 2년차에도 수출이 증가하였다. FTA 발효 1년차에는 전기대비 약 52%, 발효 2년차에는 발효 1년차 대비 37.6%가 증가하였다. 한·EU FTA 발효로 약 5.3%의 관세절감혜택이 수출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현지 바이어는 FTA 발효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타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으며, 앞으로도 한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⁹⁾

**농림수산물 : 발효 1년차 대비 수출 증가 5.4% 수출
증가. 특히 영국이 두드러짐**

對EU 수출 농림수산물이 FTA 발효 2년차 전기대비 5.4%의 수출 증가를 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KOTRA(2013), 한·EU FTA 2주년 성공사례 및 주요 바이어 반응조사

이로써 주로 FTA 피해품목으로 논의되었던 농림수산물 분야에서도 FTA를 위기가 아닌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부 품목으로는 곡실류, 毛類, 수산부산물, 식물성 물질, 육류, 축산부산물, 해조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 증가가 확인된다. 특히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한·EU FTA 발효 1년차에는 농림수산물 수출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발효 2년차에는 전기 대비 33%증가하였다.

(2) 수출 감소품목군 : 잡제품 > 광산물 >
기계류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기계류 : 유럽재정위기 여파 지속으로 수출물량 지속적으로 감소

對EU 주요 수출 품목군인 기계류의 수출은 전기대비 11.7% 감소하였다. 기계류는 FTA 발효 1년차에도 16.1%의 수출 감소가 있었던 품목군이다. EU 재정 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계류 등 제조제품의 수요 감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계류의 수출 감소는 對EU 수출의존도가 높은 선박, 해양구조물 등 조선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선박(HS 89류)의 對EU 수출은 2010년 135.9억달러에서 2012년 79.3억달러로 급감하였다. 아울러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유럽 내 수입 수요 감소 및 현지생산 확대 등 영향으로 일부 감소하였다.

광산물, 잡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발효 1년차 대비 감소

한·EU FTA 발효 2년차 전기 대비 감소 품목은 광산물, 잡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군은 대체로 FTA 발효 1년차에 수출이 급등한 것이 공통적이다. 즉, FTA 발효 2년차 수출실적은 FTA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아니다.

3) 품목군별 수입 동향

對EU 수입 품목은 기계류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

우리나라의 對EU 수입 품목은 기계류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등이 13~16%의 범위에 있으며, 이 네개 품목군이 전체 EU 수입의 80.5%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산물은 FTA 이전 3.6%에서 FTA 2년차 13.4%로 품목의 점유 비중이 높아진 품목군이다.

전반적으로 발효 1년차에 비해 對EU 전체 수입은 8.0% 증가하였으나, 농림수산물, 섬유류, 기계류, 잡제품 등은 수입이 감소하였다.

한편 對EU 수입 발효 1년차 대비 증가품목은 광산물, 전자전기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화학공업제품 등이며, 특히 석유제품이 포함된 광산물의 수입증가율은 84.6%에 달하고 있다.

| 표 3-3 | 對EU FTA 발효 전후 수입 증감률(MTI 1단위)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1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금액	전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기대비 증감률
농림수산물	2,314 (5.3)	2,790 (5.7)	20.6	2,609 (4.9)	-6.5
광산물	1,562 (3.6)	3,844 (7.8)	146.1	7,097 (13.4)	84.6
화학공업제품	7,625 (17.6)	8,208 (16.7)	7.7	8,443 (15.9)	2.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778 (1.8)	830 (1.7)	6.7	934 (1.8)	12.6
섬유류	1,136 (2.6)	1,315 (2.7)	15.8	1,270 (2.4)	-3.4
생활용품	1,015 (2.3)	1,216 (2.5)	19.8	1,313 (2.5)	8.0
철강금속제품	3,364 (7.8)	3,753 (7.6)	11.6	3,479 (6.6)	-7.3
기계류	17,571 (40.5)	18,774 (38.3)	6.8	18,673 (35.2)	-0.5
전자전기제품	7,305 (16.8)	7,478 (15.2)	2.4	8,462 (16.0)	13.2
잡제품	701 (1.6)	853 (1.7)	21.6	718 (1.4)	-15.9
합계	43,371 (100.0)	49,061 (100.0)	13.1	52,997 (100.0)	8.0

주 : () 비중

(1) 수입 증가품목군 : 광산물 > 전자전기제품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생활용품

광산물 수입의 급증 : 발효 1년차 대비 84.6%

광산물은 對EU 수입이 급증한 품목이며, 주로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산물은 FTA 발효 1년차에도 전기 대비 146.1%가 증가를 시현, 최근 對 EU 수입 증가 추세에 있는 품목군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과 EU의 이란지역 석유 금수조치¹⁰⁾와 관세율 인하가 EU산 석유 에너지 수입의 주요 원인이다. 동 조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 나프타 등의 수입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은 FTA에 의해 관세가 인하된 EU산 원유, 나프타로 대체 전환이 발생하였다.

전자전기제품 : 반도체, 정지기기, 회전기기 중심으로 수입증가

전자전기제품은 對EU 수입의 약 16%를 점유하는 품목군으로 FTA 발효 1년차 2.4%, 발효 2년차 13.2%의 수입 증가가 있었다. 세부 증가품목은 반도체, 정지기기, 회전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등 하이테크 분야로 독일 등 EU측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생활용품 : 커피머신, 와인, 유모차 등 FTA 발효 이후 소비자 가격하락으로 수입증가 (발효 1년차 19.8%, 발효 2년차 8.0% 증가)

생활용품은 對EU 수입의 약 2.5% 비중인 품목군이나 FTA 발효 1년차 19.8%, 발효 2년차 8.0%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FTA 이전에도 EU산 생활용품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FTA 발효 이후 8~10% 수준으로 부과되던 관세율이 하락하면서 품목별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소비재 가격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EU FTA 이후 커피머신(▽37.0%), 와인(▽23.1%), 유모차(▽10.3%), 전기다리미(▽8.1%), 프라이팬(▽6.5%) 등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입 감소품목군 : 잡제품 > 철강금속제품 > 농림수산물 > 섬유류

섬유, 철강, 농림수산물 : 발효 2년차 수입감소 품목군

한·EU FTA 1년차에는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2년차에는 수입이 감소하는 품목군도 나타나고 있다. 섬유류와 철강금속제품 등이 그것이다.

철강금속제품은 전기 대비 -7.3%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FTA 이전에도 무관세 품목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서, FTA에 의한 수입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철강은 주로 건설, 자동차, 기계 등 산업을 통해 그 수요가 창출되는데, 최근 국내 경기 부진의 여파가 철강금속제품의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류와 농림수산물은 발효1년차 대비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FTA 발효 전보다는 수입이 증가, 유지되고 있다. 섬유류와 농림수산물은 공통적으로 한·EU FTA 발효 1년차부터 관세하락에 의한 수입수요 확대로 각각 15.8%, 20.6%의 증가를 시현한 품목이다.

10)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상국마다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4)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 EU의 對한·중·일 교역 중심

(1) EU의 對한·중·일 수출동향

2012년 EU의 국가별 수출증감(전년대비) :
 한국(16.1%) > 일본(13.2%) > 중국 (5.6%)

*2012년 EU의 對세계 수출증감(전년대비): 3.5% 증가

EU의 對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3.5%증가하였다. 2011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폭이 적는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U의 對한 수출은 2012년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다. EU의 對세계 수출이 전년대비 3.5%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한국 시장이 EU내에서 보다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EU의 對한 수출 상위 20대 품목¹¹⁾ 가운데 절반 가량인 약 10개 품목이 발효 1년차에 비해 일본, 중국 보다 수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2500cc 초과 자동차(HS 8703.33), 기타 기계류(HS 8479.89), 전자집적회로(HS 8542.31, HS 8542.39), 기타 밸브(HS 8481.80), 디젤엔진(HS 8408.20) 등 주로 84, 85, 87류 등 전자, 기계류에 분포하고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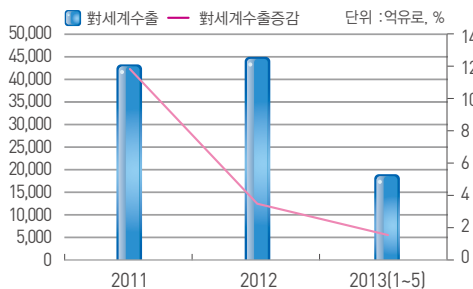
(2) EU의 對한·중·일 수입동향

2012년 EU의 국가별 수입증감(전년대비) :
 한국(4.5%) > 일본(-7.9%) > 중국 (-0.9%)

*2012년 EU의 對세계 수입증감(전년대비):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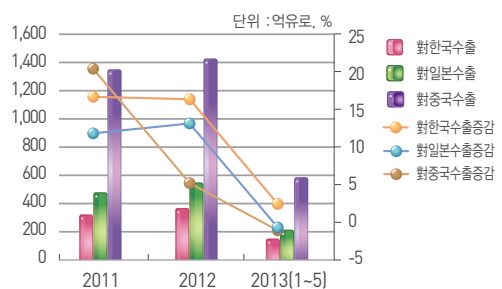
EU의 對세계 수입 역시 2012년 전년 대비 2.1%로 소폭 증가하였다. EU 재정위기로 주요국의 對EU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對한 수입은 2012년 기준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이는 EU의 對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EU내 對일본, 對중국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EU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선전은 FTA에 의한 상대적 가격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3-3 | EU의 對세계 수출동향 (2011~2013.5)



주: 전년 대비 증감률

| 그림 3-4 | EU의 對한·중·일 수출동향 (2011~2013.5)



주: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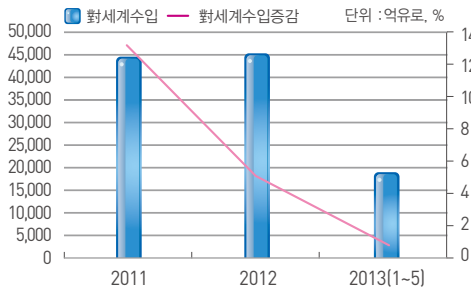
11) 2012년도 12월말 기준 HS 6단위 기준

12) 부록 EU의 對한·중·일 수출 증감률 비교(2012.7~2013.5)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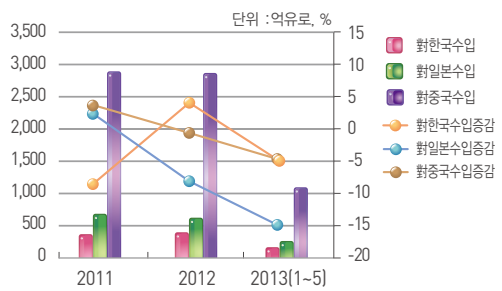
한편 2013년 3월 일본과 EU는 무역자유화 등에 관한 경제동반자 협상 개시에 합의, 4월에는 브뤼셀에서 무역분야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는 EU 시장 내에서 한국 물품의 FTA 특혜가 더 이상 유일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본과 경합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FTA 체결국인 한국으로부터의 對EU 수입 증가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키려면 일·EU FTA 타결 및 발효에 대비하여 EU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그림 3-5 | EU의 對세계 수입동향
(2011~2013.5)



| 그림 3-6 | EU의 對한·중·일 수입동향
(2011~2013.5)



한·EU FTA 발효 2년차 EU 시장에 수입된 한국산 상위 20대 품목¹³⁾ 가운데, 중국, 일본산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자동차(HS 8703.22, HS 8703.21)와 핸드폰(HS 8517.12), 기타 방송용 수신기 부분품(HS 8529.90), 기어박스(HS 8708.40) 등이었다.¹⁴⁾

요컨대, EU측에서 집계된 무역통계를 살펴본 결과 EU의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EU 간 무역은 전자, 기계류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들이 확인된다.

II. EU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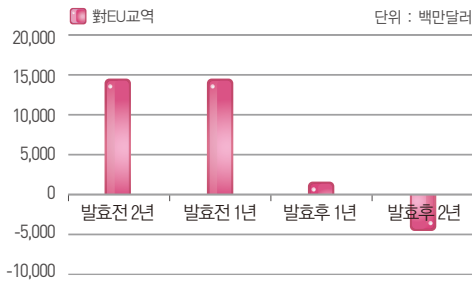
EU 주요국 네덜란드, 영국 발효 2년차 무역수지 전년대비 각각 168.9%, 3.3% 증가

EU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50대 교역국에 속하는 주요 국가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 이다. 이들 국가는 EU GDP의 55%를 점유하는 핵심 경제국이며, 우리나라와의 對EU 무역의 약 6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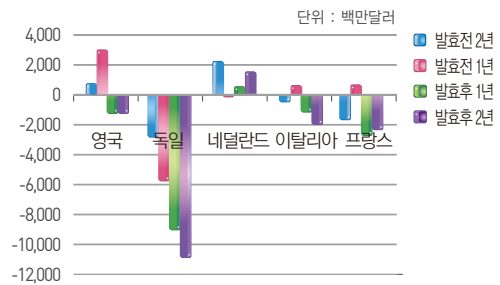
13) 2012년도 12월말 기준 HS 6단위 기준

14) 부록 'EU의 對한·중·일 수입 증감률 비교(2012.7~2013.5)' 표 참조

| 그림 3-7 | 한·EU FTA 전후 對EU 무역수지



| 그림 3-8 | 한·EU FTA 전후 對EU 주요국 무역수지



이들 국가는 대부분 서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그림 3-8]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근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추세다. 주요 5개국 중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의 수출을 살펴보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한·EU FTA 협정 발효로 인해 수출이 유지되고 있거나 다소 증가하였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협정 발효 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영국으로의 수출은 한·EU FTA 발효 1년차에는 감소하였지만, 발효 2년차에는 전기대비 33%증가하여 FTA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EU FTA 발효 직전 2년 수출은 4,111백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5,365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로의 전체 수출은 한·EU FTA 전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EU FTA 발효 2년전 수출은 5,457백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4,926백만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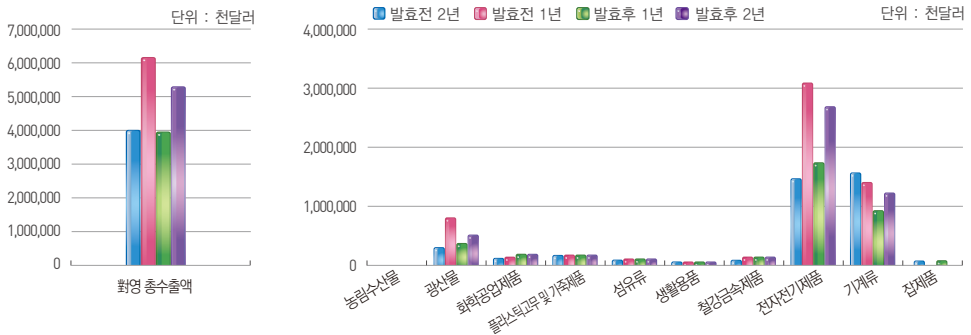
한편, 對이탈리아 수출은 한·EU FTA 발효전 1년의 대폭 수출 증가로 인해 FTA 이후 수출이 감소추세로 나타난다. 한·EU FTA 발효전 2년차 수출은 3,112백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3,108백만달러로 30억달러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다.

EU 주요국의 수입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공통적으로 기계류 및 화학공업제품 수입의 전반적인 증가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기계류의 수입이 협정 발효 2년차에 발효 2년전과 비교하여 2,411백만달러의 수입액 증가가 발생하였다. 특히 기계류 중 관세하락으로 인한 자동차의 수입은 한·EU FTA 발효 2년전 1,646백만달러에서 발효 2년차 3,232백만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다음에서는 EU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FTA 전후 산업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FTA의 세부적인 이행상의 특징을 세밀하게 고찰한다.¹⁵⁾

15) EU 주요국중 프랑스에서는 협정 발효전 2년차와 비교해 광산물의 증가이외에 특별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아 본문상 주요국 교역변화에서는 협정 발효 2년차 기준 10위권 교역 국가로 수출증가폭이 큰 벨기에를 포함하여 살펴봄

| 그림 3-9 | 對영국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1) 주요국 교역변화

① 영국

수출 :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과 맞물려 제주감귤의 수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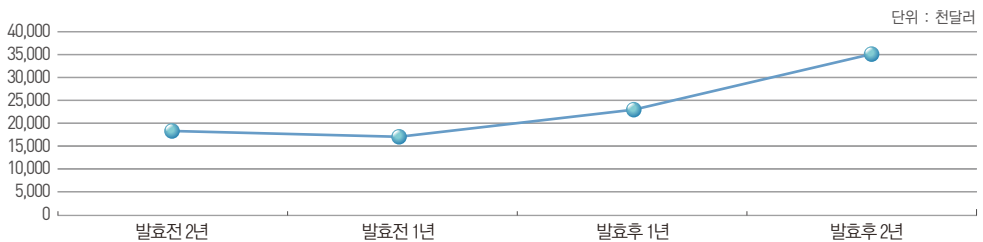
영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발효 전 2개년과 발효 후 2개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등에서 수출 증가가 있었다.

특히 농림수산물은 FTA 발효전 2개년보다 발효후 2개년에 1.6배로 확대되었다. 영국으로 농림수산물 수출은 FTA 발효전 2년차에는 19,979천달러, 발효후 2년차에는 36,235천달러로 나타났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농림수산물 가운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곡실류, 식물성재료, 기호식품, 농산 가공품, 해조류 등이다(MTI 3단위 기준). 특히 곡실류 가운데 제주감귤은 제주 감귤수출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수출의 활성화를 시험하고 있다. 2009년 영국에 처음으로 수출된 제주 감귤은 매년 4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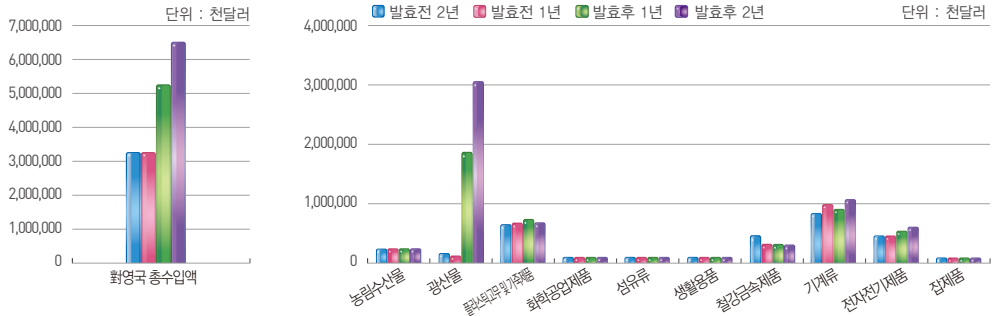
특히 영국으로의 수출단가는 미국 등과 비교해 50% 이상 높아 국내 수출 증대의 주요 유인으로 알려졌다.¹⁶⁾ 게다가 제주감귤은 한·EU FTA 발효로 16%였던 세율이 8%로 감소되었다.¹⁷⁾

| 그림 3-10 | 對영국 농림수산물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16) 농민신문 2013년 6월 5일자 기사
17) HS 0805.20-1000

| 그림 3-11 | 對영국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제주 감귤의 수출 증가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2008년부터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감귤 수출연구 사업단의 성과로 알려졌다. 연구 초기부터 영국의 검역조건, 영국현지 업체와의 협력 컨설팅 및 유럽수출용 파레트 상자 제작 등 영국시장 맞춤형 수출전략을 개발한 것이 성공 원인이었다.¹⁸⁾ FTA 발효와 맞물려 이루어진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낸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수입 : 광산물 수입 두드러지게 나타남

영국에서의 수입은 광산물이 다른 품목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광산물은 한·EU FTA 발효전 2년차에는 185백만달러였으나, 협정 발효후 2년차에는 3,173백만달러로 17.1배의 실적상 증가가 발생하였다. 특히 광산물은 발효 2년차 기준 전체수입 구성비중의 47.8%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영국 북해산 원유(브렌트유) 수입이 급증하였다. 국내 정유사들이 한·EU FTA 협정이전에는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두바이유를 사용하였으나,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FTA 협정으로 인한 관세철폐로 영국 북해산 원유(브렌트유)로 수입선을 전환한 것이 원유수입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② 네덜란드

수출 : 한·EU FTA 이후 기존 3~17% 관세율 감소로 인한 신발수출 증가

네덜란드로의 수출을 발효 전 2개년과 발효 후 2개년을 평균해 보면, 산업별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집제품 등에서의 수출 증가가 있었다. 특히 생활용품은 발효전 2개년보다 발효 후 2개년에 3.5배 확대되었다. 對네덜란드 생활용품 수출은 FTA 발효 2년전에는 18,279천달러, 발효 2년차에는 106,734천달러로 5.8배나 증가하였다.

對네덜란드 생활용품 주요 수출품목은 신발, 가방 등이다(MTI 3단위 기준).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2011년 유로화 위기, 부가세 인상 예정 등의 악재를 맞아 구매심리 악화로 2011년 대부분의 소매업계의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과 수퍼마켓의 매출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세계 8대 신발 수입국으로 기존에는 중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베트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18) '제주 감귤' 유럽 수출 패키지(농림수산물식품부 보도자료(2009.12.18.))

그러나 한·EU FTA 발효 이후 신발에 대한 3~17%의 세율의 감소는 동남아시아의 저가 상품에 대해 한국 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유럽 4대 신발 수출국이며,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유지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⁹⁾

따라서 네덜란드가 유럽시장에서 성공을 가능하는 테스트 시장임을 감안하면, 네덜란드로의 신발 수출 증가는 향후 국내 신발 산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 네덜란드 고부가가치 산업인 기계류 및 전자전자제품 등 수입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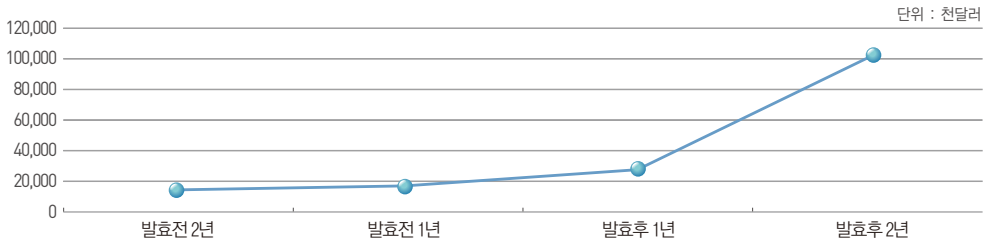
네덜란드에서의 수입은 기계류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발효 2년차 기준 기계류가 1,584백만 달러로 전체 구성비중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공업제품 또한 발효 2년차 기준 421백만달러로 전체의 12.4%를 구성하는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국내 수입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③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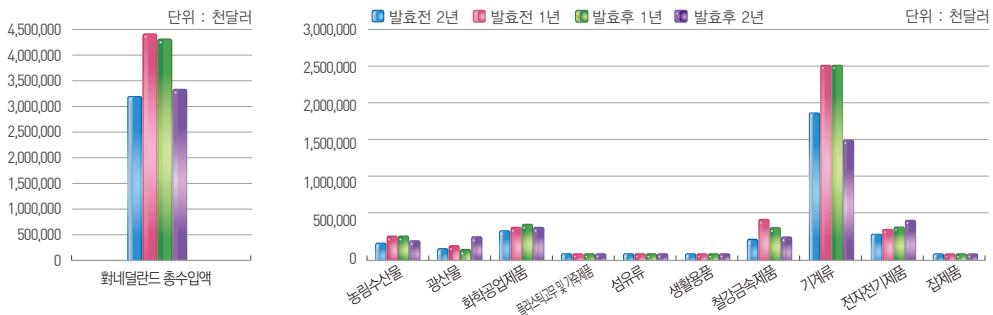
수출 :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 화학공업산업 수출 증가

벨기에에는 한·EU FTA 발효 1년차에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발효 2년차에는 전년대비 5.4% 감소하였다.

| 그림 3-12 | 對네덜란드 생활용품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3 | 對네덜란드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19) KOTRA(2012), '네덜란드 신발시장 공략법(2)' 참고하여 작성

최근 유럽경제위기 여파로 수출이 감소한 EU 회원국과 다르게 벨기에에는 FTA 이후 수출이 증가한 국가이다. 한·EU FTA 발효전 2년 수출은 1,957백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2,153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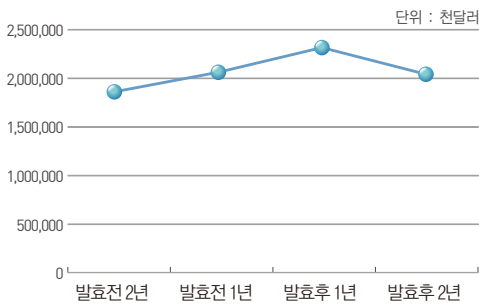
발효 전 2개년과 발효후 2개년을 평균해 보면,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군에서 수출 증가 혹은 유지가 시현되었다. 특히 화학공업제품은 발효전 2개년대비 발효후 2개년 1.4배로 확대되었다. 對벨기에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FTA 발효2년 전에는 271,679천달러였으나, 발효2년차에는 456,196천달러로 1.7배 증가하였다.

벨기에 화학공업제품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가 약 75%를 점유하고 있다(MTI 3단위 기준). 동 제품들의 수출은 각각 FTA 이후 1.6~1.7배 성장하면서 벨기에로의 화학공업제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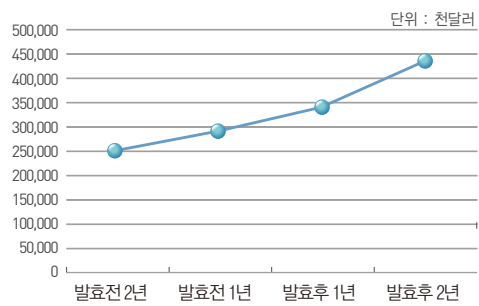
수입 : 화학공업제품에 수입 편중되어 있으며, 발효 후 2년 기준 전체 수입 47.2% 차지

벨기에 수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수의 산업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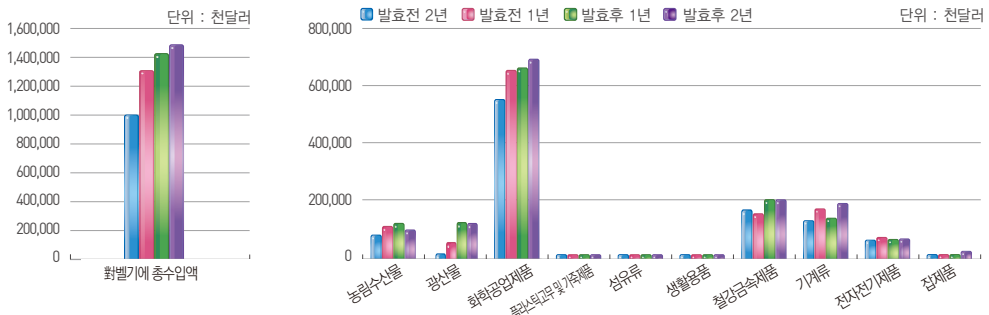
| 그림 3-14 | 對벨기에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5 | 對벨기에 화학제품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6 | 對벨기에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특히,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2년 기준 전체 수입의 47.2%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EU FTA 발효 후 2년차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잡제품의 경우 발효 후 2년차 기준 수입비중은 2.1%로 미미하나, 협정 발효 2년전 6백만달러에서 협정 발효 후 2년차에는 30백만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④ 이탈리아

수출 : 내부위기로 철강금속 산업 수출 증가

이탈리아 수출을 발효전 2개년과 발효후 2개년으로 평균해 보면, 산업별로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에서의 수출 증가가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對이탈리아 철강금속제품의 수출 증가 추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對이탈리아 철강금속제품 수출은 FTA 발효 2년전에는 425천달러였으나, 발효2년차에는 633천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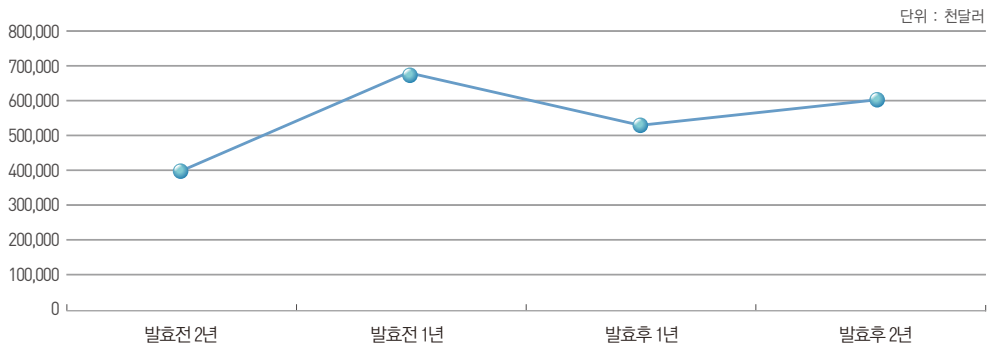
對이탈리아 주요 철강금속제품 수출 품목은 레일 및 철구조물, 주단조품, 합금철 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등이다.(MTI 3단위 기준)

최근 이탈리아는 최대 철강업체 일바(Iva)의 유독성 오염물질 배출로 용광로 폐쇄의 명령이 결정되면서 이탈리아 내에서의 EU 역외산 철강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2년 세계 11위 철강 생산국이었으나 환경오염 등 악재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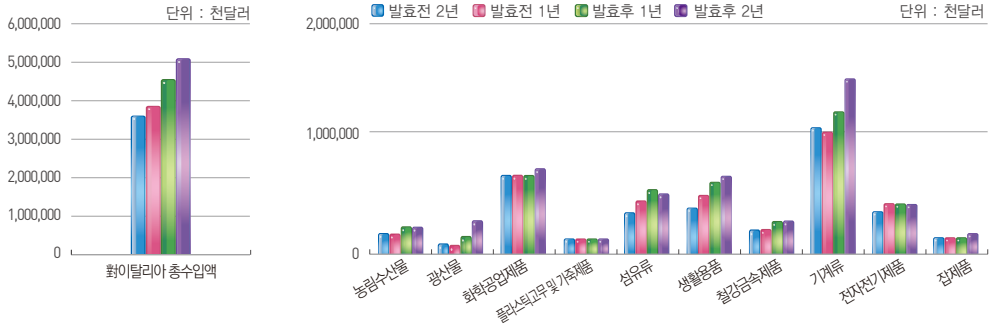
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2013년 1분기 이탈리아 내 철강 수입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한국과 터키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4%, 179.6% 증가 실적을 보였다.²⁰⁾ 이탈리아 철강 시장은 FTA와는 별개로 이탈리아 내부 위기요소에 의해 철강 수요가 확대된 사례이다. 이와 같은 해외 시장 환경 변화는 철강산업의 수출 점유율 확대의 주요한 기회로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그림 3-17 | 對이탈리아 철강금속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20) KOTRA(2012), 이탈리아, '한국산 철강수입 두배로 늘어나'참고하여 작성

그림 3-18 | 對이탈리아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수입 :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 기계류에서 수입 증가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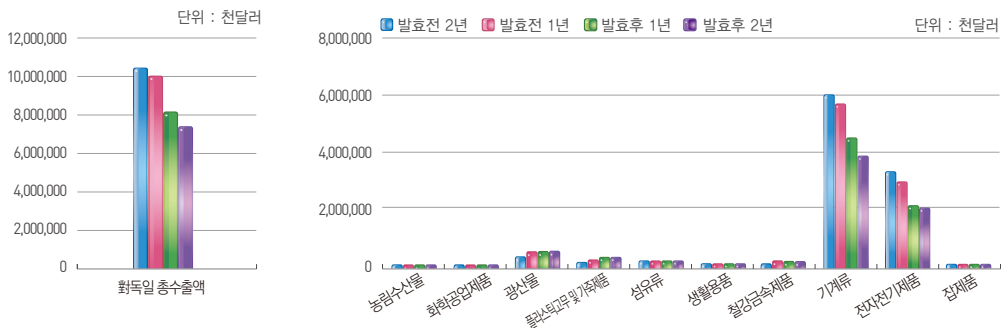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의 수입은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생활용품에서의 수입이 발효후 2년차과 발효전 2년차 비교 시 눈에 띄게 나타난다. 특히 기계류의 경우 발효 후 2년기준 전체 구성비중의 30.4%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협정 발효 전 2년차부터 발효 후 2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⑤ 독일

수출 : 섬유제품 수출 한·EU FTA 이후 발효전 2년과 비교하여 1.3배 증가

독일로의 수출은 기계류, 전자전기산업이 한·EU FTA 발효 전 2년과 발효 후 2년의 평균치 비교시 증가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협정 발효 후 2년차 對독일 수출은 발효 1년차와 비교해 25% 감소하였으며, 이는 EU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정체와 재정위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9 | 對독일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이외에 섬유류의 경우 발효 2년전 185백만달러에서 발효 후 2년 245백만달러로 1.3배 증가하였다.

독일로의 섬유제품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나가려면 산업용 기능성 섬유, 특수 제지 소재 등의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하여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수입 : 자동차 기본관세 8% 연차적 하락, 디젤 중심 수입 증가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한·EU FTA 발효 2년전 수출은 13,558백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18,275백만달러로 약 30%이상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생활용품, 잡제품, 광산물 등에서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에서는 수입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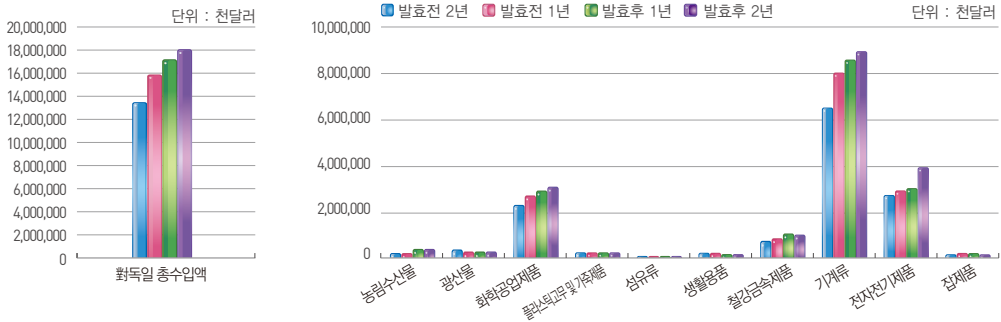
특히 발효2년차 기계류는 발효 2년전에 비해 2,411백만달러의 수입액 증가가 있었다.

기계류의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자동차이다. 독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는 한·EU FTA 발효 2년전 1,646백만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3,232백만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독일산 자동차는 2004~ 2008년간 일본산 자동차에게 내주었던 판매점유율 1위 기록을 2009년부터 회복하였으며, 2013년 1분기에는 전체 수입차 시장의 7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한·EU FTA의 발효로 자동차는 기본관세 8%가 연차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7월 현재 1.6%의 관세만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 자동차 업계는 한 국시장을 타겟으로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 그림 3-20 | 對독일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21) 한국수입자동차협회(<http://www.kaida.co.kr/>) 홈페이지 게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특히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디젤, 소형차 부문이다. 디젤엔진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소음과 매연의 이미지를 벗고 최근 클린디젤=그린카=친환경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산차에는 디젤 주력 모델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자동차 시장 내에서 다양한 제품개발을 시도한 독일산 디젤차가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관세인하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친환경 기술력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는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판매시장의 6.9%의 점유에서 2012년 10.01%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판매된 수입차의 74.3%가 유럽산으로 나타났다. 더해서 독일자동차 업계는 최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소형차량을 정식 출시하는 등 적극적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II. 한·EU FTA 발효 2년과 시사점

1) EU 실물경기 위축으로 가격경쟁력 중요성 증대, FTA 관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EU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무역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EU 실물 경기 위축은 시장 내 소비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구매 결정시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EU측 바이어는 한·EU FTA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관세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으로 수입선을 변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도 2013년 2월 한·EU FTA의 성과로서 양측 모두 자유화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對EU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둔화폭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국 무역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는 국내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EU의 FTA 정책 변화와 양면성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2월 유럽의회에 한·EU FTA 이행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는 등 한·EU FTA를 통한 무역확대정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 EU는 최근 미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시도 등 FTA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영국은 EU·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영국 경제에 100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EU 내 어떤 국가보다 해당 조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FTA로 인해 EU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한·EU FTA 발효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3%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자동차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대외 교역은 10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대외교역이 프랑스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올랑드 정부는 2012년말 “중장기 대외수출 확대 지원정책”을 발표 신흥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4개 산업분야를 새로이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등 47개국을 전략적 수출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²²⁾ 4대 분야는 농식품, 의료, 도시개발,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식품, 의료, 정보통신 3개 분야에서 전략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EU회원국은 FTA를 무역확대의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지지하고 있으며, 무역 악화에 대해서는 수출 확대정책, 자국 산업보호정책 등 양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수출 확대효과와 더불어 관세환급관련 세이프가드 조치 움직임 등 EU내 FTA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한·EU 무역 변화 소비재 중심 수출 품목 다변화

한·EU FTA 발효 2년차 규모는 작지만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주목된다. 이는 한·미 FTA 발효 1년차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된 결과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는 악재 속에서 발견되는 FTA 효과라 하겠다. 모직물, 의자 관악기 등은 발효 2년차에 창출된 신규 수출 품목이다.

한편 농림수산물의 수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 발효 2년차 농림수산물의 對EU 수출 증가는 발효 1년차에 비해 5.4% 증가하였다.

특히 영국으로의 감귤 수출은 FTA로 현지 가격경쟁력이 더해지면서 수출 활성화를 시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잔류농약 등 현지 검역 기준에 적합한 품질 개선 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EU 회원국별, 산업별 수출 특화 전략 필요

한·EU FTA 발효 2년차 교역이 적자로 전환되었지만, EU 회원국의 수출입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농림수산물, 네덜란드는 생활용품, 벨기에에는 화학공업제품, 이탈리아는 철강금속제품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22) 주프랑스대사관(2013), 프랑스 상반기 경제동향 및 주요 경제정책

무역은 FTA 특혜가 아니더라도 현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창출한다. 무역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유기체이다. 원론적이지만 EU내 각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별 수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이탈리아에서 최대 철강업체의 유독성 오염물질 배출로 용광로 폐쇄가 결정되면서, EU 역외산 철강 수입 수요가 증가가 대표적 사례이다. EU는 개별 국가로 구성된 만큼 내부환경 변화 및 그에 맞는 시장맞춤형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5) 일·EU FTA 경계, EU 시장 선점 공고화 노력

EU는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의 FTA를 시도하고 있다.

2012년 EU의 對한 수입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EU와 일본과의 FTA 논의는 對EU 특혜 수출의 수혜를 일정부분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EU 시장의 선점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특히 선박구조물, 반도체 제조용장비, 기타 화학공업 제품 등 수출입상위 규모는 크나, 상대적으로 FTA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FT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 컨설팅 및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해서 농림수산물과 같이 상대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산업군에 대해서는 특화된 FTA 활용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특집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사후관리 대응방안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협정에서는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자”는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아야 특별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올해는 동 협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해로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았던 업체에서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갱신 또는 점검이 필요한 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제도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 증명의 한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수출자의 개념은 한·EFTA FTA에서 도입되었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인증수출자제도는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의 의무규정을 계기로 확산되었다.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EU FTA 발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3년은 협정 발효 2년차가 되는 해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도 함께 도래했다.

인증수출자 종류 및 인증기간

인증수출자의 종류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과 업체의 모든 생산품목에 대해 관세청에서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보다는 좁은 범위를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수출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특정 협정과, 특정 수출품목(HS 6단위)에 대해 수출업체에게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표 3-4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품목별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직할세관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교육이수 등 요건은 업체별, 품목별에 상관없이 필수사항이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위한 사내 프로세스 구축이 적절하게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사내에 FTA 업무매뉴얼 또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세관에서 법규준수도를 추가로 검토한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해당되는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여부를 확인한다.

즉, 대상 품목은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수출자가 활용하는 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 충족 여부를 소명하면 된다.

| 표 3-5 |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전산시스템/ 원산지기준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보유	•수출(생산)물품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HS 6단위)
원산지관리 전담자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외부 전문가 포함)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교육점수 합이 20점 이상	•교육점수 합이 10점 이상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법규준수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미거부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 •미위반 •최근 2년간 부정행 방법으로 C/O 미신청	없음

우리나라에서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은 2011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전체 인증업체 6,386개 중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449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5,937개이다. 비교적 인증이 용이한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증수출자제도를 명시한 한·EU FTA의 영향으로 2011년은 2012년에 비해 3.2배정도 많은 기업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다.

세관별 지정실적은 서울세관이 가장 많으며, 2013년 3월말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92개 업체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업종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주로 획득하였다. 그리고 FTA 협정 가운데 한·EU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타 FTA 협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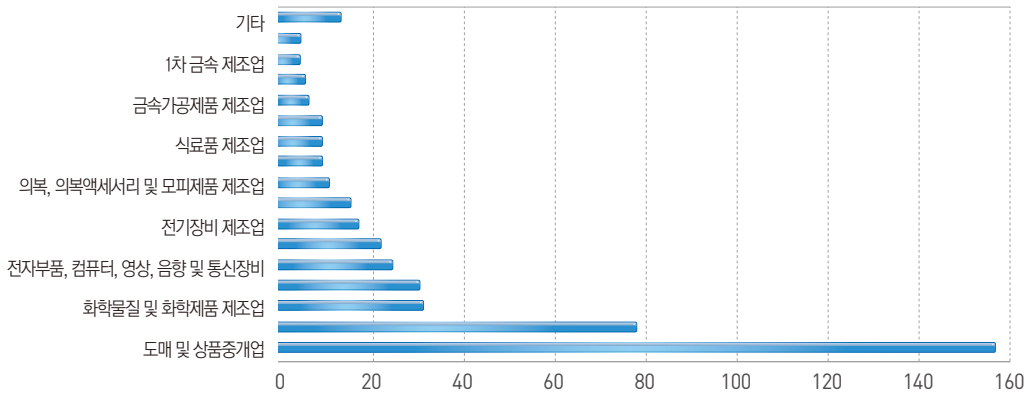
| 표 3-6 | 인증수출자 현황

단위 : 개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1~6월		총합계	
	전체	對EU	전체	對EU	전체	對EU	전체	對EU
업체별 인증수출자	294	294	106	106	49	49	449	449
품목별 인증수출자	4,018	3,718	1,211	1,146	708	525	5,937	5,389
합계	4,312	4,012	1,317	1,252	757	574	6,386	5,838

| 그림 3-21 | 인증수출자 업종별 지정현황(2013.3월말~2013.8월)

단위: 개수



주 : 서울세관에 한함

품목별 인증수출자 가운데 약 41%가 1개 물품, 1개 협정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0개 물품이하에 대해 품목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약 93.9%로 대부분의 기업은 소수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인증품목은 기계류가 약 27%, 전자전기제품과 섬유류, 화학공업제품이 각각 1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다음 [표 3-7]에서처럼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지정받은 14,498개 기업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인 경우가 전체의 62%, 조합기준이 5%를 차지하였다. 이는 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더 많이 지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II.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제도

자율점검 및 선별관리로 이원화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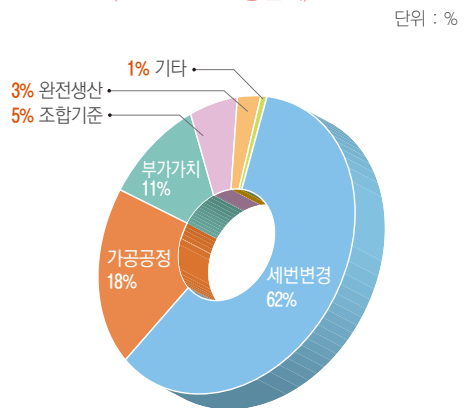
한·EU FTA 발효 후 2년이 지남에 따라 한·EU FTA 발효 전후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들은 인증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EU로의 특혜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한 일차적인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정) 확대에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시점으로 FTA 수출기업과 관세행정의 포커스가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철저한 갱신 심사 준비는 EU측으로 부터의 검증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 주사이다.

표 3-7 |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현황 (2010~2013.상반기)

단위 : %

구분	기업수	비율
세번변경기준 ²³⁾	8,967	62
가공공정기준 ²⁴⁾	2,627	18
부가가치기준 ²⁵⁾	1,604	11
조합기준 ²⁶⁾	791	5
완전생산기준 ²⁷⁾	420	3
기타	89	1
총합계	14,498	100

그림 3-22 |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현황 (2010~2013.상반기)



23)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24)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식물성 생선품·석유제품·화학제품·플라스틱·섬유제품 등에 채택함.

25)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함.

26)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대상물품을 해당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27)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농수산물, 광산물에 사용됨.

우선 수출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이후에도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제도는 인증수출자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점검 방식과 세관의 선별관리 방식의 두 형태로 시행중에 있다.

자율점검은 말그대로 인증수출자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를 세관에 제출, 이후 세관담당자가 검토 후 전산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선별관리는 [표 3-8]에서 설명한대로 인증고시 제 17조 1항 각 호의 선별 기준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확인 실시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은 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 도래 1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관리는 수출자가 인증받은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인증품목 생산공정 변경, 원산지결정 기준 변경)를 대상으로 선별한다.

인증수출자 갱신 및 변경 유의사항

기업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갱신 시점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격을 연장신청하기 위해서는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증만료일이 2014년 9월 1일이라면 연장신청 만료기간은 2014년 8월 1일이 된다.

| 표 3-8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관련 사항

구분	자율점검	선별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전체를 점검대상으로 함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1년내에 해당되는 기업 중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제외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통관 및 인증사항 변경 원산지관리전담자 및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원산지 소명서²⁹⁾ 원산지 (포괄)확인서 및 제조공정 원재료 관리 및 원가관리 서류보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생산공정 등 원산지 관리현황의 부합 인증요건 유지 및 인증사항 변경시 의무 이행 여부 원산지 허위 부정 발급(신청)여부 등

28) 세관장이 원산지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세관장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총족으로 판명된 경우/ 세관장이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9)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

이때 인증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다. 단, 인증 사항(업체상호, 사업자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미인정되거나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품목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자율점검 관리를 통해 상대국 검증도 대비

무엇보다 원산지 자율점검은 특혜수출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상대국의 검증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3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수행중인 관세청과유관기관의 인증수출자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분석결과 상대국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질의빈도는 높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기업이 적절한 원산지 입증을 못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기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정책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대비 및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더불어 이행할 필요가 있다.

Ⅲ. 향후 인증수출자 운영 방안 : 업체별로 통합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올해는 특히 한·EU FTA 2주년이 되는 시기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의 갱신 및 현재의 원산지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터닝포인트를 맞이하였다.

본 제도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품목별과 업체별로 이원화된 제도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단일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³⁰⁾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에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협정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였던 것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만을 고려해 원산지 관리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환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해당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교육 확대 실시를 계획 중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외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급증과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단순 오류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관세당국의 사전노력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2011년 84개 기업에서 2013년 6월에는 211개 기업으로 2.5배로 큰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30) 관세청은 5월 22일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을 발표

FTA 특혜 활용과 검증 요구가 비례함은 상식적이다. 이에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의 단일화는 여러 장점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비해 법규 준수도 부분을 추가로 심사하는데, 향후 원산지 증명의 기재 오류 방지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 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로의 일원화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EU FTA 발효 당시 수출업체에서는 단기간의 서류 준비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다 보니 해당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인증수출자 갱신을 기점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기업의 준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은 국내 관세행정 에 대응하는 1차적 목적보다 상대국으로부터의 검증 의 대비 차원에서라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품목분류의 확인과 변경, 원산지 관리 전반에 관해 확인 하는 등 인증수출자 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섬유제품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섬유제품

- 분석 배경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8위의 섬유수출국이며, 섬유생산 기술은 세계 5위 수준이다. 또한, 원자재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완제품의 3분의 2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의존형 및 수출주도형의 복합적인 산업구조이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섬유산업은 관세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 FTA 효과와 함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을 포함한 FTA국별 섬유상위품목의 수출입 동향, 주요 품목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해 본다.
- 분석 범위 : 섬유제품

1. 섬유제품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1) 섬유제품 교역동향

FTA 국가로의 섬유제품 교역 지난 3개년간 평균 수출 45.6%로 안정적인 수준, 수입은 지속 증가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2012년 對세계 수출은 155억 불, 수입은 119억불을 기록하였다. FTA 체결 국가와의 수출은 72억불, 수입은 48억불로 수출규모가 약 1.5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섬유제품 전체 수출입 가운데, FTA 국가로의 수출은 46.4%, 수입은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국가와 섬유류 교역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FTA 국가로의 교역은 지난 3개년('10~'12년)동안 평균수출은 45.6%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평균수입은 3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1 | 우리나라 섬유제품 수출입 현황(2010~2012)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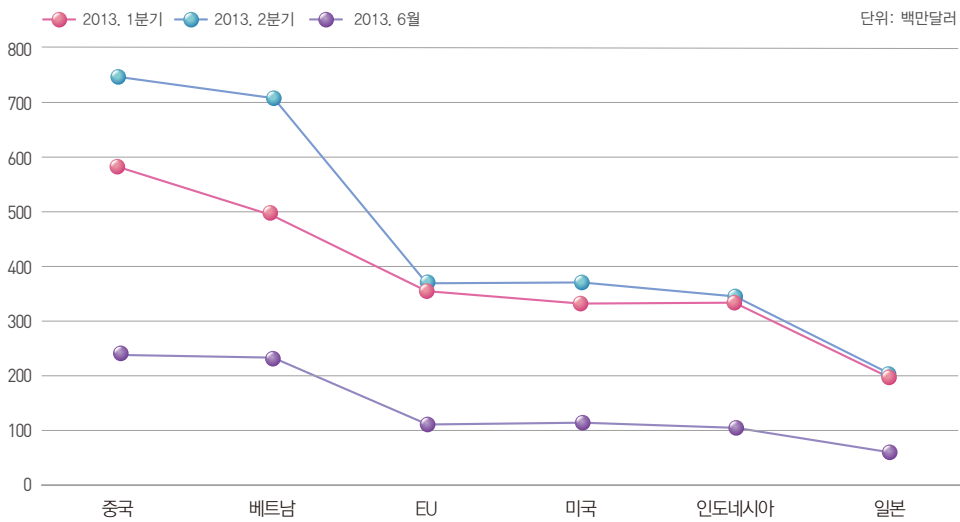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³¹⁾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3개년 평균값	15,142	6,909	45.6	11,514	4,452	38.7
2012	15,595	7,231	46.4	11,989	4,898	40.9
2011	15,932	7,400	46.4	12,628	4,870	38.6
2010	13,899	6,095	43.9	9,924	3,588	36.2

31) 섬유제품 對세계 수출실적 중 FTA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국가별 교역현황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이 주요 교역 국가이며, 서구권에서는 EU와 미국과의 섬유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국과의 섬유제품 수출현황을 파악해보면, 중국, 베트남, EU와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이 수출증가로 0.5% 상승하였다. 對베트남은 직물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6월 기준 국가별 수출현황은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7%감소하였으나, 중국(2.7%), 베트남(26.8%), EU(4.9%)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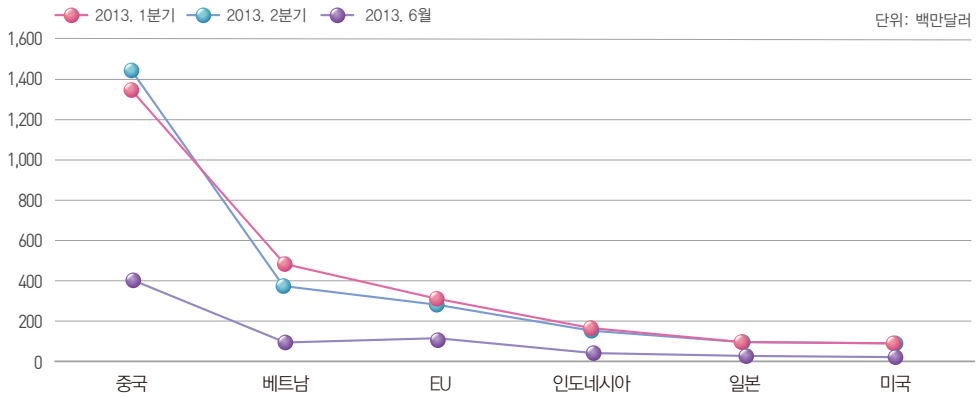
| 그림 4-1 | 주요국 수출실적 현황



우리나라 섬유제품 수입현황은 중국, 베트남, 미국 및 EU로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으로 섬유원료, 섬유사 및 섬유제품의 수입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3%가 증가하였다.

對베트남 수입은 4.7% 상승한 1억 300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의류수입이 23.9%(5,330만불)로 전체수입의 51.7%를 차지한다. 수입비중은 2013년 6월 기준 중국이 47.7%, 베트남 11.9%, EU 0.8%, 미국 4.2%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13.6% 감소하였다.

| 그림 4-2 | 주요국 수입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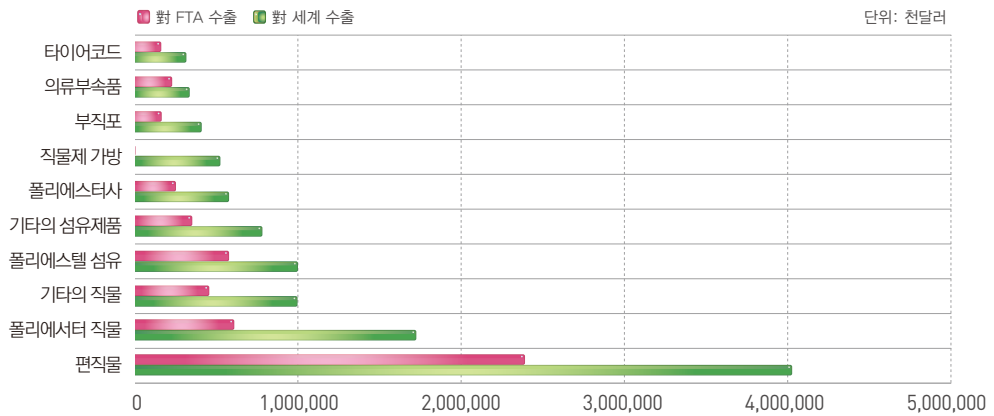


2) 섬유제품 수출 품목

2012년 對세계 섬유제품 수출상위 품목은 편직물, 폴리에스터 직물, 기타의 직물 등이다.

수출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의류부속품(71.9%) > 폴리에스텔 섬유(60.0%) > 기타의 섬유제품(50.1%)이다.

| 그림 4-3 | 섬유제품 수출 주요품목과 FTA 점유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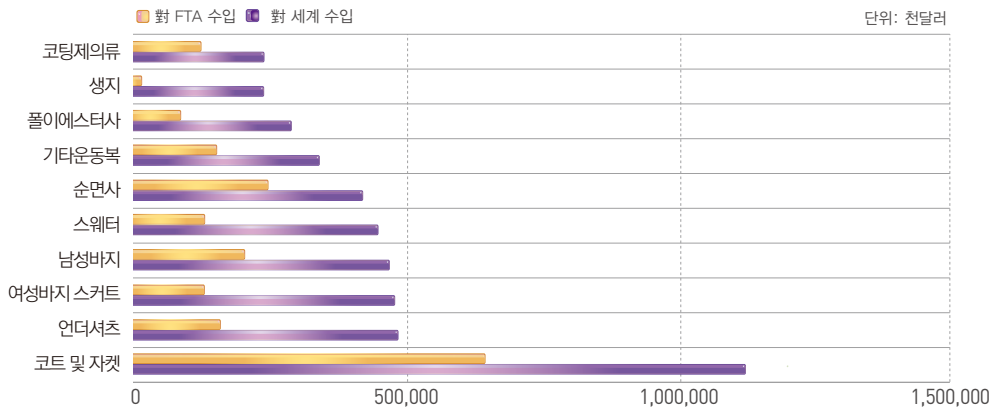


3) 섬유제품 수입 품목

2012년 섬유제품 수입상위 품목은 코트 및 자켓, 언더 셔츠³²⁾, 여성바지 스커트 등으로 의류의 비중이 높다.

수입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순면사(59.9%) > 코팅제의류(54.8%) > 남성바지(45.7%) > 등이다.

| 그림 4-4 | 섬유제품 수입 주요품목과 FTA 점유율 (2012)



II. 섬유제품 FTA 특혜 교역의 특징

2012년 섬유제품 수출규모 ASEAN, 미국, EU로부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섬유제품 FTA 특혜 수출

2012년 섬유제품 중 FTA 특혜가 가능한 'FTA 대상 품목'³³⁾의 수출액은 약 49억불이다.

FTA국 중 수출 실적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권은 ASEAN, EU, 미국으로 구성비중³⁴⁾은 각각 42.3%, 27.7%, 26.0%를 차지한다.

한편, ASEAN의 총 수출실적은 다른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나, FTA 활용비중은 미미하다. 이는 ASEAN 개별 국가별로 섬유제품의 양허수준이 다르며, 과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겨 수출하였으나, 아시아 국가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현재는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여 수출하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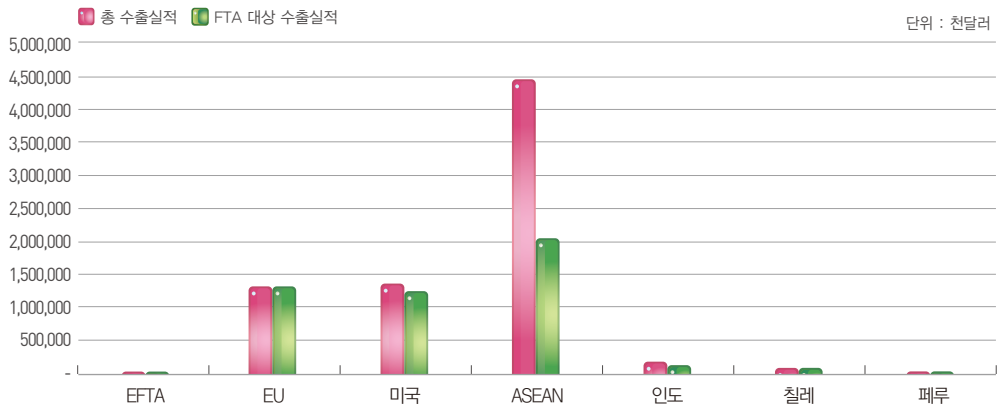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의류 기업은 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자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2) 속옷, 내복으로 입는 셔츠의 총칭

33) FTA 협정 체결로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하락하여 우리나라가 수출시 FTA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

34) FTA 대상 수출금액 총계 중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 그림 4-5 | 협정별 섬유제품 수출현황(2012)



시장전문가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지만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구매할 의향이 있고, 앞으로 많은 업체가 미국으로 회귀를 고려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국내기업은 미국진출 타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섬유제품 FTA 수출 활용 EU의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FTA 활용수준 높음

수출실적 1위 국가인 중국을 제외하고, 수출규모와 FTA 활용비중이 높은 국가는 EU와 미국이다. EU 주요 품목의 평균 FTA 활용 수준이 84.5%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위 10대품목의 FTA 활용수준이 가장 높았다. 특히, EU에서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이며, 이중 섬유제품 관세율은 7.9%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였다.

EU 주요품목의 FTA 활용수준이 높은 것은 한·EU FTA로 인해 관세철폐 효과가 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U 섬유제품 개별 품목 중에서는 편직물의 수출규모와 FTA 활용비중이 높았다. 이는 편직물의 기존 관세가 8%이던 것이, FTA 협정 이후 무관세가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상위 10대품목 평균 FTA활용수준은 66.1%로 수출규모 대비 FTA 활용비중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섬유제품의 원산지 자격으로 원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하여 재단, 봉제 등을 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역내에서 실을 짜고, 역내산 실로 옷감으로 만들어, 옷을 재단하고 봉제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직물기준을 사용하여 직물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며, 이후의 생산 공정³⁵⁾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미 FTA 원사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있다.

이외에 섬유제품의 인도로의 수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내 섬유산업이 자체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내수시장의 제품 구매력이 타 FTA 경제권에 비해 낮은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표 4-2 | 섬유제품 협정별 수출 주요품목 및 특징(2012)

협정	주요 품목	특징
ASEAN	편직물, 폴리에스터 직물 부직포	다른 FTA국과 비교하여 섬유류 수출실적은 압도적으로 높음 상위 10개 품목의 FTA 활용비중이 저조함
미국	편직물, 폴리에스텔 섬유 양말, 타이어 코드	폴리에스텔 섬유, 염색직물 수출실적 및 FTA 활용비중 높음 EU보다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평균 FTA 활용비중이 낮음 ³⁶⁾
EU	편직물, 폴리에스텔 섬유 장갑, 타이어코드	폴리에스텔 섬유, 편직물 수출규모 및 FTA 활용비중 높음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FTA 활용비중 84.5%
인도	기타의 섬유제품, 부직포	섬유류 수출규모가 타 FTA 국가에 비해 적음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 비중 역시 낮은 편
칠레	편직물, 폴리에스텔 섬유 로프, 재생직물	수출규모 대비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 비중 평균수준 폴리에스텔 섬유, 로프의 수출규모 및 FTA 활용수준 높음
페루	편직물,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로프	부직포, 편직물 수출규모 및 FTA 활용 비중 높은 편
EFTA	양말, 기타의 섬유제품 부직포, 장갑	양말, 장갑 수출규모 크며, FTA 활용비중도 높은 편 상위 10대품목의 수출규모 FTA국 중 가장 적음

35) 제직 및 편직부터 염색 및 날염 또는 재단 및 봉제

36)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사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타이어코드의 경우 반드시 역내산 인조섬유를 사용해야 함)

2) 섬유제품 FTA 특혜 수입

섬유제품 FTA국 수입실적 서구 경제권인 EU와 미국에서 수입비중 높으며, 아시아권인 ASEAN 및 인도에서 수입비중 역시 돋보임

2012년 섬유제품 FTA 대상품목의 수입규모는 약 46억달러로 FTA 섬유제품 수출실적보다 다소 적다. ASEAN과 EU에서 차지하는 비중³⁷⁾이 각각 60.4%, 26.2%이며, 미국이 6.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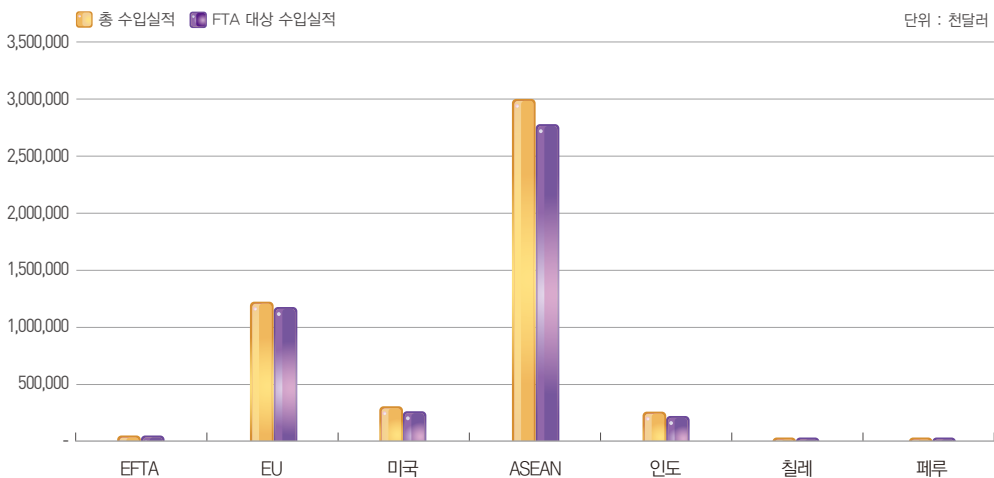
ASEAN은 수출과 유사하게 FTA 경제권 중 섬유제품의 수입실적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FTA 국가별로 살펴보면, ASEAN 수입상위 10대 품목은 평균 FTA 활용 비중이 9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코트 및 자켓, 남성바지 등의 의류제품이 ASEAN 국가로 수입되었다.

EU에서는 기타 재생섬유와 침구이불이 수입규모 및 FTA 활용측면에서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수입실적이 컸던 직물제 가방(HS 4202.12-2000)의 경우 8%에 달하던 관세가 협정이후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음에도 FTA 활용비중은 타 품목과 비교하여 낮았다. 이는 FTA 협정이후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출기업의 마케팅 전략인 고가정책으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거나, 유럽현지 기업에서 FTA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세계 최대 면화 생산지인 인도에서의 면화수입은 상위 10대품목 중 수입실적에서 70%이상을 차지하였다.

| 그림 4-6 | 협정별 섬유제품 수입현황 (2012)



37) FTA 대상수입 총계 중 개별 국가의 비중

| 표 4-3 | 섬유제품 협정별 수입 주요품목 및 특징 (2012)

협정	주요품목	특징
ASEAN	코트 및 자켓, 남성바지 기타운동복, 언더셔츠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비중 94.5% 주요품목의 FTA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짐
미국	아세테이트사, 부직포 나일론사, 양탄자	아세테이트사, 나일론사 수입규모가 크며, FTA 활용비중 높음
EU	직물제 가방, 침구이불 스웨터, 손수건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 평균 비중 60%를 차지 기타재생섬유, 침구 이불 수출규모·FTA 활용비중 높음
인도	폴리에스터사, 블라우스 양탄자, 기타의 섬유제품	순면사의 수입규모는 상위 10대 품목 중 70% ³⁸⁾ 이상 차지
칠레	기타의 재생섬유, 기타의 섬유제품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규모 및 FTA 활용 비중 다른 FTA국가의 섬유류와 비교해 가장 낮은 편
페루	소모, 스웨터 남성아우터셔츠, 스웨터	소모 ³⁹⁾ , 소모사 ⁴⁰⁾ 의 FTA 수입활용 비중 높은 편
EFTA	신사복, 스웨터 편직물, 나일론 직물	수입규모는 적으나 FTA 활용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임

38) FTA 대상수입실적(상위 10대 품명) 중 면사가 차지하는 비중

39) 양모 섬유 중 양질의 긴 섬유를 선출하여 섬유의 긴 방향으로 가지런히 한 것

40) 소모방적으로 만든 가는 털실로 소모사의 직물은 정장용에 주로 사용됨

FTA 활용: 섬유제품 성공사례

사례 1 (인적자원 활용) B사 원산지 관리사 활용하여 수출실적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B사는 극세사를 사용하여 기능성 클리너 제품과 욕실용품을 제조하는 직물제조업체로 주로 유럽권(스웨덴, 프랑스 등)국가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원재료 및 중간제품 공급업체에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려하였고, B사가 소기업이다 보니 FTA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 직원 중 업무신뢰도가 높은 직원에게 원산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FTA 전문성을 확보시켰다. B사의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직접 발로 뛰어 협력사를 설득하고, 담당자의 노력으로 해당기업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B사는 한·EU FTA 활용에 따른 12%의 관세절감 효과로 협정 발효 1년 후 전년 동기대비 수출실적이 40% 증가하였다.

사례 2 (원산지결정 기준 활용) C사의 원산지 결정기준 예외규정 활용

C기업은 방직용 섬유제의 가방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 침체기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C사는 한·미 FTA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 충족이 어렵다는 인식과 섬유제품은 다단계 생산구조로 되어 있어 원산지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C사는 섬유제품 원사기준의 예외조항(Single Transformation)*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내었다.

* 방직용 섬유재료의 가방(HS 4202.22, 4202.33, 4202.92)와 재킷·블레이저(HS 6104.33, 6104.39)의 경우 단일 변경 기준 적용 가능

이와 함께 C사는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인 원산지충족 방법, 서류, 활용혜택,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관해 FTA 컨설팅을 받았다. 한·미 FTA로 인해 C사의 방직용 섬유제 가방은 협정 발효 전 대비 수출실적이 238%로 증가하였다.

사례 3 (지역특화산업 개발)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FTA 수출모델

H 연구소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핵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정보 분석 등을 통해 섬유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업체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섬유 제조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에 관한 정보가 뒤쳐져 있었다. 이에 H 연구소는 세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FTA 업무지원, 제도개선, 섬유산업관련 연구소의 지원활동을 해나갔다. 또한, 'FTA 민원창구'를 개설하였으며, 한·미 FTA 설명회 등 교육을 상시 개최하여 섬유제품 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 FTA 발효 후 경기북부지역 섬유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EU로 수출되는 섬유제품 또한 18%의 수출증가 효과가 발생하였다.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FTA 수출 주요 품목

섬유제품 FTA국 수출 공통 품목 편직물, 폴리에스테일 섬유, 폴리에스터 직물 등

섬유산업의 FTA국 수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수의 국가(미국, EU, ASEAN)로 섬유제품 수출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EU로 수출되는 상위 10대 품목은 대부분 수출규모 및 평균 FTA 활용 비중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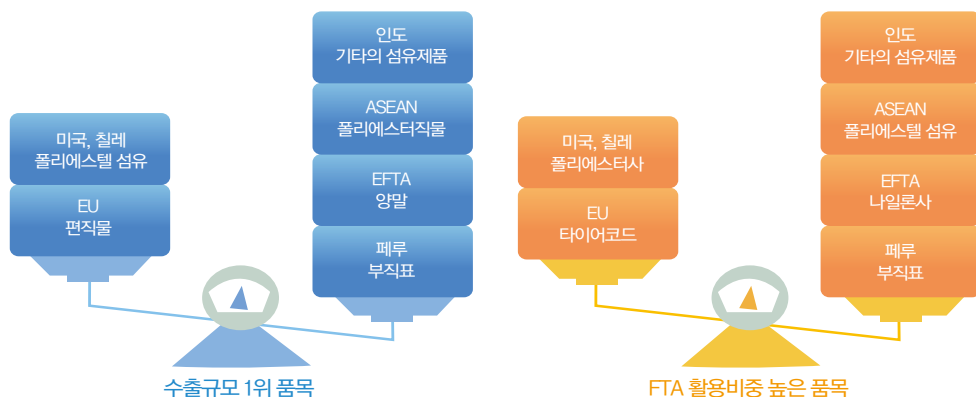
이는 FTA 체결전 EU 섬유제품은 10%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협정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로 섬유제품 FTA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실적이 공통적으로 높은 품목은 편직물, 폴리에스테일 섬유, 폴리에스터 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 FTA 국가로의 수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 수출규모 1위 품목인 편직물의 경우 기존 관세가 8%였으나, FTA 발효 이후 무관세가 되었다. 해당품목은 수출규모 및 FTA 활용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FTA 유망품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FTA별 수출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타이어코드와 폴리에스테일 섬유이다. 특히, 타이어 코드는 산업용 섬유⁴¹⁾로 우리나라가 기술과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FTA 활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SEAN에서의 섬유제품 수출실적은 FTA국중 1위였으나, FTA 활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했다. 앞으로 ASEAN 시장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FTA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용 섬유, 고기능성 섬유소재 발굴, 염색가공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7 | 협정별 섬유제품 특혜수출 FTA 활용상 특징



41) 비의류용 섬유로 분류되며, 기술적·기능적 성능과 물질적 성질이 미적 또는 장식적 특성보다 더 중요시되는 섬유

2) FTA 수입 주요 품목

섬유제품 FTA국 수입 품목 국가별로 다양하며, EU(직물제 가방), 미국(아세테이트사)

FTA 국가별로 섬유제품의 수입실적 1위 품목은 EU에서는 직물제 가방, 미국은 아세테이트사, 인도는 순면사 등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도의 면화품목은 FTA 10대 대상품목 중 70%를 차지하였다.

FTA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EU는 기타재생섬유, 미국에서는 나일론사로 파악되었다. 이외에 EFTA에서는 폴리에스터 직물과 나일론 직물이 FTA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FTA의 전체 수입규모는 다른 FTA 경제권에 비해 적은 편이나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섬유제품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미국, 페루, 칠레의 경우 타 FT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채택

개별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미국, 페루, 칠레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격한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한 것은 FTA국가별로 자국내 섬유산업의 중요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원사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의 섬유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한·EU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미국보다 유연하게 되어 있으며, 원단의 경우 원사기준이, 의류제품의 경우 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그림 4-8 | 협정별 섬유제품 특혜수입 FTA 활용상 특징



[표 4-4] FTA별 섬유류 품목별 기준 비교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원사기준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1.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2. 부가치기준	직물기준	1. 섬유사/직물: 원사기준 2. 의류:직물기준	원사기준	원사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3), 한·미 FTA 검증대응전략

주 : 협정별로 포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섬유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FTA 체결국 중 섬유제품 주요 교역국인 한·미 FTA의 관세철폐수준은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의 미국측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우리나라 관심 품목의 시장접근이 개선되었다. 원산지기준에 있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었다. 예를 들어, 가방·남성셔츠 등의 제품은 단일실질 변경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아크릴 및 재생섬유, 재생 필라멘트사는 역외조달을 허용하였다. 또한 역내 공급 부족 원료를 사용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특혜쿼터를 도입하였다. 특히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對미수출 생산 관련기업에 한해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례 제공하기로 하였다.

ASEAN에서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채택하였다. 한·ASEAN FTA에서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세번변경기준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요청으로 부가치기준을 병행기준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은 FTA국가로 시장진출시 원산지 결정기준과 개별 국가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통해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유제품의 FTA 활용비중이 낮은 국가는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FTA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업의 인지도 강화 또는 해당 국가내의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FTA 사후검증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EU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섬유산업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를 얻었다. 실제로 FTA국별 섬유교역현황(2012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EU의 수출규모⁴²⁾와 활용비중이 타 FTA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ASEAN은 수출규모는 FTA국 중 1위국으로 나타났으나, 개별국가의 산업적 특성 및 내수시장의 구매력 등의 요인으로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FTA 수출 활용비중이 EU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섬유산업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별국의 산업발달 및 중요도, 내수시장의 구매력, 정부기관의 정책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원산지검증대상을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세수손실이 크고 미국경제와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최우선 무역관리대상(PTI : Priority Trade Issues)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 미국의 대표적 최우선 무역관리대상 사후검증 가능성 높음

대표적 PTI 물품은 자동차, 섬유, 철강, 농산물 등으로 미국이 징수하는 관세징수액 중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7%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섬유를 자국의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원산지 검증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⁴³⁾ 또한, 올해는 한·미 FTA 발효 2년차가 되는 해로 미국의 섬유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원산지 검증방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숙지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검증은 미국세관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검증 방법은 서면 정보제공 요청, 서면 질의 또는 현장방문 조사의 형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검증이 진행된다.

또한 현장방문보다는 서면방식에 의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사후검증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출이전 단계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섬유제품 사후검증 대비방안 첫단계 : 수출계약 단계 HS CODE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

우선, 수출계약시 수출자는 HS CODE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 물품이라도 우리나라 세관과 미국 세관의 품목분류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에게 HS CODE를 문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수입자측에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미국 측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8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자는 미리 미국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미국 세관에서 수용가능한 양식인지 질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3) 월간관세무역(2013)미국세관의 의류제품 원산지검증 착안사항 및 검증 수위

섬유제품 사후검증 대비방안 두 번째 단계: 수출품 생산시 외부협력업체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전 노력 필요

수출품의 생산시, 외부협력업체를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원산지관리를 위한 내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따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관해 수출자는 업체일반정보, 작업순서표, 주요 생산공정 수행업체의 구분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업체일반정보는 생산 또는 가공을 의뢰하는 협력업체의 소재지, 담당자 등의 일반정보 및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 보유여부, 생산시설 종류에 대해 확인 후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수출자는 작업순서표를 작성하는데,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의 이름을 작성하고 순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에게 해당제품의 생산자 정보를 알려야 한다. 미국 수입자는 이를 기반으로 MID(Manufacturer's Identification) 코드를 생성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입하는데 해당제품의 생산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부여하는 주요 생산공정을 수행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원단의 경우 제직공정을 수행한 업체, 의류의 경우 재단봉제공정을 수행한 업체가 생산자에 해당된다.

이런 형태로 구분된 “주요 생산공정을 수행한”생산자는 미국 수입자에게 제공되는 상업송장에 별도로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섬유제품 사후검증 대비방안 세번째 단계: 원산지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와 유기적 협력 필요

이 외에 수출업체에서는 원산지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사내의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준수해야 할 세부업무 규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업체에서 원산지 내부규정을 만들면, 수출계약에서 협력업체와의 물품매매 또는 외부가공계약 역시 원산지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체결하며, 국내 원재료공급업체 및 외주가공업체와 별도의 원산지관리협정서 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⁴⁴⁾

1990년대부터 수출감소로 인해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섬유산업 거대시장인 EU와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미국의 섬유 수입관세는 평균적으로 7.9%, 의류는 평균 11.4%로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의 영향으로 섬유류 對미 수출은 전년대비 5.63%의 성장⁴⁵⁾을 기록하였다.

44) 섬유산업연합회(2013), 섬유패션산업 동향

45) KOTRA(2013),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성과분석

우리나라 섬유수출기업의 FTA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섬유 제품 가격경쟁력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 협정관세대우 보류 또는 배제는 물론,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져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섬유산업의 부흥을 지속해 나가려면 기업에서는 FTA 체결국의 사후검증에도 유의하여 수출 이전단계부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05

FTA 교역지도

FTA 특혜수출입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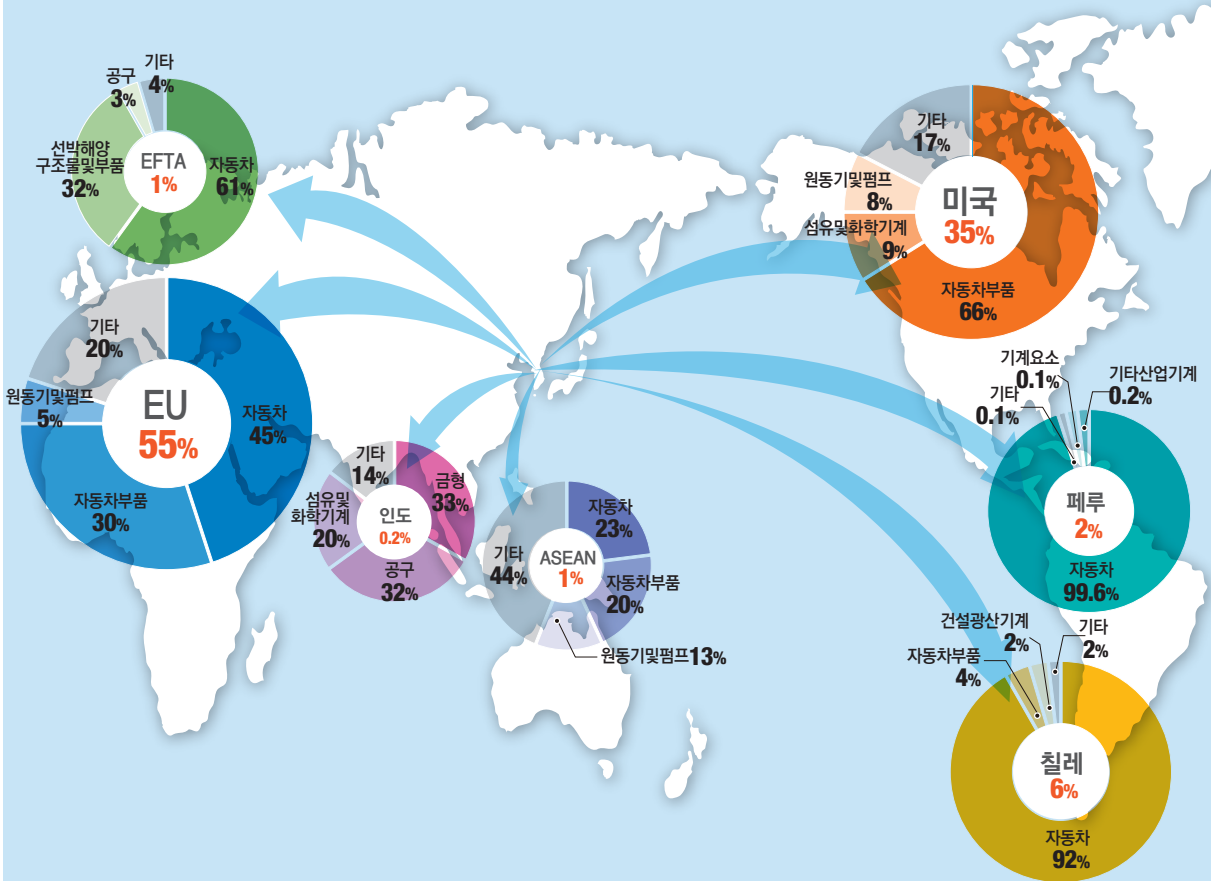
- **분석 배경** : 주요산업(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섬유류 등)에서의 수출입현황은 FTA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FTA 특혜를 적용받은 국가의 산업별 교역현황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개별 상위품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2012년 FTA국가별 산업변화(MTI 1단위 기준)와, 상위 3개 품목(MTI 3단위 기준)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았다.
- **주요 내용** : FTA별 MTI 1단위 수출입현황, FTA별 MTI 3단위 상위 품목

수출 :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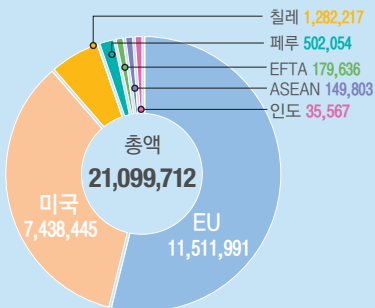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1,099,712(12.8%)	144,003,464(87.2%)	165,103,17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기계류 특혜수출금액



기계류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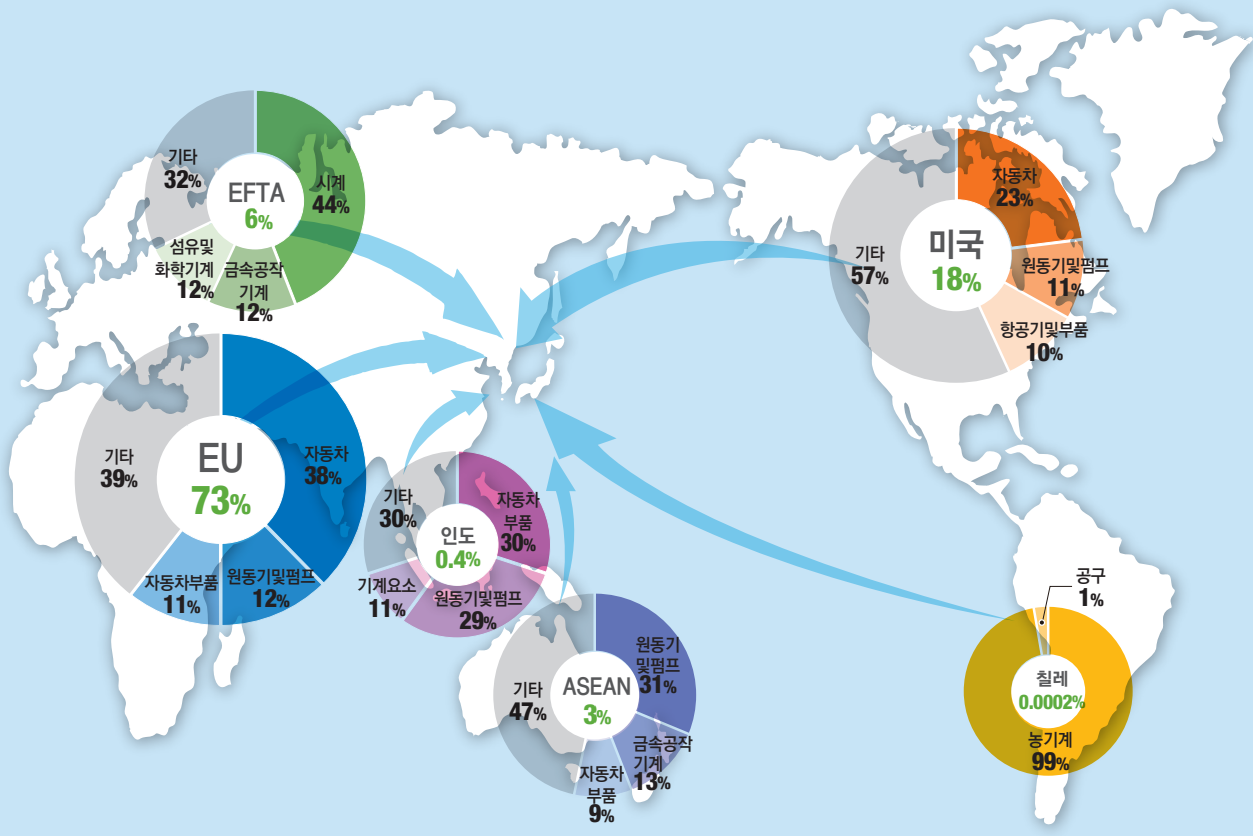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부품	8,392,859	39.78
2	자동차	7,007,731	33.21
3	원동기및펌프	1,219,955	5.78
4	섬유및화학기계	685,260	3.25
5	기타	3,793,908	17.98
총계		21,099,712	100.00

수입 :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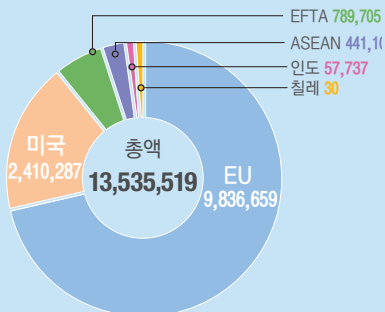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3,535,519(21.5%)	49,293,444(78.5%)	62,828,963(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기계류 특혜수입금액



기계류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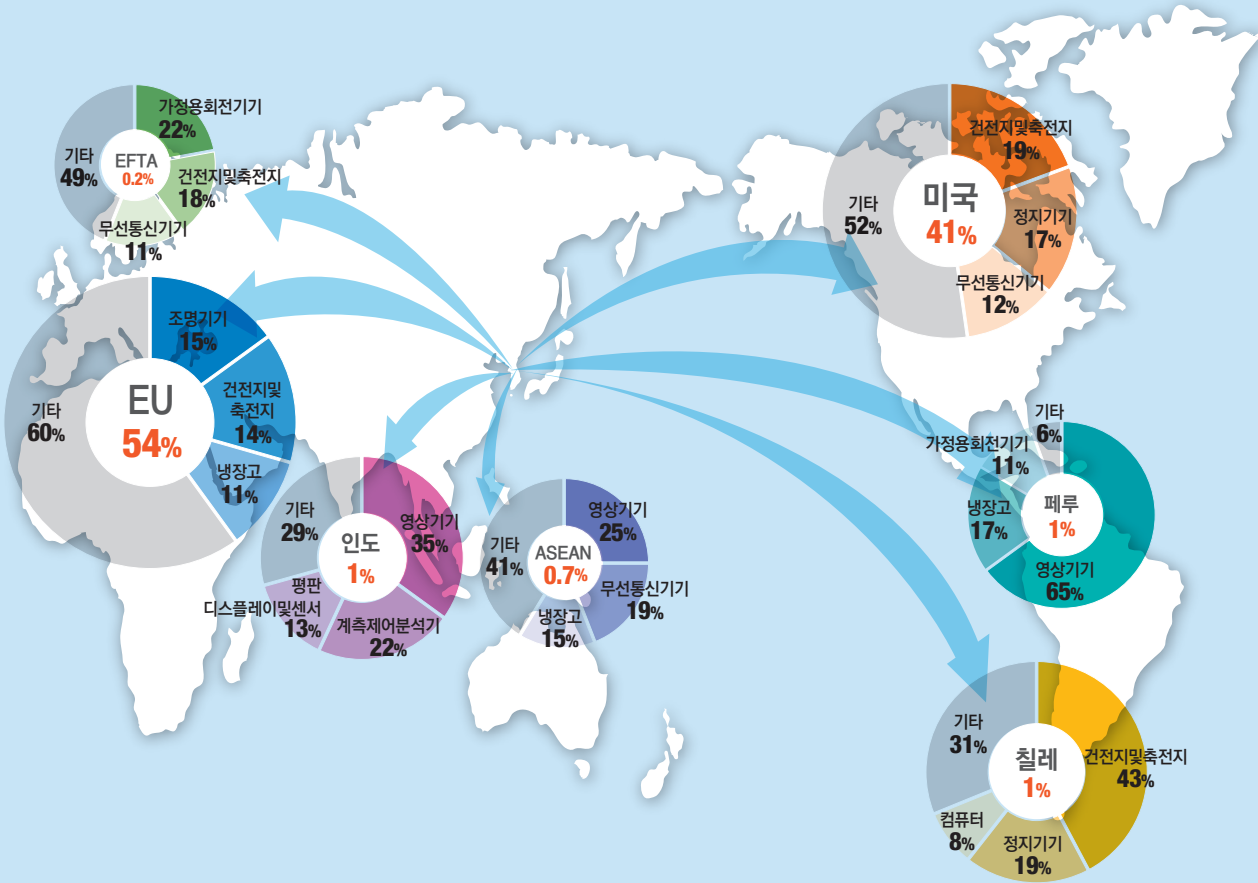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4,262,477	31.49
2	원동기및펌프	1,630,473	12.05
3	자동차부품	1,180,969	8.72
4	시계	348,112	2.57
5	기타	6,113,489	45.17
	총 계	13,535,519	100.00

수출 :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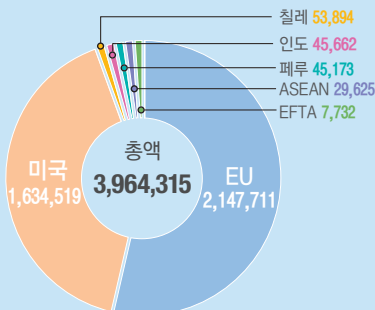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964,315(2.4%)	160,651,069(97.6%)	164,615,384(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전자전기제품 특혜수출금액



전자전기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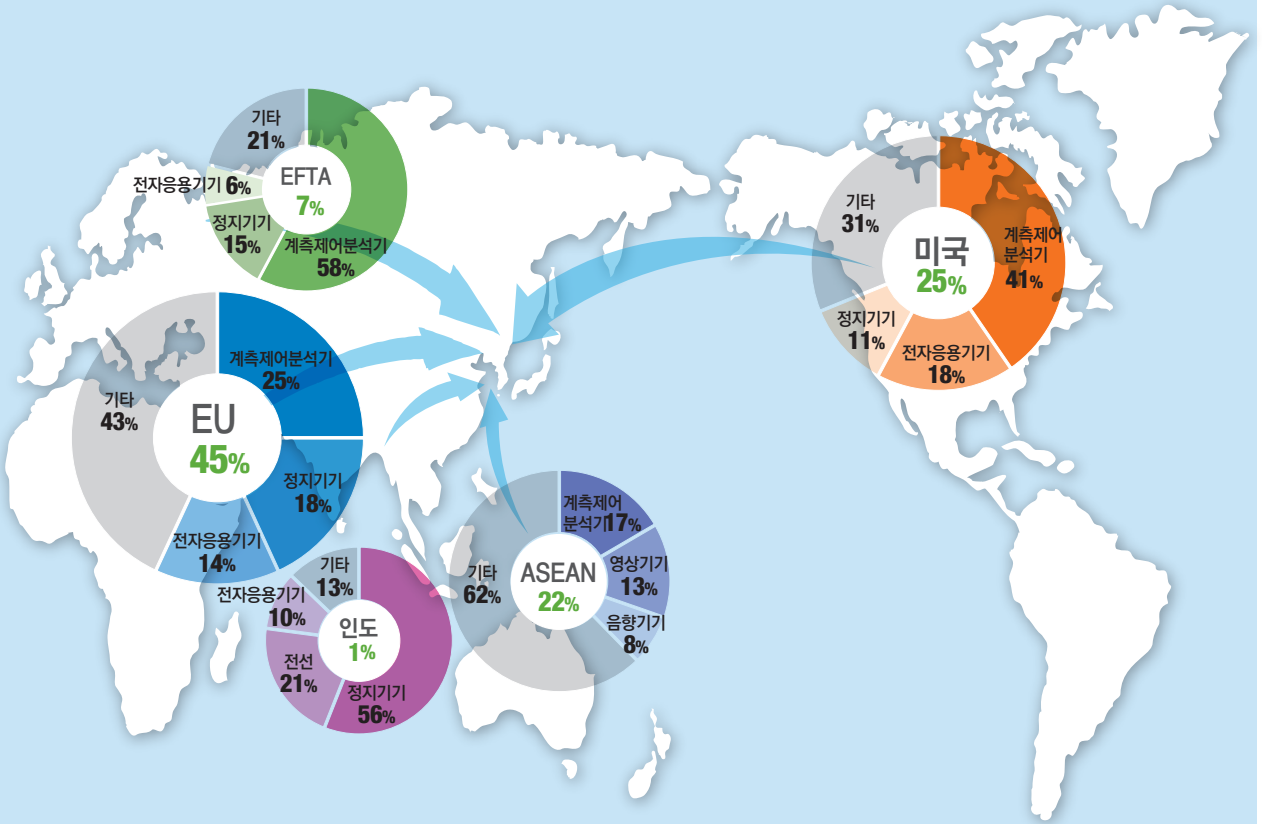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건전지및축전지	646,050	16.30
2	조명기기	314,594	7.94
3	정지기기	284,170	7.17
4	냉장고	246,075	6.21
5	기타	2,473,425	62.39
	총계	3,964,315	100.00

수입 :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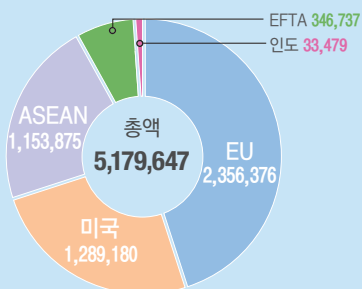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179,647(5.9%)	82,508,389(94.1%)	87,688,03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전자전기제품 특혜수입금액



전자전기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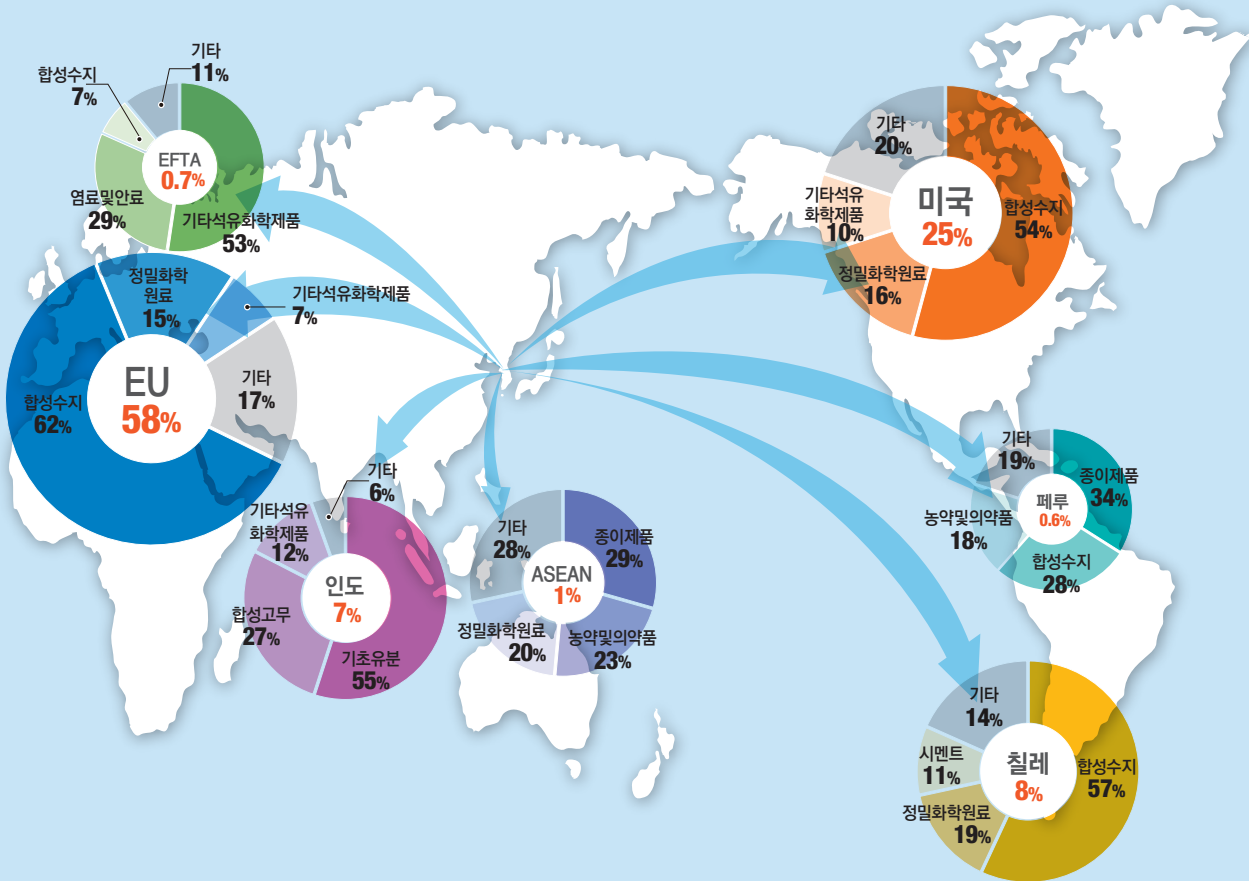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계측제어분석기	1,512,740	29.21
2	정지기기	637,175	12.30
3	전자응용기기	581,256	11.22
4	영상기기	146,219	2.82
5	기타	2,302,256	44.45
	총 계	5,179,647	100.00

수출 :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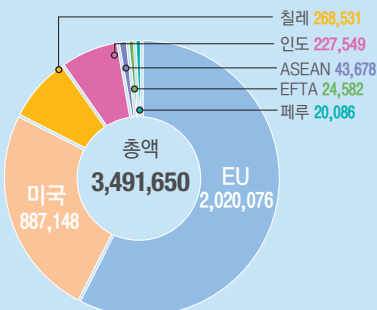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491,650(5.3%)	61,797,465(94.7%)	65,289,115(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화학공업제품 특혜수출금액



화학공업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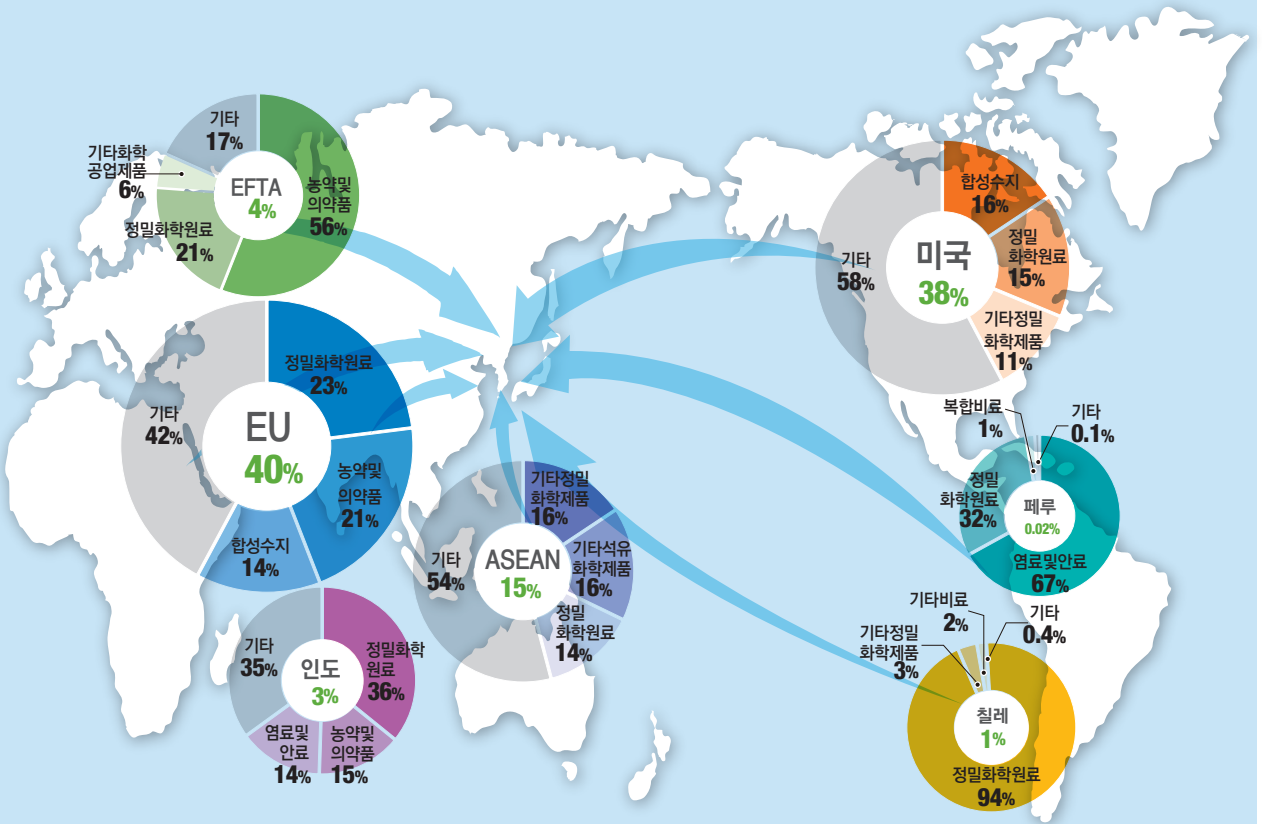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1,888,810	54.10
2	정밀화학원료	504,066	14.44
3	기타석유화학제품	263,723	7.55
4	기초유분	124,925	3.58
5	기타	710,126	20.34
총 계		3,491,650	100.00

수입 :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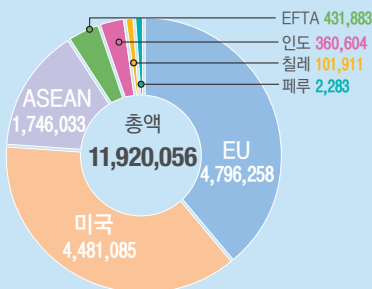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1,920,056(22.8%)	40,310,058(77.2%)	52,230,114(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화학공업제품 특혜수입금액



화학공업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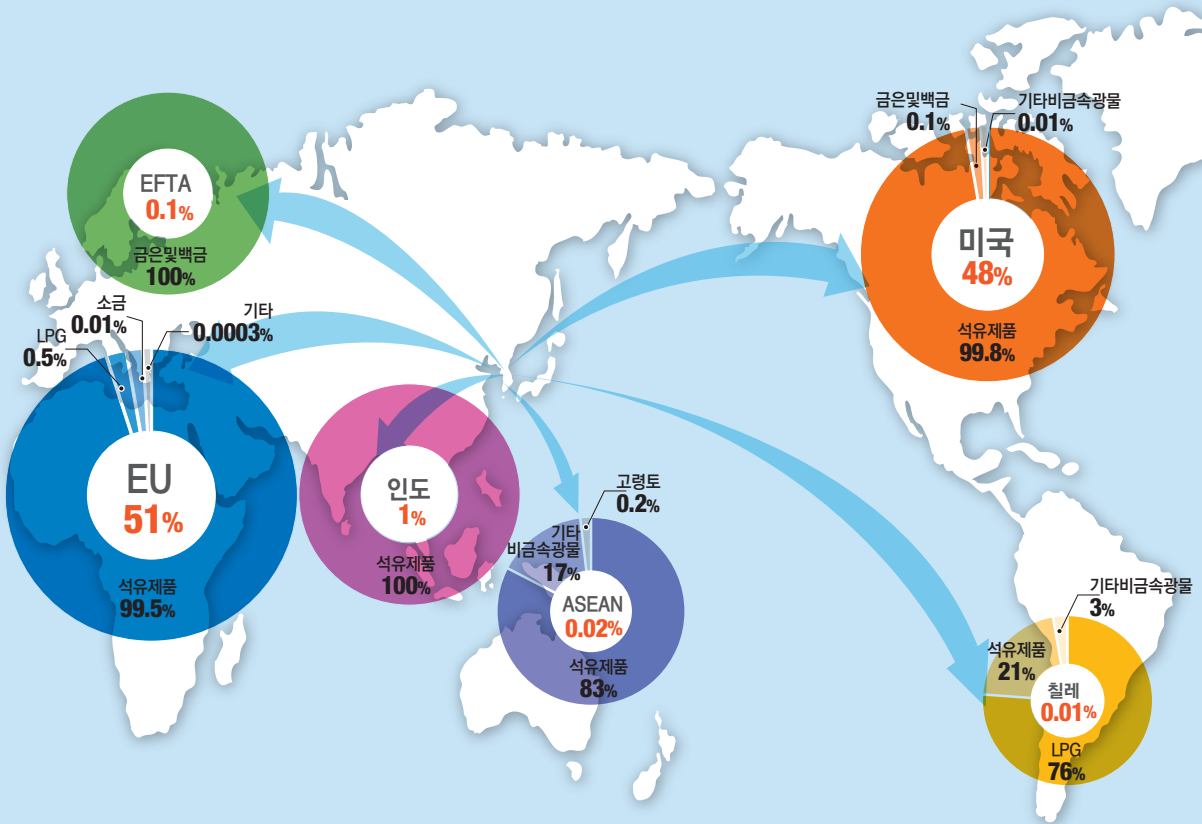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밀화학원료	2,315,953	19.43
2	합성수지	1,390,539	11.67
3	농약및의약품	1,314,310	11.03
4	기타정밀화학제품	786,211	6.60
5	기타	6,113,044	51.28
	총 계	11,920,056	100.00

수출 :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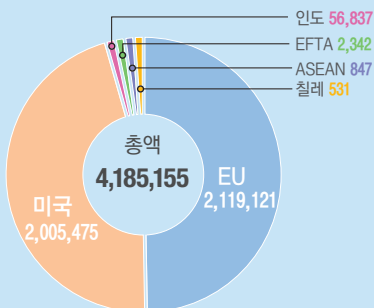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185,155(6.7%)	58,514,388(93.3%)	62,699,543(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광산물 특혜수출금액



광산물 수출상위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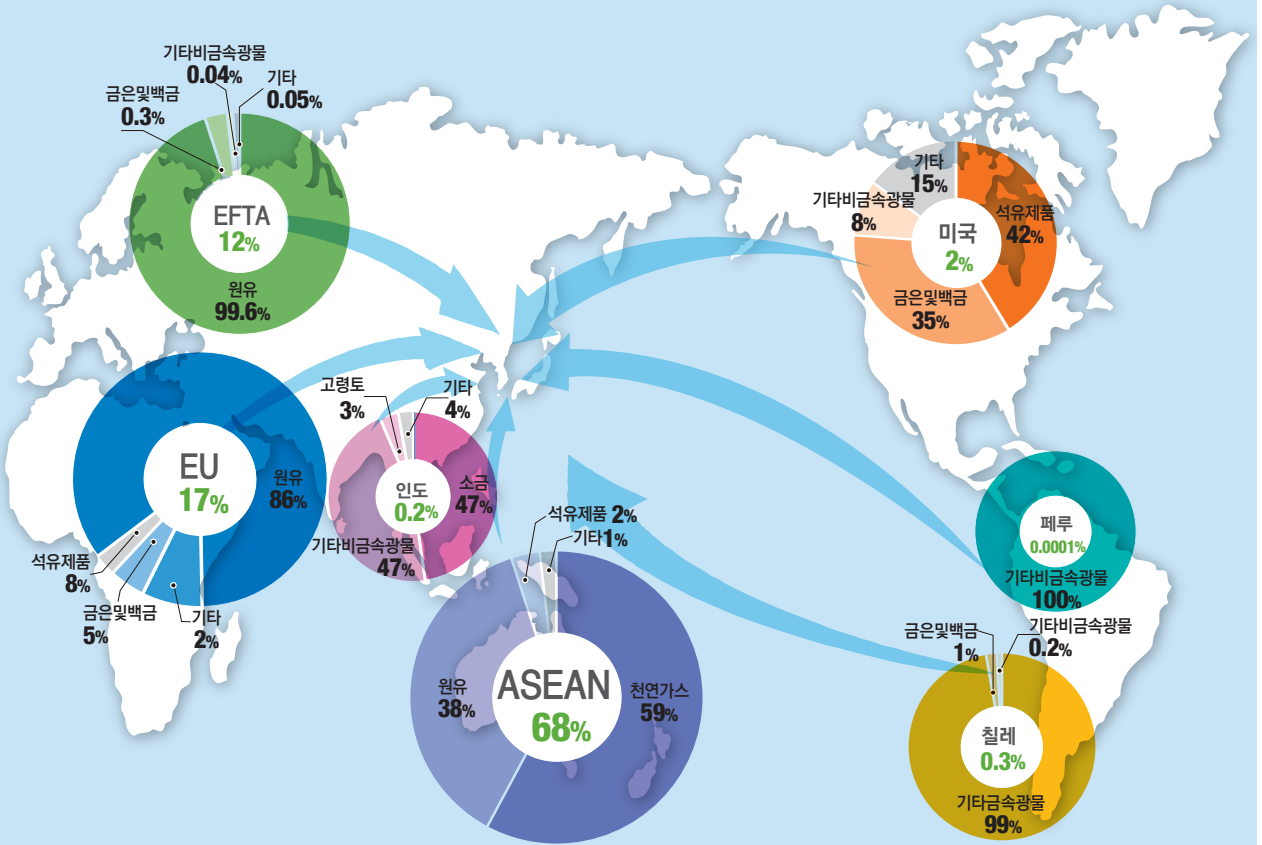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4,168,880	99.61
2	LPG	10,406	0.25
3	금은빛백금	5,192	0.12
4	기타비금속광물	381	0.01
5	기타	296	0.01
	총 계	4,185,15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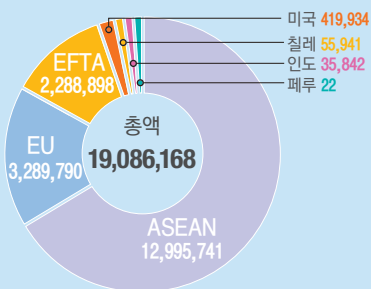
수입 : 광산물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9,086,168(9.1%)	189,702,859(90.9%)	208,789,027(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광산물 특혜수입금액



광산물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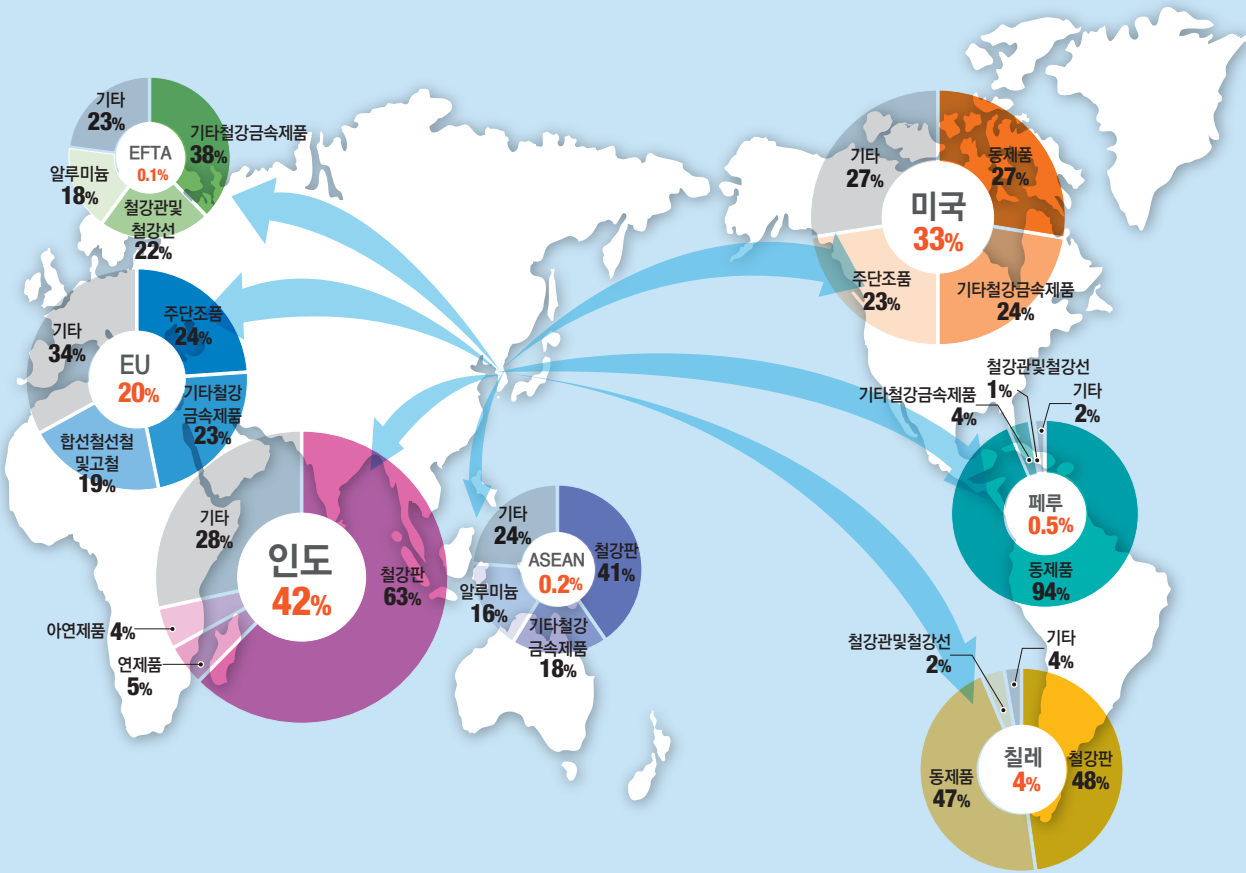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원유	10,043,147	52.62
2	천연가스	7,642,197	40.04
3	석유제품	725,676	3.80
4	금은및백금	323,004	1.69
5	기타	352,145	1.85
	총 계	19,086,168	100.00

수출 :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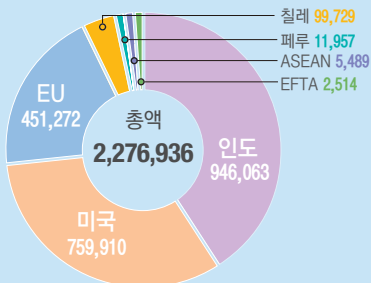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276,936(4.8%)	45,142,700(95.2%)	47,419,63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철강금속제품 특혜수출금액



철강금속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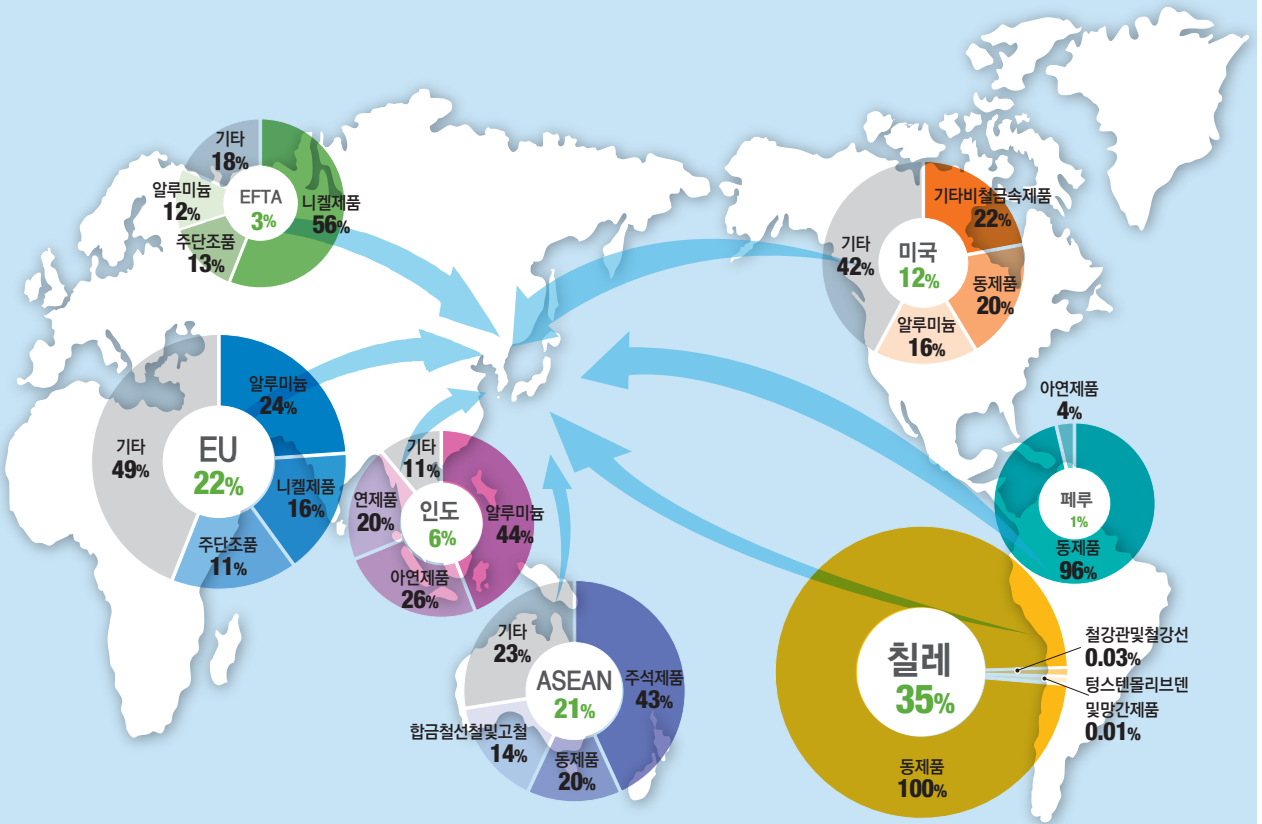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784,469	34.45
2	기타철강금속제품	287,265	12.62
3	주단조품	281,303	12.35
4	동제품	260,709	11.45
5	기타	663,190	29.13
	총 계	2,276,936	100.00

수입 :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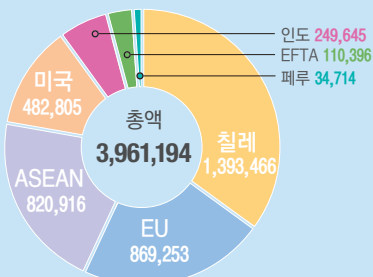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3,961,194(8.4%)	43,271,382(91.6%)	47,232,57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철강금속제품 특혜수입금액



철강금속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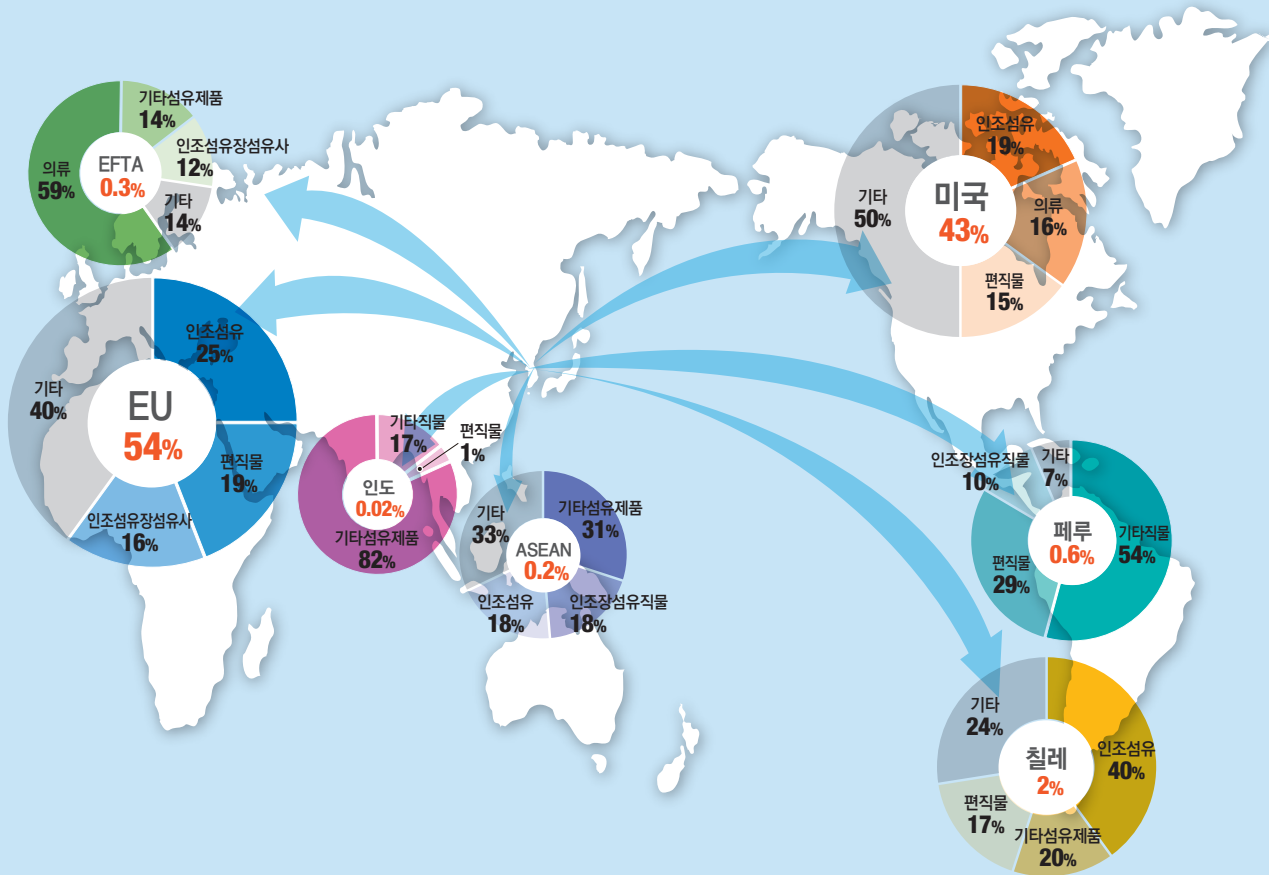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동제품	1,686,913	42.59
2	알루미늄	413,254	10.43
3	주석제품	351,288	8.87
4	니켈제품	197,572	4.99
5	기타	1,312,168	33.13
	총계	3,961,194	100.00

수출 :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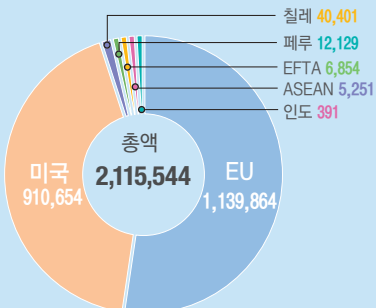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115,544(13.6%)	13,479,686(86.4%)	15,595,230(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섬유류 특혜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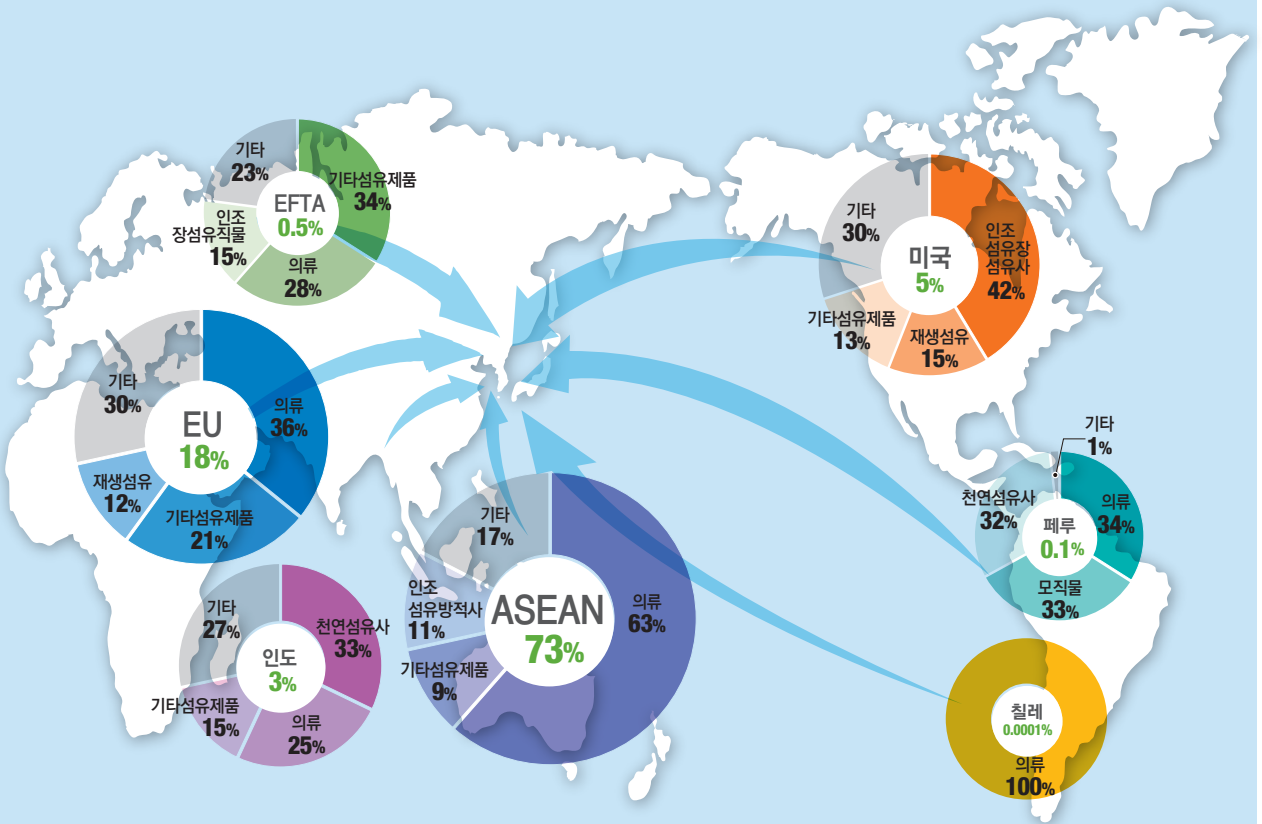
섬유류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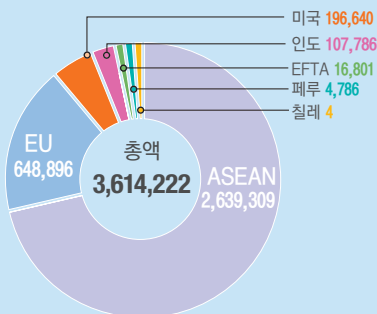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인조섬유	475,909	22.50
2	편직물	363,877	17.20
3	인조섬유장섬유사	177,980	8.41
4	의류	151,377	7.16
5	기타	946,400	44.74
총 계		2,115,544	100.00

수입 : 섬유류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3,614,222(30.1%)	8,374,646(69.9%)	11,988,868(100.0%)



섬유류 특혜수입금액



섬유류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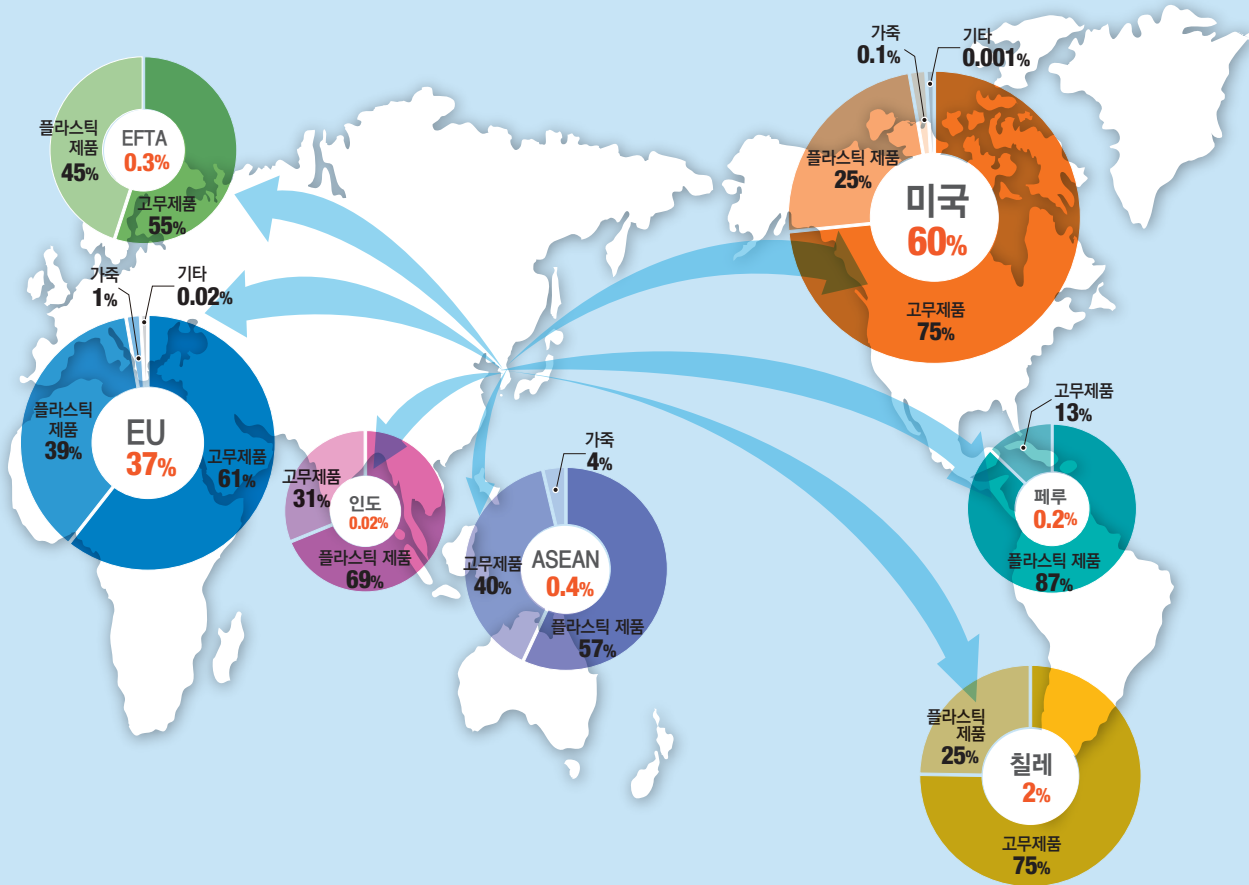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1,926,034	53.29
2	기타섬유제품	411,380	11.38
3	인조섬유방직사	301,496	8.34
4	재생섬유	107,966	2.99
5	기타	867,346	24.00
	총계	3,614,222	100.00

수출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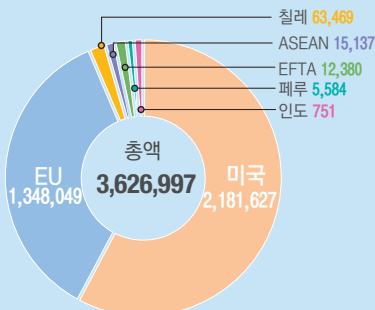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626,997(24.8%)	10,993,729(75.2%)	14,620,72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수출금액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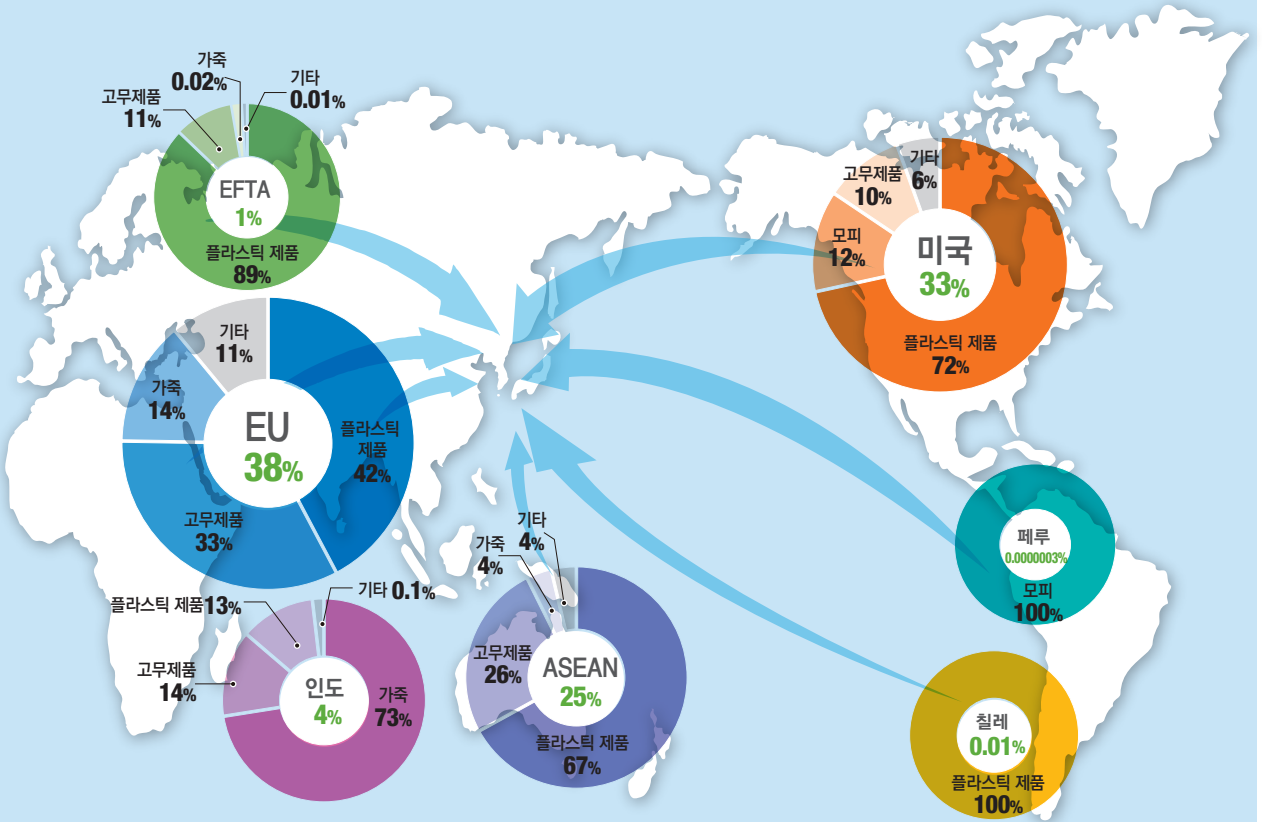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고무제품	2,519,320	69.46
2	플라스틱 제품	1,096,740	30.24
3	가죽	10,645	0.29
4	기타	292	0.01
	총 계	3,626,997	100.00

수입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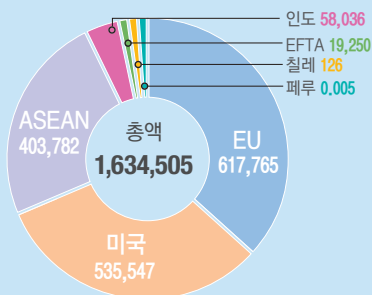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634,505(17.9%)	7,521,719(82.1%)	9,156,244(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수입금액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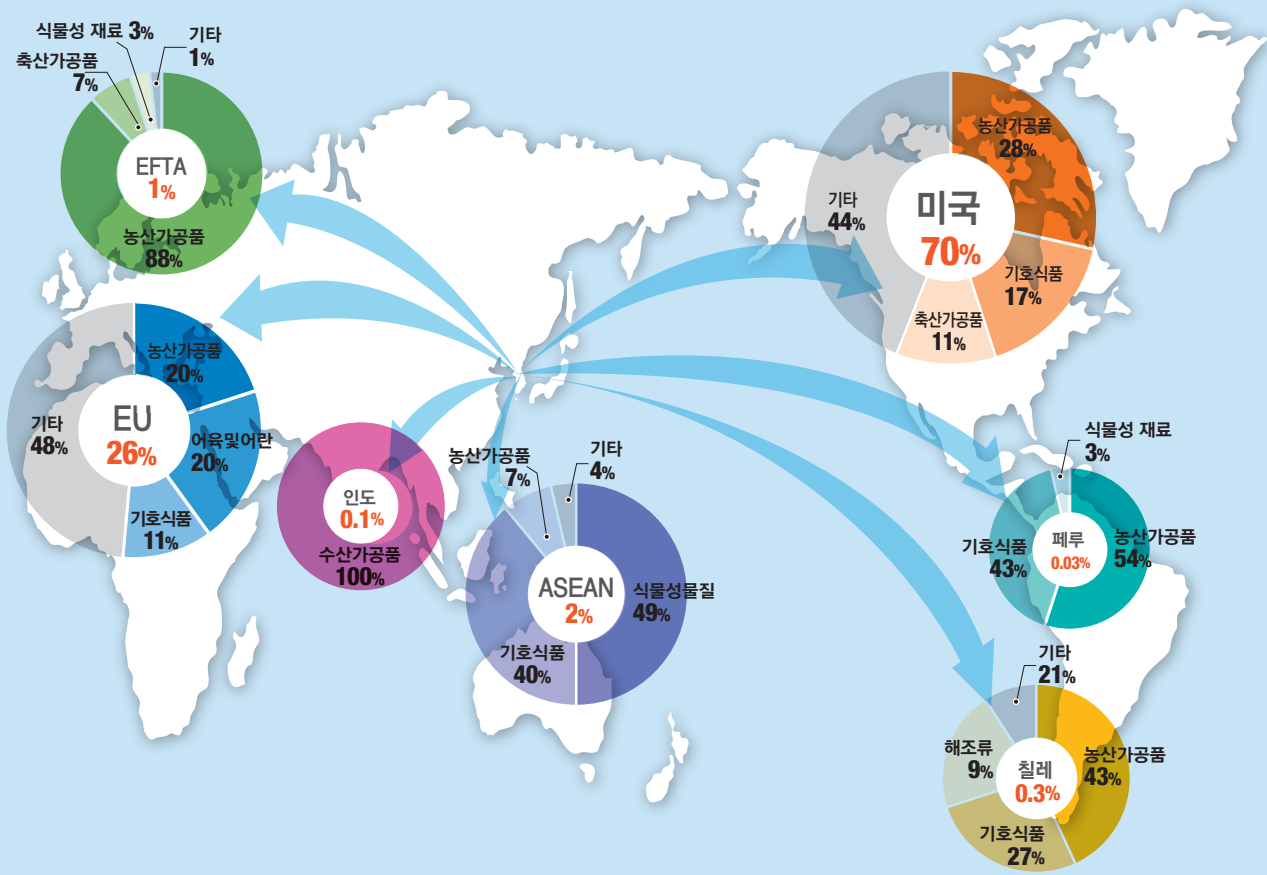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940,844	57.56
2	고무제품	368,040	22.52
3	가죽	146,463	8.96
4	모피	63,355	3.88
5	기타	115,804	7.08
	총 계	1,634,505	100.00

수출 :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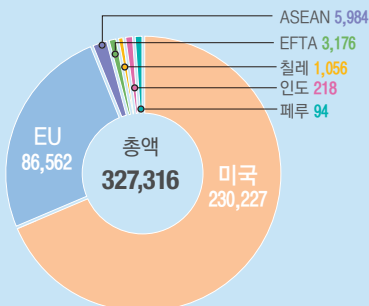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27,316(4.6%)	6,886,780(95.4%)	7,214,09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농림수산물 특혜수출금액



농림수산물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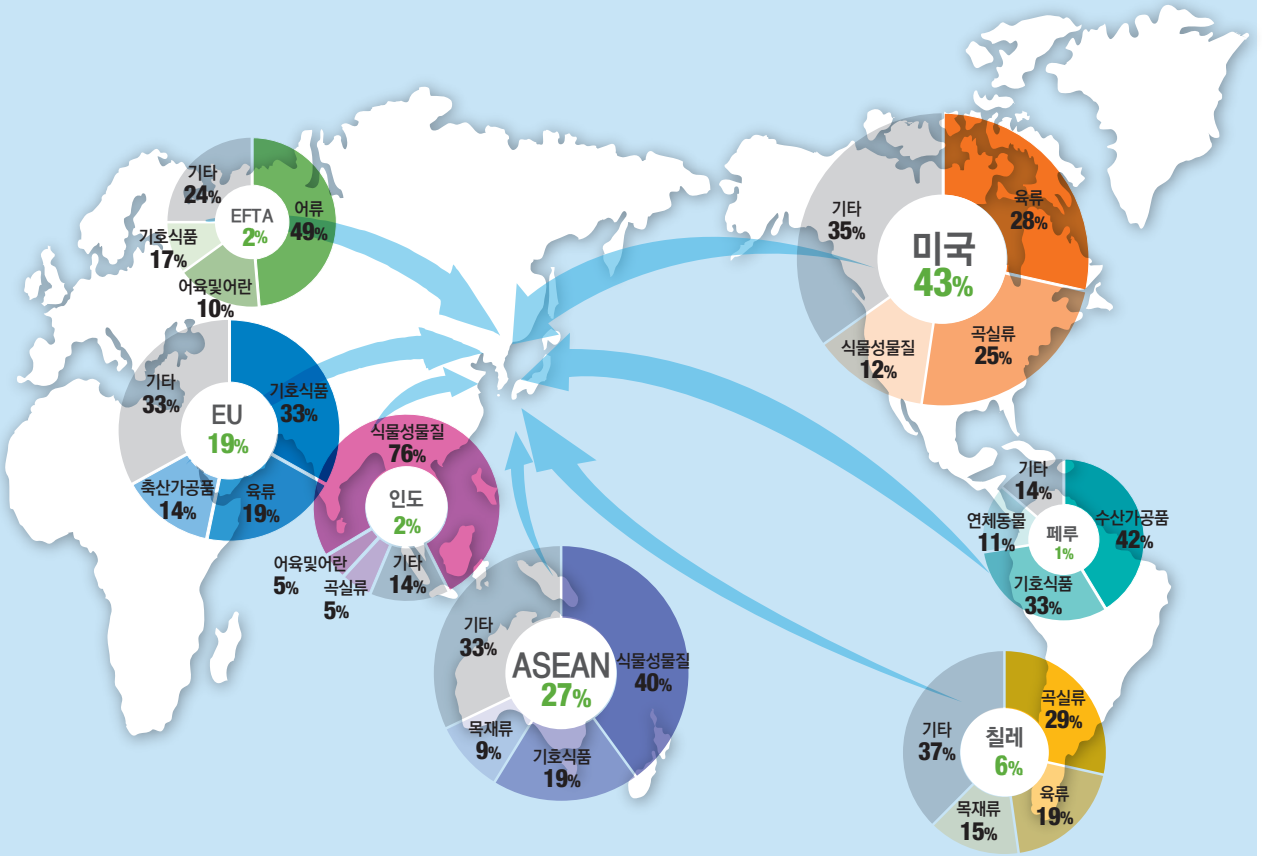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농산가공품	85,545	26.14
2	기호식품	52,111	15.92
3	축산가공품	26,520	8.10
4	어육및어란	17,087	5.22
5	기타	146,053	44.62
	총 계	327,316	100.00

수입 :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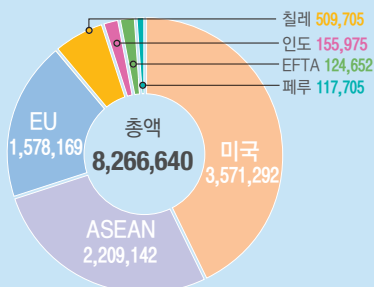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8,266,640(26.7%)	22,742,945(73.3%)	31,009,585(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농림수산물 특혜수입금액



농림수산물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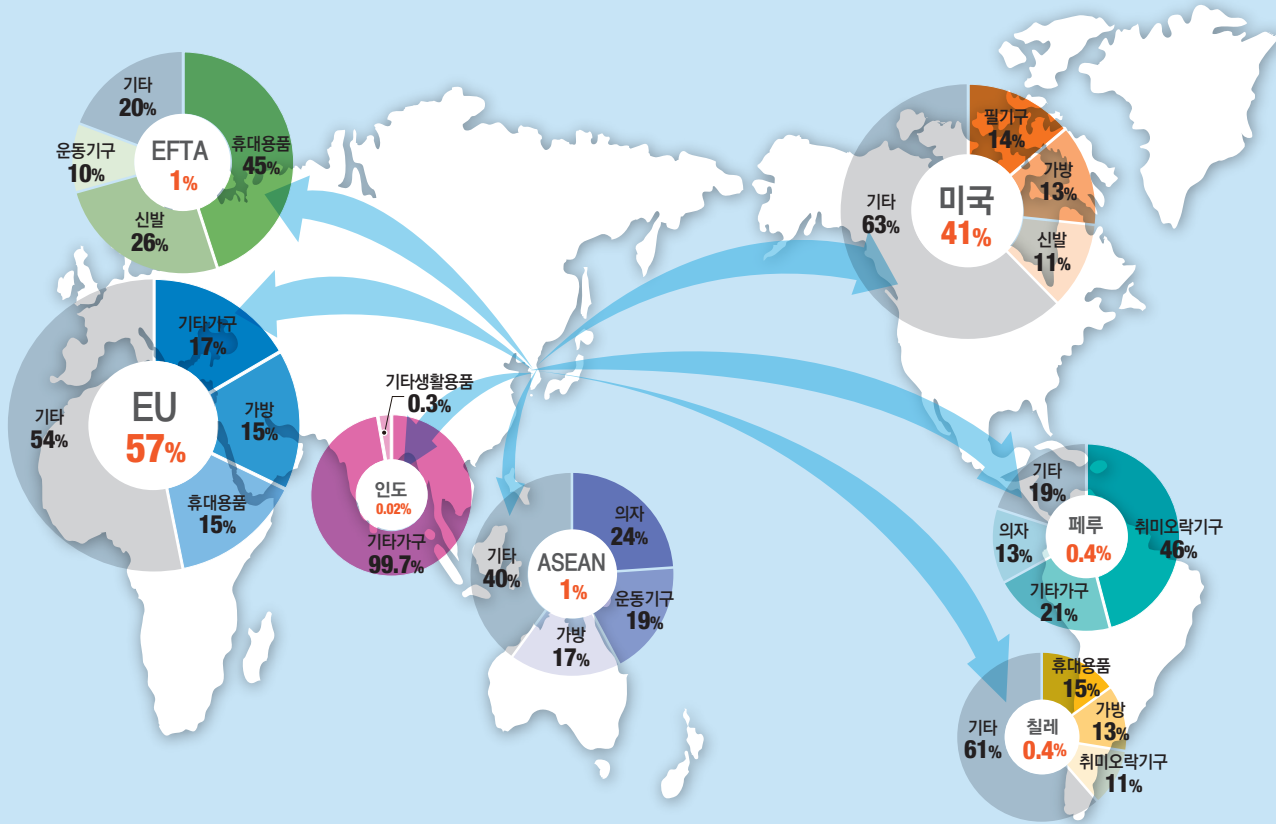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식물성물질	1,432,947	17.33
2	육류	1,403,797	16.98
3	곡식류	1,056,168	12.78
4	기호식품	993,172	12.01
5	기타	3,380,557	40.89
	총 계	8,266,640	100.00

수출 :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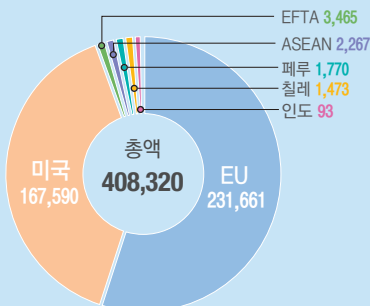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08,320(11.8%)	3,053,520(88.2%)	3,461,840(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생활용품 특혜수출금액



생활용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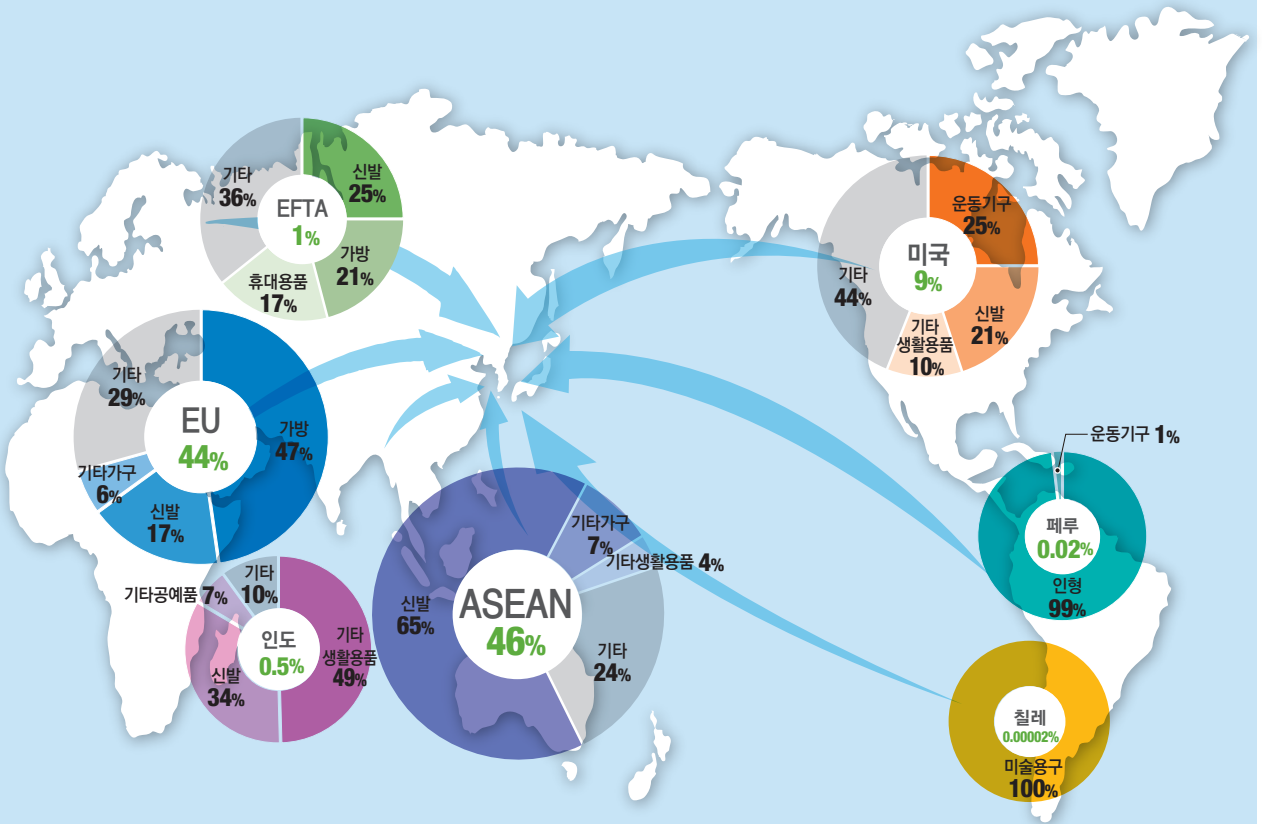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가방	56,308	13.79
2	기타가구	38,939	9.54
3	휴대용품	35,410	8.67
4	필기구	23,692	5.80
5	기타	253,972	62.20
	총계	408,320	100.00

수입 :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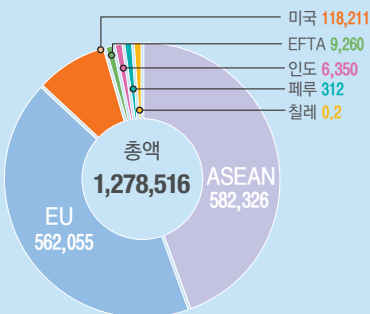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278,516(19.4%)	5,300,972(80.6%)	6,579,488(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생활용품 특혜수입금액



생활용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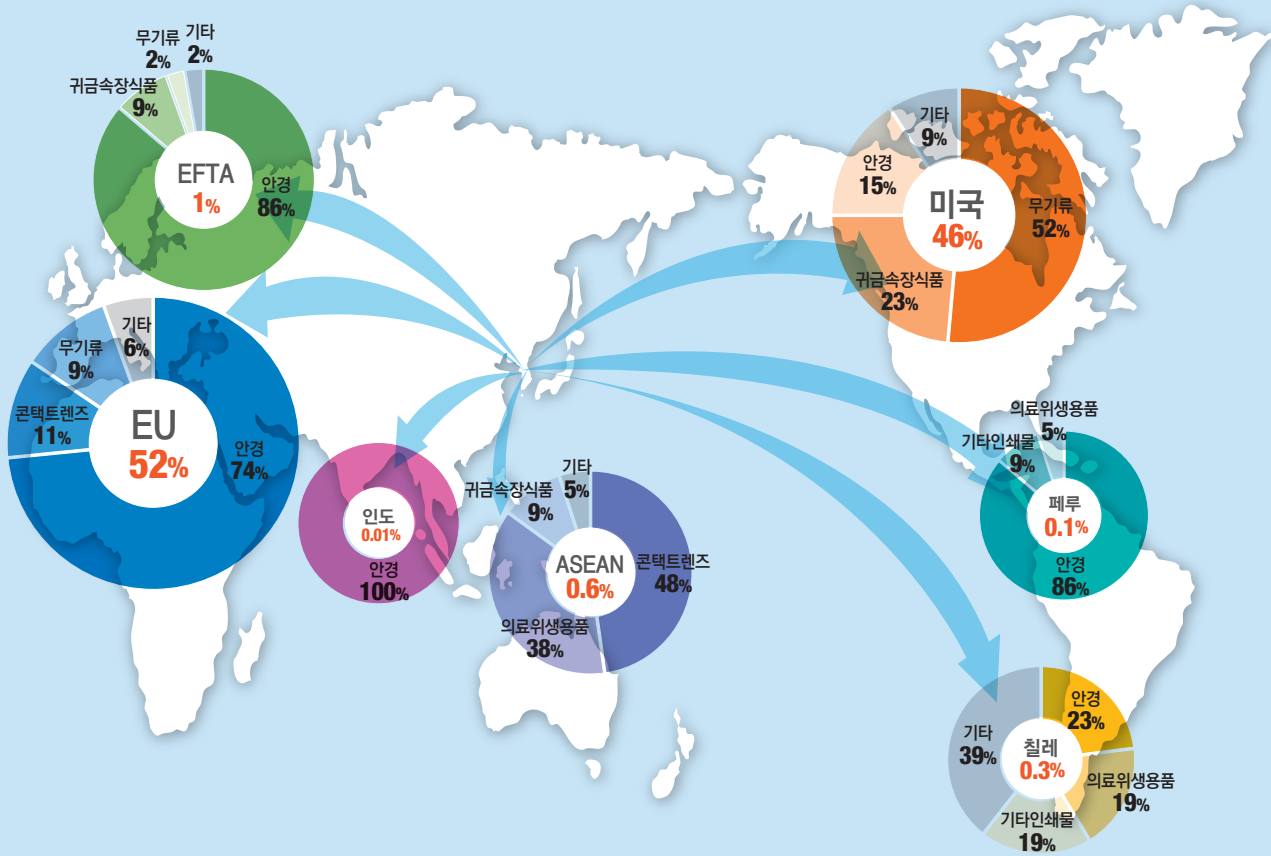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504,631	39.47
2	가방	265,395	20.76
3	기타가구	78,778	6.16
4	기타생활용품	40,641	3.18
5	기타	389,070	30.43
	총계	1,278,516	100.00

수출 :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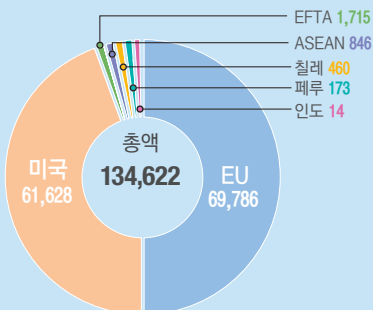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34,622(7.3%)	1,716,424(92.7%)	1,851,046(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잡제품 특혜수출금액



잡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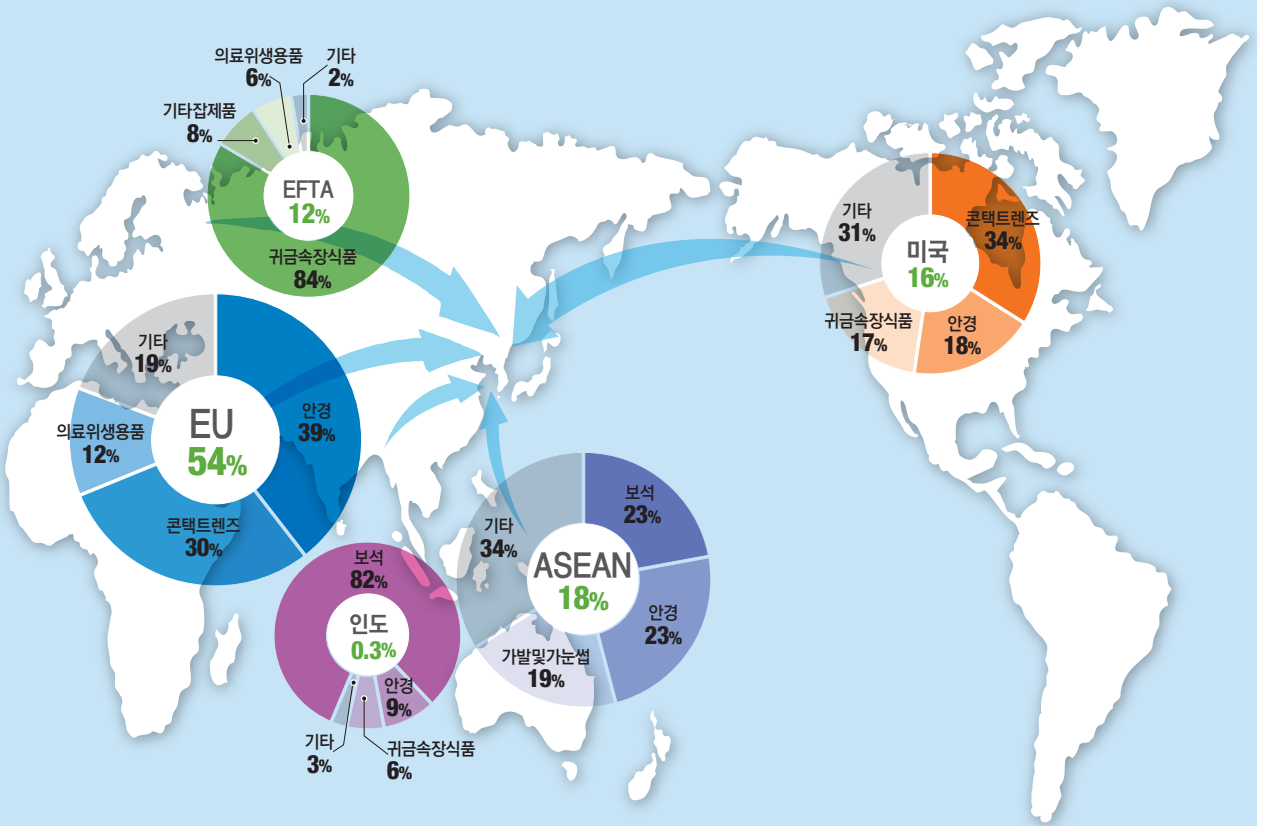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안경	63,091	46.87
2	무기류	38,684	28.74
3	귀금속장식품	14,182	10.53
4	콘택트렌즈	7,749	5.76
5	기타	10,916	8.11
	총 계	134,622	100.00

수입 :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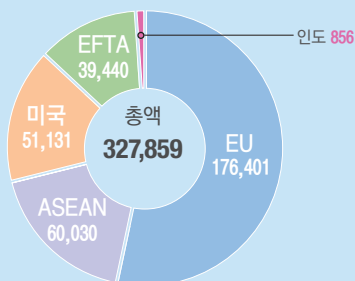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327,859(15.8%)	1,753,733(84.2%)	2,081,592(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잡제품 특혜수입금액



잡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안경	92,382	28.18
2	콘택트렌즈	69,531	21.21
3	귀금속장식품	42,128	12.85
4	의료위생용품	23,783	7.25
5	기타	100,036	30.51
	총 계	327,859	100.00

부록

FTA 국가의 수출입 활용률

FTA 국가의 수출입 실적

EU 수출입실적 및 주요국의 對한 교역품목

섬유제품 협정별 특혜수출입 동향 (2012년)



FTA 통계 1

|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

단위 : %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⁴⁶⁾						
구 분(발효일)	수 출			수 입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칠레 (2004. 4)	-	75.2	80.8	95.8	97.9	97.8
EFTA (2006. 9)	-	79.8	80.0	55.7	61.9	41.5
ASEAN (2007. 6)	33.1	37.7	37.0	73.8	73.8	68.4
인도 (2010. 1)	35.8	36.2	42.6	53.6	52.7	62.7
EU (2011. 7)	65.7	81.4	82.5	47.1	66.8	67.4
페루 (2011. 8)	61.3	78.0	90.9	52.6	92.0	78.8
미국 (2012. 3)	-	68.9	76.6	-	61.0	66.9

|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 |

단위 : %

구 분	농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품	잡제품
EFTA	81.7	99.9	81.4	68.2	69.5	64.1	71.4	87.5	50.0	69.1
EU	53.7	67.9	74.6	90.4	87.0	86.0	67.1	89.8	74.9	75.0
미국	52.5	83.7	71.0	82.9	71.4	69.7	77.7	81.6	62.3	59.3
ASEAN	18.7	52.3	56.3	23.8	12.7	8.1	73.3	28.1	7.5	9.2
인도	9.0	2.2	67.7	37.5	13.3	3.8	85.0	15.9	17.8	11.3
칠레	32.3	98.3	77.0	86.5	60.8	15.4	60.7	82.5	67.1	56.6
페루	12.2	100.0	35.1	49.6	53.3	71.4	60.0	97.2	96.4	5.5
전체	37.0	69.9	66.5	75.4	49.6	57.7	76.2	73.5	49.7	42.8

주 : 2013년 상반기

46)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 / FTA 특혜관세 대상 수출액*100

수입활용률 =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 FTA 특혜관세 대상 수입액(* 전체 수출(입) 품명 중 양허제외, MFN세율이 무관세인 품명 등을 제외)*100

FTA 통계 2

| FTA 국가의 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2012. 2분기	2013.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EU	수출	55,727	49,371	-11.4	12,873	13,102	1.8
	수입	47,424	50,374	6.2	12,480	13,367	7.1
	교역액	103,151	99,745	-3.3	25,353	26,469	4.4
페루	수출	1,368	1,950	42.5	412	338	-18.0
	수입	1,950	1,473	-24.5	345	538	55.9
	교역액	3,318	3,423	3.2	757	876	15.7
미국	수출	58,524	58,524	0.0	15,012	16,356	9.0
	수입	43,337	43,337	0.0	11,542	10,375	-10.1
	교역액	101,861	101,861	0.0	26,554	26,731	0.7
칠레	수출	2,381	2,469	3.7	633	662	4.6
	수입	4,858	4,676	-3.8	1,249	1,125	-9.9
	교역액	7,239	7,145	-1.3	1,882	1,787	-5.1
ASEAN	수출	71,801	79,145	10.2	19,651	21,305	8.4
	수입	53,121	51,977	-2.2	13,012	13,260	1.9
	교역액	124,922	131,122	5.0	32,663	34,565	5.8
인도	수출	12,654	11,922	-5.8	3,041	2,829	-7.0
	수입	7,894	6,921	-12.3	1,843	1,489	-19.2
	교역액	20,548	18,843	-8.3	4,884	4,318	-11.6
EFTA	수출	1,818	1,495	-17.8	364	304	-16.5
	수입	5,177	7,713	49.0	2,028	1,604	-20.9
	교역액	6,995	9,208	31.6	2,392	1,908	-20.2
FTA체결국	수출	201,957	204,399	1.2	51,986	54,896	5.6
	수입	164,993	166,642	1.0	42,499	41,758	-1.7
	교역액	366,950	371,041	1.1	94,485	96,654	2.3
비 FTA국	수출	353,257	343,471	-2.8	88,144	86,366	-2.0
	수입	359,420	352,942	-1.8	87,932	85,177	-3.1
	교역액	712,679	696,415	-2.3	176,076	171,543	-2.6
총계	수출	555,214	547,870	-1.3	140,130	141,262	0.8
	수입	524,413	519,584	-0.9	130,431	126,935	-2.7
	교역액	1,079,629	1,067,456	-1.1	270,561	268,197	-0.9

| FTA 체결국별 특혜수출입 분기별 실적 (2012. 2분기 ~ 2013. 2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3. 1분기	2012. 2분기	2013. 2분기	증감
1 EU	7,926	6,810	7,078	7,397	7,926	5,802	-26.8
2 페루	157	130	185	158	157	141	-10.2
3 미국	3,920	4,052	4,036	4,269	3,920	4,883	24.6
4 칠레	435	411	529	458	435	526	20.9
5 ASEAN	71	68	72	71	71	463	552.1
6 인도	417	392	143	31	417	186	-55.4
7 EFTA	80	50	74	40	80	35	-56.3
총 계	13,006	11,913	12,117	12,424	13,006	11,387	-12.4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3. 1분기	2012. 2분기	2013. 2분기	증감
1 EU	6,196	6,785	6,112	6,877	6,196	6,360	2.7
2 페루	44	36	41	173	44	144	227.3
3 미국	3,414	3,232	3,287	7,245	3,414	3,984	16.7
4 칠레	564	450	433	517	564	483	-14.4
5 ASEAN	5,926	5,359	5,342	3,761	5,926	3,360	-43.3
6 인도	261	251	287	373	261	395	51.3
7 EFTA	1,117	1,364	794	675	1,117	472	-57.7
총 계	17,522	17,477	16,296	19,621	17,522	15,198	-13.3

| FTA국가로의 수출입 MTI 3단위 5대품목 (2012. 2분기 ~ 2013. 2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3. 1분기	2012. 2분기	2013. 2분기	증감
1 석유제품	6,381	6,923	6,659	5,739	6,381	6,420	0.6
2 자동차	5,149	4,061	5,504	5,434	5,149	5,880	14.2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554	3,164	3,225	3,490	4,554	4,608	1.2
4 반도체	3,416	3,375	3,449	3,693	3,416	4,088	19.7
5 무선통신기기	2,479	2,532	3,191	2,963	2,479	3,470	40.0
총 계	21,979	20,055	22,028	21,319	21,979	24,466	11.3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3. 1분기	2012. 2분기	2013. 2분기	증감
1 반도체	2,699	2,965	3,266	2,916	2,699	3,286	21.8
2 석유제품	2,455	2,277	2,690	2,893	2,455	2,686	9.4
3 천연가스	2,079	1,694	2,098	2,190	2,079	2,014	-3.1
4 원유	2,860	3,027	2,155	2,984	2,860	1,590	-44.4
5 원동기 및 펌프	1,061	987	960	1,103	1,061	1,228	15.8
총 계	11,154	10,950	11,169	12,086	11,154	10,804	-3.1

| EU 연도별 수출입 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3,904,189 (7.8)	4,035,772 (3.4)	3,296,157 (-18.3)	3,897,408 (18.2)	4,358,178 (11.8)	4,510,902 (3.5)
수입	4,041,214 (8.5)	4,227,347 (4.6)	3,362,570 (-20.5)	3,999,761 (18.9)	4,442,048 (11.1)	4,536,050 (2.1)
무역수지	-137,025 (-31.5)	-191,575 (-39.8)	-66,412 (65.3)	-102,353 (-54.1)	-83,870 (18.1)	-25,147 (70.0)

| EU 10대 교역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0대 수출대상국			10대 수입대상국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입액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Fr Germany	564,236	570,257	Fr Germany	605,970	600,526
2	France	362,316	360,146	Netherlands	342,902	353,519
3	USA	257,858	288,196	China	291,847	289,315
4	Utd. Kingdom	246,805	263,048	France	256,697	250,810
5	Netherlands	208,091	216,348	Belgium	229,174	229,897
6	Belgium	211,100	214,419	USA	188,546	204,392
7	Italy	213,102	198,815	Russia	189,649	197,053
8	China	135,606	143,252	Italy	195,887	196,556
9	Spain	151,751	140,261	Utd. Kingdom	186,463	185,618
10	Switzerland	138,082	131,771	Spain	134,227	133,839

| EU 對한 10대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명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품명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자동차	3,188	3,788	18.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2,663	8,041	-36.5
2	원유	340	2,810	726.5	자동차	5,784	5,234	-9.5
3	농약 및 의약품	2,126	2,286	7.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820	3,951	3.4
4	원동기 및 펌프	2,157	2,191	1.6	자동차부품	3,713	3,701	-0.3
5	석유제품	739	2,039	175.9	무선통신기기	2,810	3,203	14
6	기계요소	1,653	1,893	14.5	석유제품	2,949	3,051	3.5
7	반도체제조용장비	2,627	1,780	-32.2	반도체	2,547	1,536	-39.7
8	계측제어분석기	1,525	1,583	3.8	합성수지	1,214	1,434	18.1
9	자동차부품	1,757	1,540	-12.3	철강판	1,601	1,389	-13.2
10	정밀화학원료	1,359	1,522	12	컴퓨터	1,209	1,127	-6.8

주 : MTI 3단위 기준

| 영국 對한 10대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명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품명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원유	340	2,810	726.5	자동차	602	972	61.5
2	농약 및 의약품	335	348	3.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195	561	-53.1
3	자동차	200	269	34.3	무선통신기기	344	476	38.2
4	기호식품	237	223	-5.9	금은 및 백금	129	453	250.4
5	원동기 및 펌프	240	197	-17.7	반도체	393	296	-24.7
6	계측제어분석기	187	184	-1.9	석유제품	368	201	-45.2
7	기계요소	113	149	32.3	자동차부품	138	128	-6.9
8	금은 및 백금	151	136	-10	건설광산기계	155	110	-29.5
9	합성수지	110	112	1.8	고무제품	113	104	-7.5
10	알루미늄	87	75	-13.2	항공기 및 부품	80	99	24

주 : MTI 3단위 기준

| 프랑스 對한 10대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 명	수 출 액		전년대비 증감률	품 명	수 입 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항공기 및 부품	1,343	327	-75.6	자동차	779	672	-13.8
2	원동기 및 펌프	278	321	15.2	무선통신기기	342	563	64.9
3	비누치약 및 화장품	308	295	-4	자동차부품	88	85	-3.4
4	농약 및 의약품	284	268	-5.7	반도체	119	84	-29.2
5	반도체	168	210	24.8	합성수지	60	74	22.6
6	기타섬유제품	209	195	-6.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666	66	-97.5
7	가방	142	160	12.8	편직물	48	66	36.2
8	기계요소	184	159	-13.8	컴퓨터	45	62	38.6
9	정밀화학원료	147	141	-4	냉장고	58	48	-17.5
10	계측제어분석기	135	134	-1.2	플라스틱 제품	43	46	7.6

주 : MTI 3단위 기준

| 독일 對한 10대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 명	수 출 액		전년대비 증감률	품 명	수 입 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자동차	2,589	3,044	17.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720	1,457	-46.4
2	반도체	675	911	34.8	자동차	1,118	1,238	10.7
3	계측제어분석기	844	878	4.0	무선통신기기	491	632	28.7
4	원동기 및 펌프	836	797	-4.7	반도체	830	511	-38.5
5	자동차부품	944	786	-16.8	자동차부품	399	322	-19.2
6	기계요소	717	758	5.8	합성수지	196	203	3.7
7	정밀화학원료	670	754	12.5	전자응용기기	172	202	17.4
8	농약 및 의약품	584	637	9.2	고무제품	176	166	-5.5
9	기타석유화학제품	333	468	40.2	기계요소	148	161	9.2
10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286	446	56.0	플라스틱 제품	144	156	8.1

주 : MTI 3단위 기준

| 이탈리아 對한 10대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불,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명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품명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가방	359	409	13.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26	504	-39
2	기계요소	257	343	33.3	철강판	522	456	-12.8
3	농약및의약품	272	312	14.6	자동차	684	408	-40.3
4	의류	285	288	1.1	합성수지	223	285	27.7
5	원동기및펌프	204	231	13.2	무선통신기기	197	182	-7.7
6	석유제품	51	178	250.7	자동차부품	73	90	24.0
7	신발	126	143	13.7	고무제품	97	80	-17.4
8	기타기계류	107	132	24.0	플라스틱 제품	75	77	2.7
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6	125	246.7	금속공작기계	90	76	-16.0
10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122	117	-4.0	편직물	50	54	9.0

주 : MTI 3단위 기준

| 2012년 섬유류 협정별 특혜수출 동향 |

단위 : 천달러, %

협정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ASEAN	4,503,690	2,103,254	46.7
미국	1,402,517	1,293,695	92.2
EU	1,378,622	1,378,429	100.0
인도	165,168	97,163	58.8
칠레	69,570	69,570	100.0
페루	29,197	21,461	73.5
EFTA	15,781	9,654	61.2
총 계	7,564,545	4,973,226	65.7

주 : MTI 1단위 기준

비중 : 총 수출금액 중 FTA대상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2012년 협정별 주요 특혜수출품목 (MTI 6단위) |

칠레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편직물	19,209	19,209	100.0
2 폴리에스테일섬유	16,544	16,544	100.0
3 로프	9,611	9,611	100.0
4 폴리에스터직물	5,158	5,158	100.0
5 재생직물	4,141	4,141	100.0
6 타이어코드	3,271	3,271	100.0
7 기타의 섬유제품	2,192	2,192	100.0
8 기타의 직물	2,051	2,051	100.0
9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1,586	1,586	100.0
10 폴리에스터사	591	591	100.0
총 계	64,354	64,354	100.0

ASEAN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편직물	1,865,176	914,104	49.0
2	폴리에스터직물	413,631	207,126	50.1
3	기타의 직물	307,506	116,869	38.0
4	부직포	123,626	116,664	94.4
5	의류부속품	274,083	87,966	32.1
6	기타의 섬유제품	312,993	80,922	25.9
7	아세테이트섬유	80,606	67,788	84.1
8	타이어코드	69,222	62,736	90.6
9	폴리에스텔섬유	142,504	50,435	35.4
10	염색	98,891	47,415	47.9
	총 계	3,688,238	1,752,025	47.5

EFTA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양말	2,814	2,814	100.0
2	부직포	924	923	99.9
3	기타의 섬유제품	1,132	837	73.9
4	장갑	821	821	100.0
5	팬티호스타이즈	732	732	100.0
6	기타의직물	687	548	79.8
7	모자	657	484	73.7
8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507	478	94.3
9	나일론사	468	468	100.0
10	편직물	610	257	42.1
	총 계	9,352	8,362	89.4

인도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폴리에스터사	21,796	17,532	80.4
2	나일론사	15,991	14,066	88.0
3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12,901	12,517	97.0
4	부직포	11,036	10,980	99.5
5	타이어코드	9,223	9,166	99.4
6	편직물	11,512	8,863	77.0
7	기타의 섬유제품	21,218	5,587	26.3
8	순면사	4,470	4,470	100.0
9	폴리에스터직물	13,888	2,379	17.1
10	로프	1,579	1,579	100.0
총 계		123,614	87,139	70.5

페루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편직물	7,601	7,601	100.0
2	부직포	6,058	6,058	100.0
3	폴리에스터직물	2,301	2,301	100.0
4	기타의 직물	2,279	2,279	100.0
5	로프	873	873	100.0
6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3,385	710	21.0
7	침구이불	476	476	100.0
8	모포와 여행용러그	281	281	100.0
9	기타사	233	233	100.0
10	자수포	135	135	100.0
총 계		23,622	20,947	88.7

EU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편직물	289,995	289,995	100.0
2	폴리에스테일섬유	280,449	280,449	100.0
3	폴리에스터사	138,560	138,560	100.0
4	폴리에스터직물	127,210	127,210	100.0
5	기타의직물	81,707	81,707	100.0
6	장갑	77,011	77,011	100.0
7	타이어코드	74,114	74,114	100.0
8	기타의 섬유제품	36,346	36,169	99.5
9	나일론사	29,794	29,794	100.0
10	모자	28,550	28,550	100.0
	총 계	1,163,736	1,163,559	100.0

미국 (2012. 2분기 ~ 2013. 1분기)⁴⁷⁾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출금액	FTA대상수출금액	비중
1	편직물	230,706	230,706	100.0
2	폴리에스테일섬유	173,681	173,681	100.0
3	염색	135,877	135,877	100.0
4	기타의 직물	96,090	95,710	99.6
5	폴리에스터직물	95,666	95,666	100.0
6	양말	85,936	85,936	100.0
7	폴리에스터사	58,770	58,770	100.0
8	장갑	51,296	51,296	100.0
9	타이어코드	49,776	49,749	99.9
10	기타의섬유제품	35,683	35,382	99.2
	총 계	1,013,482	1,012,774	99.9

47) 미국의 경우 FTA 발효일이 2012년 3월 15일이므로 2분기부터의 실적을 계산함

| 2012년 섬유류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

단위 : 천달러, %

협정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ASEAN	3,038,457	2,812,885	92.6
EU	1,263,745	1,222,130	96.7
미국	337,190	307,964	91.3
인도	293,872	264,030	89.8
EFTA	35,535	35,451	99.8
페루	10,496	10,484	99.9
칠레	265	264	99.6
총 계	4,979,560	4,653,208	93.4

| 2012년 협정별 주요 특혜수입품목 (MTI 6단위 기준) |

칠레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기타의 섬유제품	159	158	99.4
2 소모	66	66	100.0
3 기타재생섬유	31	31	100.0
4 팬티	4	4	100.0
5 기타의 직물	2	2	100.0
6 방모직물	1	1	100.0
7 기타편직제의류	0.8	0.7	87.5
8 마직물	0.7	0.7	100.0
9 드레스	0.3	0.3	100.0
10 언더셔츠	0.5	0.2	40.0
총 계	265	264	99.5

ASEAN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코트 및 자켓	588,146	584,500	99.4
2	남성바지	187,658	182,154	97.1
3	기타폴리에스터방직사	150,643	150,616	100.0
4	기타운동복	150,503	149,926	99.6
5	코팅제외류	137,459	137,436	100.0
6	타이어코드	133,443	133,443	100.0
7	언더셔츠	129,202	101,048	78.2
8	훈방면사	81,236	81,236	100.0
9	여성바지스커트	93,370	78,414	84.0
10	포장용의 빈포대	69,124	69,094	100.0
	총 계	1,720,784	1,667,867	96.9

EFTA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기타의 섬유제품	21,840	21,783	99.7
2	신사복	3,175	3,175	100.0
3	기타의 직물	2,028	2,028	100.0
4	나일론직물	1,657	1,657	100.0
5	폴리에스터직물	799	799	100.0
6	자수포	751	751	100.0
7	스웨터	651	651	100.0
8	부직포	428	428	100.0
9	코트 및 자켓	330	330	100.0
10	편직물	294	294	100.0
	총 계	31,953	31,896	99.8

인도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순면사	182,847	153,575	84.0
2	폴리에스터사	12,330	12,330	100.0
3	언더셔츠	12,006	12,004	100.0
4	생지	8,974	8,974	100.0
5	블라우스	6,808	6,642	97.6
6	양탄자	6,290	6,289	100.0
7	드레스	6,129	6,123	99.9
8	남성셔츠	5,675	5,671	99.9
9	기타의 섬유제품	4,904	4,822	98.3
10	실내용품	3,978	3,978	100.0
	총 계	249,941	220,408	88.2

페루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언더셔츠	1,685	1,684	99.9
2	소모	1,590	1,590	100.0
3	소모사	1,541	1,541	100.0
4	스웨터	1,041	1,038	99.7
5	블라우스	896	894	99.8
6	남성아우터셔츠	847	847	100.0
7	기타의 섬유제품	596	591	99.2
8	남성셔츠	455	455	100.0
9	유아복	358	358	100.0
10	기타운동복	354	354	100.0
	총 계	9,363	9,352	99.9

EU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직물제 가방	262,475	262,435	100.0
2	코트 및 자켓	74,983	74,953	100.0
3	스웨터	49,357	49,311	99.9
4	기타의 섬유제품	50,815	48,566	95.6
5	침구이불	46,311	46,215	99.8
6	기타재생섬유	42,501	42,501	100.0
7	여성양복상의	40,114	39,943	99.6
8	여성바지스커트	37,842	37,775	99.8
9	손수건 스카프	35,338	35,310	99.9
10	드레스	33,098	32,980	99.6
	총 계	672,834	669,989	99.6

미국 (2012. 2분기 ~ 2013. 1분기)

단위 : 천달러, %

	품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비중
1	아세테이트사	58,484	58,484	100.0
2	기타의섬유제품	42,391	32,347	76.3
3	아세테이트섬유	30,330	30,330	100.0
4	부직포	29,726	29,697	99.9
5	여성바지스커트	14,810	14,503	97.9
6	나일론사	13,772	13,770	100.0
7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12,698	12,694	100.0
8	기타의직물	10,530	10,485	99.6
9	기타합성섬유	9,442	9,442	100.0
10	양탄자	9,890	9,064	91.6
	총 계	232,073	220,817	95.1

| 섬유제품 주요국 對한 수출실적 현황 (2012 ~ 2013.6) |

단위 : 백만불,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 %

구분	2012년					2013년			
	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중국	2,725 (-8.8)	597 (-4.6)	730 (-12.8)	709 (-8.4)	690 (-8.5)	583 (-2.4)	749 (2.7)	257 (2.8)	242 (0.5)
베트남	2,094 (5.9)	447 (3.4)	559 (0.8)	524 (9.3)	564 (10.5)	499 (11.7)	709 (26.8)	253 (43.3)	234 (17.1)
EU	1,393 (-1.7)	362 (3.5)	354 (-3.5)	344 (-5.8)	333 (-0.8)	355 (-2.0)	371 (4.8)	130 (1.8)	112 (4.6)
미국	1,409 (4.9)	335 (10.9)	373 (7.5)	369 (3.6)	331 (-1.5)	334 (-0.5)	371 (-0.7)	130 (-0.2)	121 (1.5)
인도네시아	1,363 (1.3)	353 (7.7)	348 (-0.6)	307 (-2.6)	355 (0.6)	337 (-4.5)	349 (0.2)	126 (14.2)	106 (-8.8)
일본	849 (-1.0)	214 (-0.8)	212 (-1.4)	219 (3.2)	205 (-5.1)	200 (-6.5)	200 (-5.2)	67 (-3.6)	63 (-12.8)
총계	15,595	3,651	4,109	3,969	3,867	3,656	4,279	1,503	1,341

| 섬유제품 주요국 對한 수입실적 현황 (2012 ~ 2013.6) |

단위 : 백만불,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 %

구분	2012년					2013년			
	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중국	5830 (-10.7)	1360 (-6.1)	1296 (-15.4)	1604 (-14.8)	1570 (-5.7)	1341 (-1.4)	1439 (11.0)	481 (12.2)	411 (2.6)
베트남	1672 (15.9)	387 (11.7)	305 (8.3)	491 (18.5)	489 (22.2)	471 (21.7)	373 (22.1)	111 (18.8)	103 (4.7)
EU	1268 (-2.1)	311 (10.0)	284 (-2.8)	360 (-7.7)	313 (-5.1)	311 (-0.2)	286 (0.8)	86 (-9.8)	111 (4.4)
인도네시아	637 (3.7)	160 (-9.1)	136 (-9.6)	173 (16.6)	167 (20.5)	173 (8.2)	158 (15.5)	51 (11.7)	45 (8.8)
일본	425 (-6.3)	100 (-9.2)	112 (-1.3)	109 (-4.7)	104 (-10.0)	94 (-5.5)	97 (-13.6)	34 (-13.8)	31 (-21.5)
미국	357 (-13.4)	96 (4.7)	89 (-16.0)	89 (-21.6)	83 (-18.0)	82 (-14.9)	92 (4.2)	32 (9.1)	30 (12.3)
총계	11989	2853	2627	3320	3190	2977	2892	937	862

| 섬유제품 주요 수출품목과 FTA 점유율 (2012)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명	對 세계 수출	對 FTA 수출 ⁴⁸⁾	*비중
1	편직물	4,069,829	2,438,859	59.9
2	폴리에스터 직물	1,780,691	661,037	37.1
3	기타의 직물	1,053,944	504,054	47.8
4	폴리에스텔 섬유	1,044,754	626,494	60.0
5	기타의 섬유제품	809,439	405,500	50.1
6	폴리에스터사	627,018	307,729	49.1
7	직물제 가방	562,421	4,573	0.8
8	부직포	462,334	202,617	43.8
9	의류부속품	384,115	276,293	71.9
10	타이어코드	369,879	212,701	57.5

*비중: 對FTA 수출/對세계 수출*100

| 섬유제품 주요 수입품목과 FTA 점유율 (2012)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명	對 세계 수입	對 FTA 수입	비중
1	코트 및 자켓	1,141,101	667,364	58.5
2	언더셔츠	501,934	175,749	35.0
3	여성바지 스커트	497,048	148,312	29.8
4	남성바지	488,935	223,369	45.7
5	스웨터	465,809	145,234	31.2
6	순면사	438,347	262,753	59.9
7	기타운동복	358,745	168,515	47.0
8	폴리에스터사	311,235	103,464	33.2
9	생지	260,580	33,219	12.7
10	코팅제의류	254,467	139,347	54.8

48) FTA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함

| EU의 對한·중·일 수출 증감률 비교 (2012. 7 ~ 2013. 5) |

단위 : 천유로 %

품목 (HS 6단위)	EU 對한국		중국		일본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예한한다)	1,850,529	14.6	0	-	12	1209.1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기계와 기기	498,634	-64.8	361,052	-62.6	53,007	-85.2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125,691	77.5	329,949	178.7	283,039	968.8
3004.90	기타	655,146	3.9	3,198,466	31.3	4,166,411	11.8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835,214	2.8	4,497,724	-7.5	733,739	123.5
8409.99	기타	463,178	-0.4	364,590	-18.6	164,834	13.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21,499	-11.8	10,285,943	-15.4	3,303,746	2.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78,310	2.8	3,404,216	-39.7	1,310,387	-6.3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15,165	68.6	868,014	19.0	31,872	-58.6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497,190	315.8	980,264	360.9	202,692	13,859.5
8479.89	기타	345,946	43.8	1,075,455	-2.3	130,290	-22.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9,941	130.2	874,614	-29.5	47,603	-15.4
8481.80	기타의 기기	385,219	57.3	984,085	12.7	72,456	-1.3
0203.29	기타	227,462	-41.7	311,968	54.8	765,172	8.1
99SS.S9	기타품목	317,740	78.1	208,709	-15.8	25,535	-53.3
8408.20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247,171	-5.7	97,273	-11.0	303,520	-7.8
8414.80	기타	275,507	61.2	498,380	-18.4	42,378	-15.4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250,772	-14.9	64,851	-42.7	118,941	75.9
2710.19	기타	166,903	34.1	206,361	-19.1	36,502	-20.9
8542.39	기타	230,238	31.2	281,680	-25.3	121,296	-1.4

자료 : EUR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주 : 증감률은 발효 1년차를 기준으로 함. 단, 수치 비교를 위해 증감률은 발효 2년차 11개월분(2012.7~2013.5) 수출실적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작성함

| EU의 對한·중·일 수입 증감률 비교 (2012. 7 ~ 2013. 5) |

단위 : 천유로 %

품목 (HS 6단위)	EU 對한국		중국		일본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1,682,381	-28.3	2,141,199	-9.2	27,775	-84.6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cc초과 2,500cc 이하인 것	2,016,698	10.2	6,233	-34.1	1,779,140	-8.6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 용 전화기	2,068,950	65.6	14,749,216	13.9	3,942	23.1
8529.90	기타	1,733,010	14.7	3,301,674	-0.8	408,938	-8.0
9013.80	기타의 기기	1,586,089	-3.8	121,099	1.2	143,230	-62.3
2710.19	기타	1,431,219	-24.9	108,768	17.0	17,637	-88.7
8901.20	탱커(tanker)	687,903	-11.1	82,478	-77.1	0	-
8542.39	기타	690,750	3.3	334,918	19.3	257,989	-26.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초과 1,500cc 이하인 것	626,512	0.1	242,806	8.6	431,879	-41.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초과 3,000cc 이하인 것	539,777	-1.2	18,309	-1.6	287,097	72.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 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5,489	-12.3	744,909	16.1	586,611	-10.5
8708.29	기타	354,151	-1.6	173,949	33.3	228,861	-20.2
4011.1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 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390,126	-8.6	1,174,372	-13.0	430,684	-23.2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이하인 것	329,621	-20.2	34,013	-33.9	28,981	-57.5
8901.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104,639	-61.4	2,279	59.3	0	-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237,710	-51.7	5,409,186	-47.5	371,311	-44.0
8708.40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	241,266	87.4	108,975	15.8	176,769	-0.2
8429.52	360도 회전형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213,292	-23.8	26,042	144.0	728,424	-17.8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 동 차축 및 그 부분품	225,726	-1.8	83,872	23.0	130,585	-8.9

자료 : EUR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주 : 증감률은 발효 1년차를 기준으로 함. 단, 수치 비교를 위해 증감률은 발효 2년차 11개월분(2012.7~2013.5) 수입실적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작성함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활용하세요!

1. FTA-PASS 개요

-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으로 FTA 체약상대국의 검증 대비

2. 주요기능

<h3>1 협정별 원산지판정·관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된 FTA 모든협정 및 품목 판정지원 ▶ 공급물품 선택에 따른 일괄판정 	<h3>2 사용 용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자도 원산지관리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흐름 설계 ▶ 기업ERP와 FTA-PASS 자료연계를 위한 범용 ERP 연계모듈 보급
<h3>3 원산지판정 신뢰성</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FTA협정발효 또는 협정문이 개정될 경우 빠른 분석 작업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응 	<h3>4 문서유통 및 증빙자료 보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 유통(송수신) - FTA-PASS ⇔ 기업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OMS) ▶ 사후검증을 대비한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능

3. FTA-PASS 사용방법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

상담전화 031-600-0770 (문의시간: 평일 09:00 ~ 18:00)

문의메일 fta-pass@origin.or.kr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FTA-PASS와 ERP연계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착순 모집공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차로 FTA-PASS와 ERP 연계 지원사업 시범업체를 모집하였으나 미달하여 아래와 같이 선착순으로 추가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 사업내용

- (사업명) 중소기업 ERP와 FTA-PASS 연계 시범사업
- (신청기간) 2013. 9 . 1 ~ (선착순 마감)
- (지원내역) 무료 연계 지원(자체 ERP 변동분은 제외)
- (대상)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는 20개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ERP 사용
 - 12년도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실적이 5건이상인 업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이메일(bhgoo@origin.or.kr)또는 팩스 (031-600-0704)로 신청
- (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구본현 연구원(☎ 031-600-0724)

발행일 : 2013년 9월

발행처 :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 481-3282 / FAX. 042) 481-7753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 6000-701-3 / FAX. 031) 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 : 키크스코리아

발간등록번호 : 11-1220000-000336-14

2013 September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